



#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en route to South Korea

연성진





---

# 머리말

---

인신매매범죄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성격을 띠며 확산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형사정책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범죄는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주로 탈북 이후 국내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따라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의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부양의 의무 등이 아마도 이들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도록 하는 푸시 인자(push factor)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중국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중국 사회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동인을 제공하는 풀 인자(pull factor)가 꾸준히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으로 건너 온 북한이탈 여성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등 기본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인신매매범죄 등 다양한 범죄피해의 취약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이루게 된 계기는 21세기에 들어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대상 인신매매의 방지, 감소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만들어 내는 등 인신매매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삶을 개인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겪은 인신매매범죄의 구조화된 경험과 대응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탈북여성들에게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경험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인신매매범죄의 유형과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과정과 구조를 이들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탈북과정 중에 경험하는 브로커 등을 통한 인신매매범죄 피해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조사자료들은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위한 좋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연구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남성들과 여성들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위해 자료수집과 정리, 그리고 설문지 및 심층면접 문항 구성 과정에서 함께 힘을 쏟아 준 Sarah Gross 위촉연구원, 그리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대상자 섭외 및 심층면접조사를 도와준 강민정 위촉연구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모으고 연결해 준 탈북여성을 위한 단체에도 감사드리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고통스러운 과거를 풀어내 주신 연구 참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인신매매범죄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적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선임연구위원 연 성 진

---

# 목 차

---

|                             |    |
|-----------------------------|----|
| 국문요약 .....                  | 1  |
| <br>  제1장   서 론 .....       | 9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1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12 |
| <br>  제2장   이론적 배경 .....    | 15 |
|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 .....         | 17 |
| 제2절 인신매매의 이론적 논의 .....      | 20 |
| 1. 인신매매의 개념 .....           | 20 |
| 2. 인신매매의 이론 .....           | 23 |
| 제3절 탈북자 인신매매에 대한 기존연구 ..... | 25 |
| 1. 푸시 인자(Push Factor) ..... | 25 |
| 2. 풀 인자(Pull Factor) .....  | 26 |
| 3. 탈북 경로 .....              | 27 |
| 4. 한국 정착 .....              | 32 |
| <br>  제3장   연구방법 .....      | 33 |
| 제1절 자료의 수집 .....            | 35 |
| 1. 설문조사 .....               | 35 |
| 2. 심층면접 조사 .....            | 42 |

## | 제4장 | 설문조사 결과 ..... 47

|                                       |     |
|---------------------------------------|-----|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 49  |
| 제2절 탈북 동기 및 과정 .....                  | 53  |
| 제3절 브로커에 대한 경험 .....                  | 67  |
| 제4절 탈북 후 중국에서의 생활 .....               | 77  |
| 제5절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 .....               | 84  |
| 제6절 중국에서의 강제결혼 경험 .....               | 89  |
| 제7절 중국에서의 강제 성매매 경험 .....             | 96  |
| 제8절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              | 97  |
| 제9절 중국에서의 범죄피해로부터의 탈출 .....           | 104 |
| 제10절 자녀 분리 문제 .....                   | 109 |
| 제11절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 .....                | 113 |
| 제12절 한국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 | 117 |

## | 제5장 | 심층면접조사 결과 ..... 129

|                                              |     |
|----------------------------------------------|-----|
|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 131 |
|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                        | 133 |
| 1. 북한에서의 탈출동기: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의 몸부림 이동 ..... | 133 |
| 2.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불법체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 .....    | 137 |
| 3. 인신매매 후의 탈북여성들의 삶: 불법체류자로서 나의 유일한 은신처 ...  | 143 |

**| 제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151**

- 1. 탈북여성들의 중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의 안정 ..... 153
- 2.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 ..... 154
- 3. 푸시 인자(push factor) 및 풀 인자(pull factor)의 통제 ..... 155
- 4. 탈북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제공 및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 ..... 156

**참고문헌 ..... 159**

**Abstract ..... 163**

**부록 ..... 185**

## 표 차례

---

|                                           |    |
|-------------------------------------------|----|
| [표 2-1] 입국 현황표(18.6월말 입국자 기준) .....       | 18 |
| [표 2-2] 연령대별 입국현황(18.6월말 기준) .....        | 19 |
| [표 2-3]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18.6월말 기준) .....      | 19 |
| [표 2-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18.6월말 기준) .....      | 19 |
| [표 2-5] 재북 출신지역별 입국현황(18.6월말 기준) .....    | 19 |
| [표 2-6] 지역별 거주 현황(18.6월말 거주자 기준) .....    | 20 |
| [표 2-7]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                | 20 |
| [표 2-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              | 20 |
| [표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                   | 50 |
| [표 4-2] 최종 학력(남북한 학력 합쳐서) .....           | 52 |
| [표 4-3] 북한 가족 여부 .....                    | 52 |
| [표 4-4] 중국 가족 여부 .....                    | 52 |
| [표 4-5] 탈북 시도 횟수 .....                    | 54 |
| [표 4-6] 탈북 최종 목적지 .....                   | 55 |
| [표 4-7] 탈북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 .....             | 55 |
| [표 4-8] 탈북 과정에 돈을 요구한 사람 .....            | 56 |
| [표 4-9] 탈북 과정 지불 비용: 브로커 .....            | 57 |
| [표 4-10] 탈북 과정 지불 비용: 북한 군인 .....         | 57 |
| [표 4-11] 탈북 과정에서 나이에 따른 돈을 요구 받은 경험 ..... | 58 |
| [표 4-12] 북한최종학력과 탈북 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은 경험 ..... | 58 |
| [표 4-13] 최종 탈북 시와 탈북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은 경험 ..... | 59 |
| [표 4-14] 중국체류기간과 탈북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은 경험 .....  | 59 |
| [표 4-15] 탈북 과정에서 총 지출 비용 .....            | 60 |
| [표 4-16] 탈북 자금 마련 .....                   | 60 |
| [표 4-17] 탈북 시 동행여부와 탈북 지출 비용 .....        | 61 |
| [표 4-18] 연령 별 탈북 시 동행여부 .....             | 61 |
| [표 4-19] 최종탈북시기와 탈북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법 .....   | 62 |
| [표 4-20] 성적 대가 요구 경험 .....                | 63 |
| [표 4-21] 탈북 시 동행 여부 .....                 | 63 |
| [표 4-22] 사업상의 이유로 북한 국경을 넘은 경험 .....      | 63 |
| [표 4-23] 북한 국경 넘는 횟수 .....                | 64 |

|                                          |    |
|------------------------------------------|----|
| [표 4-24] 탈북 시 동반 인원 .....                | 65 |
| [표 4-25] 최종 탈북 시기 .....                  | 65 |
| [표 4-26] 탈북 지역 .....                     | 66 |
| [표 4-27] 탈북 시도 횟수 .....                  | 66 |
| [표 4-28] 브로커를 만난 지역 .....                | 68 |
| [표 4-29] 브로커 인지 경로 .....                 | 69 |
| [표 4-30] 브로커 접근 방법 .....                 | 69 |
| [표 4-31] 브로커 연령 .....                    | 70 |
| [표 4-32] 브로커 성별 .....                    | 70 |
| [표 4-33] 브로커 출신 .....                    | 70 |
| [표 4-34] 브로커 인원 .....                    | 71 |
| [표 4-35] 브로커 범죄 조직 연관성 .....             | 71 |
| [표 4-36] 브로커가 타인과 연락하며 업무 처리 .....       | 71 |
| [표 4-37] 브로커 주 활동 지역 .....               | 72 |
| [표 4-38] 브로커 동행 여부 .....                 | 72 |
| [표 4-39] 이동 전 브로커와 함께 머무름 .....          | 73 |
| [표 4-40] 탈북 여성의 동행 .....                 | 73 |
| [표 4-41] 탈북 여성 동행 인원 .....               | 74 |
| [표 4-42] 브로커 이동 빈도 .....                 | 74 |
| [표 4-43] 브로커 및 관련자의 신체·성적 공격 .....       | 74 |
| [표 4-44] 브로커 및 관련자의 흥기 소지 .....          | 75 |
| [표 4-45] 브로커 및 관련자의 두려워함 .....           | 75 |
| [표 4-46] 브로커 및 관련자, 군·경찰·정부 소속 여부 .....  | 76 |
| [표 4-47] 브로커 및 관련자, 군·경찰·정부와의 연결성 .....  | 76 |
| [표 4-48] 브로커에 의한 피해 .....                | 76 |
| [표 4-49] 강제결혼 및 성매매 노출 .....             | 78 |
| [표 4-50] 강제결혼 및 성매매 노출 탈북 여성의 인원 수 ..... | 78 |
| [표 4-51] 중국 내 체류 기간 .....                | 78 |
| [표 4-52] 중국 내 거주 지역 .....                | 79 |
| [표 4-53] 중국 공안에의 체포 경험 .....             | 80 |
| [표 4-54] 중국 공안에의 체포 횟수 .....             | 80 |
| [표 4-55] 중국 공안 체포 시 대처 방법 .....          | 80 |
| [표 4-56] 중국 거주 시 직업 .....                | 81 |
| [표 4-57] 임금 정상 수령 여부 .....               | 81 |

|                                          |    |
|------------------------------------------|----|
| [표 4-58] 성 상납 요구 받은 경험 .....             | 82 |
| [표 4-59] 한국행 결심 동기 .....                 | 82 |
| [표 4-60] 한국행에 도움을 준 사람 혹은 단체 .....       | 82 |
| [표 4-61] 신분 안정 시 중국 체류 의향 .....          | 83 |
| [표 4-62] 탈북 후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경험 .....      | 84 |
| [표 4-63] 인신매매 피해 내용 .....                | 84 |
| [표 4-64] 인신매매 피해 기간(강제결혼) .....          | 84 |
| [표 4-65] 인신매매 피해 기간(강제노동) .....          | 85 |
| [표 4-66] 인신매매 피해 기간(강제성매매) .....         | 85 |
| [표 4-67] 인신매매 피해 시 연령 .....              | 86 |
| [표 4-68] 탈북 전 인신매매 인지 여부 .....           | 86 |
| [표 4-69] 인신매매 피해 시점 .....                | 87 |
| [표 4-70] 인신매매 피해 시점_탈북 후 얼마 후인지 여부 ..... | 87 |
| [표 4-71] 인신매매 연루 계기 .....                | 87 |
| [표 4-72] 자발적 인신매매 참여 이유 .....            | 88 |
| [표 4-73] 인신매매 관련 경험 .....                | 88 |
| [표 4-74] 인신매매에서 벗어난 연령 .....             | 88 |
| [표 4-75] 강제결혼 경험 .....                   | 89 |
| [표 4-76] 강제결혼 연령 .....                   | 90 |
| [표 4-77] 강제결혼 횟수 .....                   | 90 |
| [표 4-78] 탈북 전 강제결혼 인지 여부 .....           | 90 |
| [표 4-79] 강제 결혼의 이유 .....                 | 91 |
| [표 4-80]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민족 .....          | 91 |
| [표 4-81]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장애 여부 .....       | 92 |
| [표 4-82]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직업 .....          | 92 |
| [표 4-83]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월 평균 소득 .....     | 93 |
| [표 4-84] 강제결혼 상대방: 가족 구성원의 수 .....       | 93 |
| [표 4-85]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재혼 여부 .....       | 93 |
| [표 4-86]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연령 .....          | 94 |
| [표 4-87] 신부 거래 금액에 대한 인지 여부 .....        | 94 |
| [표 4-88] 신부 거래 금액 .....                  | 94 |
| [표 4-89] 결혼 대가 직접 수령 여부 .....            | 95 |
| [표 4-90]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             | 95 |
| [표 4-91] 결혼 생활 상대방에 대한 평가 .....          | 96 |

|                                        |     |
|----------------------------------------|-----|
| [표 4-92] 중국에서의 강제 성매매 경험 .....         | 96  |
| [표 4-93]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          | 97  |
| [표 4-94]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유형 .....          | 98  |
| [표 4-95]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연령 .....       | 98  |
| [표 4-96]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기간 .....       | 98  |
| [표 4-97] 탈북 전 강제 노동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 | 98  |
| [표 4-98] 강제 노동 제공 계기 .....             | 99  |
| [표 4-99] 강제 노동 1일 할당량 .....            | 99  |
| [표 4-100] 강제 노동 내용 .....               | 99  |
| [표 4-101] 주당 근로 일수 .....               | 100 |
| [표 4-102] 1일 근로 시간(최대) .....           | 100 |
| [표 4-103] 1일 근로 시간(최소) .....           | 101 |
| [표 4-104] 강제 노동 대가 수령 여부 .....         | 101 |
| [표 4-105] 강제 노동 대가 (최대) .....          | 102 |
| [표 4-106] 강제 노동 대가 (최소) .....          | 102 |
| [표 4-107] 강제 노동 대가 직접 수령 여부 .....      | 102 |
| [표 4-108] 강제 노동 대가 수량인 .....           | 102 |
| [표 4-109] 강제 노동 장소 .....               | 103 |
| [표 4-110] 강제 노동력 구매자 평가 .....          | 103 |
| [표 4-111] 강제 노동력 알선자 평가 .....          | 104 |
| [표 4-112] 탈출 방법 .....                  | 104 |
| [표 4-113] 탈출을 도와준 사람 및 단체의 접촉 경로 ..... | 105 |
| [표 4-114] 탈출 추가 비용 .....               | 105 |
| [표 4-115] 탈출 비용 지불 대상 .....            | 105 |
| [표 4-116] 다른 사람 혹은 단체 지불 비용 .....      | 106 |
| [표 4-117] 인신매매 탈출 목적 .....             | 106 |
| [표 4-118] 탈출 시 피해있던 장소 여부 .....        | 107 |
| [표 4-119] 탈출 시 피해있던 장소 .....           | 107 |
| [표 4-120] 탈출 과정에서의 체류 국가 .....         | 108 |
| [표 4-121] 가족 동반 입국 여부 .....            | 108 |
| [표 4-122] 중국에서 한국 입국 시도 횟수 .....       | 108 |
| [표 4-123] 한국에서의 동거 자녀 유무 .....         | 109 |
| [표 4-124] 북한 자녀 유무 .....               | 109 |
| [표 4-125] 중국 자녀 유무 .....               | 110 |

|           |                                     |     |
|-----------|-------------------------------------|-----|
| [표 4-126] | 탈북 과정에서 자녀와의 이별 경험 .....            | 110 |
| [표 4-127] | 자녀와의 이별 원인 .....                    | 110 |
| [표 4-128] | 중국에 있는 자녀와의 연락 여부 .....             | 111 |
| [표 4-129] | 자녀와의 만남을 조건으로 돈 지불 경험 .....         | 111 |
| [표 4-130] | 자녀 양육비 혹은 생필품 전달 경험 .....           | 111 |
| [표 4-131] | 중국 거주 자녀가 어머니와 동거 의향 있는지 여부 .....   | 112 |
| [표 4-132] |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 .....          | 112 |
| [표 4-133] |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도 .....                   | 113 |
| [표 4-134] | 한국생활에 적응 못하는 이유 .....               | 113 |
| [표 4-135] | 기초생활수급 여부 .....                     | 115 |
| [표 4-136] | 정착금 사용처 .....                       | 115 |
| [표 4-137] | 한국 정착 단계별 필요 항목 평가: 항목별 평균치 .....   | 115 |
| [표 4-138] | 중국 공안 체포경험과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118 |
| [표 4-139] | 중국 체류기간에 따른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 ..... | 118 |
| [표 4-140] | 남한입국시기에 따른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119 |
| [표 4-141] | 중국공안 체포경험과 한국생활에의 적응도 교차분석 .....    | 119 |
| [표 4-142] | 중국체류기간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120 |
| [표 4-143] | 남한입국시기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121 |
| [표 4-144] | 언어적 학대 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121 |
| [표 4-145] | 신체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122 |
| [표 4-146] | 정신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122 |
| [표 4-147] | 언어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123 |
| [표 4-148] | 신체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123 |
| [표 4-149] | 정신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124 |
| [표 4-150] | 중국에서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124 |
| [표 4-151] | 중국에서의 결혼상대 평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125 |
| [표 4-152] | 중국에서의 결혼생활만족도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125 |
| [표 4-153] | 중국에서의 결혼상대평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126 |
| [표 5-1]   | 면접 응답자 기본정보(여성 북한이탈주민) .....        | 132 |

## 그림 차례

---

|                                       |     |
|---------------------------------------|-----|
| [그림 4-1] 탈북 이유 .....                  | 53  |
| [그림 4-2] 탈북 정보 취득 경로 .....            | 54  |
| [그림 4-3] 탈북 과정에서 돈을 요구 받은 경험 .....    | 56  |
| [그림 4-4] 탈북 과정에서 복송 경험 유무 .....       | 64  |
| [그림 4-5] 브로커 접촉 경험 .....              | 68  |
| [그림 4-6] 브로커에 대한 이미지 .....            | 68  |
| [그림 4-7] 한국생활에서의 만족도 .....            | 113 |
| [그림 4-8]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운 점 ..... | 114 |
| [그림 4-9] 준법에 대한 인식(1) .....           | 116 |
| [그림 4-10] 준법에 대한 인식(2) .....          | 117 |



# 국문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로 초국가적 범죄의 형태로 인신매매문제는 보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신매매범죄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이 문제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들이 제3국에서 겪는 인신매매범죄 문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들이 겪는 인신매매범죄들을 실태조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범죄피해경험들을 살펴보고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기존 탈북자 관련 연구들은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탈북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탈북자들이 겪은 인신매매범죄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탈북 여성이 국경을 넘은 이 후 인신매매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인신매매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누구인지, 인신매매와 관련된 브로커들의 활동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에 들어온 전체 탈북자의 수와 이들 중 여성 탈북자의 수를 고려하고 또 전체 가용연구비를 고려하여 목표 표본수는 201명으로 정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의 N동, W동, 인천의 N동, D동, 부천의 B동, 수원 의 O동, H동, 평택의 B동 등 전체 8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에서 단지별로 응답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

## 2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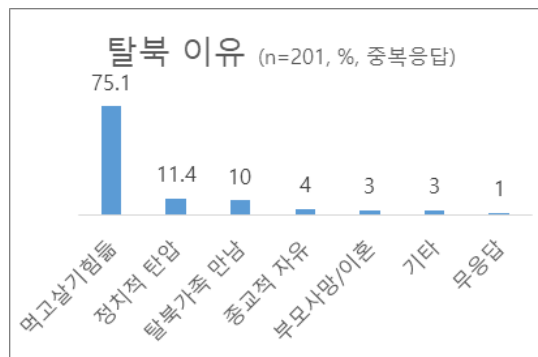
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인신매매 경험이 있는 24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 3. 연구결과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1,82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1998년 이전까지 들어온 숫자가 947명에 불과하던 것이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최고치인 2,914명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402명과 2,706명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매년 약 1,500명 정도거나 그보다 적은 인원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초기 50% 이하였으나 거의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7년에는 무려 전체의 8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탈북동기 및 과정

탈북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75%의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31.8%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중국국경을 넘었으며 21.4%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68%는 브로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중국에서의 생활

- 응답자의 90.7%는 중국에서 강제결혼의 경험이 있었으며 21.3%는 강제노동, 4.7%는 성매매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 57.7%는 국경을 넘자마자 인신매매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평균 첫 결혼연령은 30.7세였으며 3/4은 한번 결혼을 했으며 13.2%는 두 번의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62.5%의 결혼여성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 강제결혼의 이유에 대해서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 강제결혼의 이유       | 퍼센트  |
|----------------|------|
|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서 | 41.9 |
| 강요에 의해서        | 26.5 |
|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 6.6  |
| 아는 사람의 권유      | 6.6  |
|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 2.9  |
| 빚이 있어서         | 0.7  |
| 친구의 권유로        | 0.7  |
| 엄마한테 전화해주고 싶어서 | 0.7  |
| 국적을 해준다고 해서    | 0.7  |
| 공안에 신고한다고 해서   | 0.7  |
| 무응답            | 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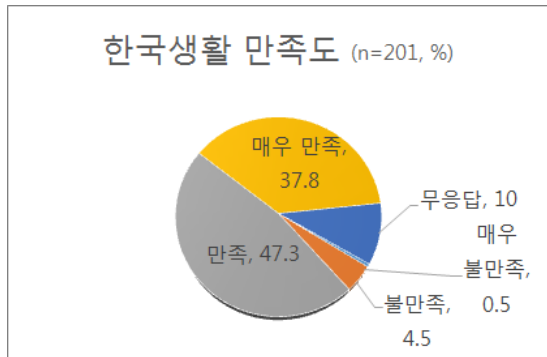
## 다. 중국에서의 탈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중국에서의 신분이 불안정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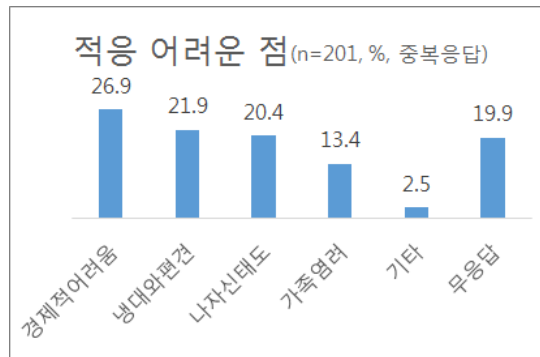
4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행 결심 동기     | 퍼센트  |
|---------------|------|
| 중국에서의 신분 불안정함 | 54.2 |
| 북송 위험         | 26.9 |
| 더 나은 경제적 삶    | 14.9 |
| 가족 상봉         | 9.5  |
| 가족의 학대        | 1.0  |
| 아이 신분등록을 위하여  | 0.5  |
| 무응답           | 10.4 |

라. 한국에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



-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약8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에 대한 냉대와 편견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시기와 한국사회 적응정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2010년 이전에 남한에 입국한 사람들보다 그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 심층면접 결과

모든 면접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탈북했다고 응답하였다. 개별적 이유는 상이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사회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힘들었으며, 다양한 제약으로 안정적이고 만족할만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북한에서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위치, 사회적 관계망 등을 생애사적 맥락으로 파악하고 북한에서의 삶과 북한 밖에서의 삶을 비교하여 자신의 생존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자신의 고향 땅을 버리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기위한 합리적이자 처절한 몸부림 이동이다.

면접자 24명 중 10명은 중국으로 가면 인신매매를 통해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즉 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노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강제결혼이라는 범죄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탈북을 결심한 것일까? 북한 남편이 때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라도 중국으로 넘어가서 돈을 보내 줘야할 것 같아서, 중국에 잠깐 있다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그 이유는 매우 다양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했다.

이들은 강제 결혼한 이후, 남편 혹은 남편 가족들과 낯선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내고 있었다. 중국에서 '살아내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호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며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먼저,

탈북여성들의 결혼상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 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이다. 24명의 면접자 중 20명의 남편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평균적으로 연평균 4,000위안정도의 소득이었다고 답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하며 모두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부부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았기에 강제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결혼만족도를 표현한 응답자도 4명 존재했다. 이 중 한명은 강제결혼 했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14년을 산 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조선족 중국남편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20명의 면접자들은 강제결혼생활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 태도를 보였다. 먼저 이들은 대부분 강제 감시, 감금생활을 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현재 중국 농촌지역에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중국 남편과 남편 가족들은 경험적으로 탈북 여성들이 강제 결혼하여 잠깐 머물러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결혼생활 내내 이들을 감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강제 결혼생활을 하며 은밀히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을 불안감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 언제 갑자기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 복송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 4. 결론 및 제언

북한이탈 주민들의 중국 내 지위의 안정

- 탈북여성들을 위한 단기·장기 보호시설 확보
- 국제법상 난민지위 확보 가능성 검토
- 인신매매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북한이탈 주민의 중국으로서 푸시 인자 및 풀 인자의 통제
- 북한 내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중국 내 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한 인신매매 유인 억제
- 한국에 정착한 탈북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제공 및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

중국으로 월경해서 브로커가 개입된 강제결혼을 통한 중국사회 정착은 이들에게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매매를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혼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신매매범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일시적인 출구에 불과하다.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일시적 긴급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로는 EU에서와 같이 보다 장기적인 보호시설(asylum)을 확보해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잡기 전까지 그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국경을 넘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보호시설(asylum)은 반드시 중국에만 있을 필요도 없으며 제3국이든 어디든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신매매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북한이탈 주민의 중국으로서 푸시인자 및 풀 인자의 통제를 위해 먼저 북한 내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중국 내 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한 인신매매 유인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남한에 입국해서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새로운 사회구조와 문화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기초수급생활 지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을 통해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북한이탈 주민들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고 이들이 고용되어 일을 배우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체계적 지원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와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예 공안에게 체포되고 탈출하거나 복송된 경험을 한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기회제공과 병행해서 매우 시급한 정책적 지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자의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최근 종편 방송을 중심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클럽’ 등 유명 TV프로그램에서 탈북 여성들이 출연하여 북한의 실상과 특히 탈북여성들이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실태와 인신매매범죄 실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로 인신매매범죄는 심각한 초국가적 범죄로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형사사법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조사의 용이성으로 인해 주로 탈북 이후 국내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 성범죄 등 주로 국내에 정착해서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북한이탈주민, 특히 이들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범죄피해 실태를 회고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의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여성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부양의 의무 등이 아마도 이들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도록 하는 푸시 인자(push

factor)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중국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중국 사회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동인을 제공하는 풀 인자(pull factor)가 꾸준히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으로 건너 온 북한이탈 여성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등 기본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인신매매범죄 등 다양한 범죄피해의 취약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이루게 된 계기는 21세기에 들어 와서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대상 인신매매의 방지, 감소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만들어 내는 등 인신매매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삶을 개인사적 맥락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겪은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구조화된 경험과 대응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탈북여성들에게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경험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빈번히 일어나는 인신매매범죄의 유형과 피해자가 되는 과정과 구조를 이들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특히 탈북과정 중에 경험하는 브로커 등을 통한 인신매매범죄 피해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조사자료들은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남성들과 여성들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가 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기존 탈북자 관련 연구들은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탈북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탈북자들이 겪은 인신매매범죄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탈북 여성이 국경을 넘은 이 후 인신매매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인신매매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누구인지, 인신매매와 관련된 브로커들의 활동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에 들어온 전체 탈북자의 수와 이들 중 여성 탈북자의 수를 고려하고 또 전체 가용연구비를 고려하여 목표 표본 수는 200명으로 정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의 N동, W동, 인천의 N동, D동, 부천의 B동, 수원 O동, H동, 평택의 B동 등 전체 8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에서 단지별로 응답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전체 보고서의 구성은 먼저 제2장에서 인신매매의 개념적 논의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인신매매범죄 피해자가 되는 요인과 과정들을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관련 연구방법이 서술되어 있으며 제4장은 북한이탈 여성 201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제5장은 북한이탈 여성들 중 인신매매범죄(특히 강제결혼) 피해 경험자들 2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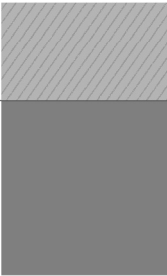
\* 이 연구가 단기간에 수행되는 수시과제가 아니라 1년간 수행되는 연구였다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여성이나 이 곳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브로커와 NGO 등 관련 단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제한된 예산과 연구기간으로 인해 이와 같은 광범위한 자료 수집은 불가능했으며 북한이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자료조사의 범위에 만족해야 했다.



## 제 2 장



##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배경

탈북자들의 범죄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겪는 인신매매범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미 3만 명을 넘고 있으며 20여년 전 북한경제 상황이 어렵던 시기부터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 북한이탈 주민들은 매년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먼저 통계상에 나타난 북한이탈 주민들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주요통계자료」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표 2-1>은 2018년 6월말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1,82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1998년 이전까지 들어온 숫자가 947명에 불과하던 것이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최고치인 2,914명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402명과 2,706명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매년 약 1,500명 정도거나 그보다 적은 인원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대로 여성의 비율은 초기 50% 이하였으나 거의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7년에는 무려 전체의 8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국자들의 연령대별 남녀 분포를 보면(<표 2-2>)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에 있을

때의 직업을 보면, 무직과 노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체육분야, 전문직, 관리직, 군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고등중)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문대 이상이나 소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치원이나 취학전 아동도 1,144명으로 전체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함경북도가 19,079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양강도로 4,987명(15.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한에 들어와 정착한 현황을 보자. 먼저 거주 지역을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각각 7,003명(23.8%)과 9,170명(31.1%)으로 드러났고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9%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있는 현상은 북한이탈주민들 중 생계급여 수급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의 초·중·고 중단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이 매년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이런 추세를 더욱 잘 보여준다. <표 2-8>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8년도 49.6%에서 2017년 61.2%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반대로 실업률의 경우로 보더라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통계수치상 나타난 경제활동참여 현황은 매년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입국 현황표('18.6월말 입국자 기준)

(단위: 명)

| 구분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6<br>(잠정) | 합계     |
|-----------|------|-------|-------|-------|-------|-------|-------|-------|-------|-------|-------|-------|-------|-------|-------|-------|-------|-------|---------------|--------|
| 남         | 831  | 565   | 510   | 474   | 626   | 424   | 515   | 573   | 608   | 662   | 591   | 795   | 404   | 369   | 305   | 251   | 302   | 188   | 58            | 9,051  |
| 여         | 116  | 478   | 632   | 811   | 1,272 | 960   | 1,513 | 1,981 | 2,195 | 2,252 | 1,811 | 1,911 | 1,098 | 1,145 | 1,092 | 1,024 | 1,116 | 939   | 430           | 22,776 |
| 합계<br>(명) | 947  | 1,043 | 1,142 | 1,285 | 1,898 | 1,384 | 2,028 | 2,554 | 2,803 | 2,914 | 2,402 | 2,706 | 1,502 | 1,514 | 1,397 | 1,275 | 1,418 | 1,127 | 488           | 31,827 |
| 여성<br>비율  | 12%  | 46%   | 55%   | 63%   | 67%   | 69%   | 75%   | 78%   | 78%   | 77%   | 75%   | 71%   | 73%   | 76%   | 78%   | 80%   | 79%   | 83%   | 88%           | 72%    |

※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는 분기별로 공개('18.9월말 기준 현황은 '18.10월에 공개). 아래 탈북자 현황 표들은 통일부, 「통일부 주요통계자료」에 근거함.

[표 2-2] 연령대별 입국현황('1818.6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 0-9세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계      |
|-------|-------|--------|--------|--------|--------|--------|-------|--------|
| 남     | 636   | 1,621  | 2,496  | 2,081  | 1,330  | 522    | 329   | 9,015  |
| 여     | 627   | 1,993  | 6,527  | 7,044  | 4,144  | 1,255  | 945   | 22,535 |
| 합계(명) | 1,263 | 3,614  | 9,023  | 9,125  | 5,474  | 1,777  | 1,274 | 31,550 |

[표 2-3]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18.6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 관리직 | 군인  | 노동자    | 무직부양   | 봉사분야  | 예술체육 | 전문직 | 비대상<br>(아동 등) | 계      |
|-------|-----|-----|--------|--------|-------|------|-----|---------------|--------|
| 남     | 403 | 673 | 3,946  | 3,154  | 78    | 79   | 209 | 473           | 9,015  |
| 여     | 129 | 116 | 8,282  | 11,525 | 1,249 | 197  | 492 | 545           | 22,535 |
| 합계(명) | 532 | 789 | 12,228 | 14,679 | 1,327 | 276  | 701 | 1,018         | 31,550 |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과거자료 정비 등으로 일부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표 2-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18.6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 취학전<br>아동 | 유치원 | 인민학교<br>(소학교) | 중학교<br>(고등중) | 전문대   | 대학<br>이상 | 무학(북) | 기타<br>(불상 등) | 계      |
|-------|-----------|-----|---------------|--------------|-------|----------|-------|--------------|--------|
| 남     | 416       | 135 | 762           | 5,490        | 789   | 1,039    | 354   | 30           | 9,015  |
| 여     | 398       | 195 | 1,365         | 16,489       | 2,315 | 1,132    | 496   | 145          | 22,535 |
| 합계(명) | 814       | 330 | 2,127         | 21,979       | 3,104 | 2,171    | 850   | 175          | 31,550 |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해당 학력별 중퇴자 포함

※ 과거자료 정비 등으로 일부 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인원중에 하나원 최근 입소인원의 학력 미입력자 일부 포함

[표 2-5] 재북 출신지역별 입국현황('1818.6월말)

(단위: 명)

| 구분    | 강원  | 남포  | 양강    | 자강  | 평남    | 평북  | 평양  | 함남    | 함북     | 황남  | 황북  | 개성 | 기타<br>(재외 등) | 계      |
|-------|-----|-----|-------|-----|-------|-----|-----|-------|--------|-----|-----|----|--------------|--------|
| 남     | 219 | 66  | 1,329 | 67  | 441   | 364 | 412 | 763   | 4,785  | 265 | 174 | 45 | 85           | 9,015  |
| 여     | 374 | 81  | 3,658 | 149 | 619   | 475 | 317 | 1,997 | 14,294 | 186 | 265 | 30 | 90           | 22,535 |
| 합계(명) | 593 | 147 | 4,987 | 216 | 1,060 | 839 | 729 | 2,760 | 19,079 | 451 | 439 | 75 | 175          | 31,550 |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표 2-6] 지역별 거주 현황('18.6월말 거주자 기준)

(단위: 명)

|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경북    | 경남    | 대구  | 충북    | 충남·세종 | 광주  | 강원  | 대전  | 전남  | 전북  | 울산  | 제주  | 계      |
|-----------|-------|-------|-------|-------|-------|-------|-----|-------|-------|-----|-----|-----|-----|-----|-----|-----|--------|
| 남         | 2,277 | 2,308 | 770   | 273   | 228   | 247   | 140 | 248   | 318   | 142 | 177 | 135 | 151 | 122 | 158 | 75  | 7769   |
| 여         | 4,726 | 6,862 | 2,000 | 758   | 853   | 801   | 537 | 982   | 1,135 | 471 | 561 | 481 | 462 | 409 | 386 | 238 | 21,662 |
| 합계<br>(명) | 7,003 | 9,170 | 2,770 | 1,031 | 1,081 | 1,048 | 677 | 1,230 | 1,453 | 613 | 738 | 616 | 613 | 531 | 544 | 313 | 29,431 |

※ 사망, 말소, 이민, 거주불명,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표 2-7]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단위: %)

|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생계급수급률    | 54.8 | 54.9 | 51.3 | 46.7 | 40.8 | 35   | 32.3 | 25.3 | 24.4 | 24.4 |
| 초·중·고 중단률 | 10.8 | 6.1  | 4.9  | 4.7  | 3.3  | 3.46 | 2.5  | 2.2  | 2.1  | 2    |

※ '17년 초·중·고 중단율은 '16년 학업중단자 비율임(교육부 자료).

[표 2-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경제활동<br>참가율 | 49.6 | 48.6 | 42.6 | 56.5 | 54.1 | 56.9 | 56.6 | 59.4 | 57.9 | 61.2 |
| 고용률         | 44.9 | 41.9 | 38.7 | 49.7 | 50   | 51.4 | 53.1 | 54.6 | 55   | 56.9 |
| 실업률         | 9.5  | 13.7 | 9.2  | 12.1 | 7.5  | 9.7  | 6.2  | 4.8  | 5.1  | 7    |

※ 출처: 남북하나재단 '17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제2절 인신매매의 이론적 논의

### 1. 인신매매의 개념

인신매매는 그 자체가 본질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와 범죄자의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예제도 희생자들이 2016년 현재 전 세계 약 4000만 명 정도로 추계되는 것으로 한 자료는 보고하였다(ILO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인신매매는 전 세계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돼 있지는

않다. 인신매매는 아시아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강제 노동의 경우 전 세계 피해자의 약 4분의 3이 아시아에 있다(Shelly, 2010). ILO and Walk Free Foundation(2017)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380만 명의 성인과 100만 명의 인신매매 아이들 중 70% 이상이 상업적 성착취의 희생자였던 것으로 추산했다. 성적 착취는 가장 악명 높은 인신매매 형태이지만, 인신매매는 강제노동, 장기제거, 강제 가사노동, 구걸, 강제 결혼 및 강제징병(Kim, 2011) 등 여러 형태로 발생한다.

2000년 UN은 국제조직범죄위원회에서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을 포함한다.\*

인신매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이며 연간 320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Kim, 2011)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신매매 현상으로서 종종 간과되고 있는 범죄는 신부밀매(Kim, 2011)이다. ILO and Walk Free Foundation(2017)은 1500만 명이 강제결혼의 희생자라고 추정했다.

탈북여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경험하는 결혼, 강제노동 등의 현상과 관련해서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인신매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탈북여성 중에 일부는 중국에 “신부로 팔려 가면”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기며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지위와 이로 인한 강제복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결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의사결정과정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in Article 3, paragraph (a)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에는 북한에서의 생활보다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일부는 브로커의 속임으로 중국에 가면 좋은 신랑을 만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북한여성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UN의 인신매매의 정의에서도 사기나 기만에 의해 북한여성들이 결혼에 연루되었다거나, 이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에 의해 강제결혼, 성매매, 강제노동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인신매매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발적 매춘과 비자발적 매춘에 관한 논쟁들은 오래된 매춘 개혁 관련한 신폐지론자(neo-abolitionists)와 폐지반대론자(non-abolitionists) 사이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폐지론자들은 매춘이 여성을 비하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자발적 매춘과 강제된 매춘 사이에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사회와 남성중심사회를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을 제한시키고 사회적 일탈의 피해자가 되도록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발적 매춘과 강제매춘은 모두 사회구조적 문제들로 파생된 것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 반대로, 폐지반대론자들은 신폐지론자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도덕적, 정치적, 혹은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매춘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폐지반대론자들은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반면에,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과 비범죄화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매춘을 규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Chuang, 2010).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집단의 옹호자들은 UN 인신매매방지조약(UN Protocol to Prevent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을 위한 테이블에 국가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두 집단의 사람들은 인신매매의 정의에 대해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Chuang(2010)의 연구는 양쪽 모두의 승리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신매매의 두 가지 관점은 신폐지론자들과 폐지반대론자들 모두에게 인신매매의 정의에 동의(consent)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점과, 타인에 대한 매춘으로 인한 착취와 다른 행태의 매춘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의정서에 포함시킨 점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를 승리자로 만들었다.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와 종종 혼동되는 개념으로 이주자에 대한 밀입국(smuggling in person)이다. 두 개념의 주요 차이점은 밀입국은 국가 간 국경을 넘어야

하며 인신매매는 국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밀입국에는 어떠한 형태의 힘, 강제, 기만 또는 권력 남용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조직범죄가 빈번하게 개입된다는 점과 두 종류의 거래가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으며 두 가지 범죄의 피해자는 부당한 대우나 폭력 또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라는 점이다(ICAT, 2006: 1-2). 이민자 밀입국 의정서(Smuggling of Migrants Protocol)는 밀입국자 밀매(smuggling)를 방지하고 밀입국한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되어 있다(의정서 제2조). 또 이 의정서는 밀입국 이주자가 밀매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주자를 범죄자로 기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의정서 제5조).

과거 인신매매의 개념은 1949년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n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에서 규정한대로 매춘이나 기타 강제 성매매의 희생자로서의 여성들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이러한 개념은 탈북여성들과 같이 생활고나 다른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결혼이나 노동을 위해 팔려가는 여성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Zhao, 2003: 85). 따라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서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의 피해를 당하는 탈북여성들의 경험들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보다 현대적 의미에서 인신매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 2. 인신매매의 이론

Lutya & Lanier(2012)는 인신매매 특히 강제성매매와 관련한 통합이론적 관점에서 몇 개의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론은 인신매매의 각 과정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론적 설명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여러 다른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맨 처음 단계는 의사결정의 단계와 관련되는 이론적 논의들로서 인신매매의 수요, 자유의지, 범죄취약성 등을 설명하는 피해자 이론들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피해자들 관련 일상활동이론들을 가져와 설명한다. 다음 단계는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이들을 인신매매범죄에 의해 착취하는 구조 및 과정, 피해자를 통한

이윤착취와 이를 인신매매 조직으로 활성화시키는 구조와 과정,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 및 사회경제적 역할상실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저자들의 의욕적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몇 개의 이론적 가지들로 정리할 수 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과연 드러나지 않는 원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이론적 관점들을 연구에서 드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것은 인신매매를 설명하는 종속변수들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과정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연구의 길잡이로 삼기 위한 이론적 논의로서는 매우 훌륭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여성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인신매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인해 팔려가는 탈북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토양이 이미 중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80년대부터 중국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가부장사회문화 속에서 이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Zhao, 2003: 91). 인신매매의 “수요”가 상존했던 사회구조 및 문화적 토양 속에서 탈북여성들의 “공급”은 당연히 경제적 거래관계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상품이 되고 말았다.

그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탈북 후 국내에 들어와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S)와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관해 집중돼 있다. 하지만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인신매매 범죄피해라든가 인신매매 관련된 구조와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탐색적 연구는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인신매매 관련 브로커들이나 조직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기도 하다.

### 제3절 탈북자 인신매매에 대한 기존연구

#### 1. 푸시 인자(Push Factor)

북한 이주자들이 중국으로 이탈하는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북한의 경제 위기와 기근으로부터 시작되었다(Muico, 2005). 흥미롭게도 경제위기 이전에는 인구이동의 흐름은 오히려 거꾸로였다. Shen과 Xia(2014)는 1990년대에 가뭄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선족들이 중국에서의 빈곤과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경제가 몰락한 이래, 탈북자들은 기아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탈북을 감행하려고 했다(Ko, Chung & Oh, 2004; Muico, 2005). 그들은 기아와 경제적 동기로 인해 주로 탈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Muico, 2005). 1951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UN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다(제1조).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그들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간주되었고 정치적인 망명을 부여 하지 않았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는 북한 여성을 밀어내는 또 하나의 푸시 인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북한 여성은 저급한 저소득 일자리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노동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그들이 노동 인구집단에서 이탈한 이후에, 국가 식량배급에서 제외되고 남편의 소득에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여성들은 고령화된 부모(Davis, 2006)를 돌보는 것에 대한 기대로 더 큰 부담을 가져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일을 위해 중국으로 피신하거나 중국 남자와 결혼을 모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

다. 사실 중국에는 탈북자 중에는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한 연구는 탈북자의 약 3분의 2가 여성이라고 추정하고 있다(Kim, 2011).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는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당국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Ko, Chung & Oh, 2004; Kim, 2011에서 재인용). 탈북 가족들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반역자로 부정적 낙인을 받고 온 가족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탈북에 대한 처벌로 남은 가족들이 노동교화소로 보내진다. 만약 그들이 노동교화소에서 석방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고용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을 때 만일 잡힐 경우 북한으로 송환될 뿐만 아니라 그 경우 가족들이 당할 고통의 결과들을 두려워한다(Davis, 2006).

## 2. 풀 인자(Pull Factor)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 인구구성상 성불균형은 북한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풀 인자(pull factor)로 작용하고 있다(Davis, 2006). 1979년 중국 정부의 한 아이(one child) 정책의 실시와 남아선호 문화로 인해 중국 인구는 극심한 성 불균형을 겪었다 (Ko, Chung & Oh, 2004; Muico, 2005; Tucker & Hook, 2013). Tucker와 Hook(2013)은 중국은 2030년에 혼자 사는 남자가 최고 3천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가까운 장래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시골지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중국 도시지역으로 여성들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은 중국 농촌지역에서 여성부족 현상을 악화시킨다(Dvais, 2006; Kim et al., 2009; Ko, 2004; Muico, 2005). 한마디로 북한의 경제 위기와 함께 중국의 여성 수요증가는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특히 탈북자들을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를 만들 위험성을 증가시킨다(Kim, Yun, Park & Williams, 2009).

중국에서 여성인구의 부족은 중국에 있는 성매매산업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Tucker & Hook(2013)은 결혼 가능한 여성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혼자 사는 남성인구의 증가는 성매매 산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조직범죄 집단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촉진시키고 탈북여성들이 노래방이나 이국적인 바에서 성적 착취를 당할 가능성을 높인다(Kim et al., 2009). 특히 중국으로 몰래 넘어온 북한 여성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범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Kim et al., 2009). 여성 탈북자 중 약 80 퍼센트가 인신매매, 강제 노동, 강제 결혼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Kim, 2011).

### 3. 탈북 경로

#### 가. 독립적 경로

탈북자 대다수는 북한 이탈의 통로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연구(Ko, Chung & Oh, 2004)는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국경을 넘기 전에 탈북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국경을 넘은 후 재정적, 심리적으로 겪을 잠재적 위험을 이미 예측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80%가 현지 중국인들에게 팔아 넘겨진 탈북자들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탈북자 대다수가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여전히 제3자를 이용하여 북한을 이탈하고 있다(Ko, Chung & Oh, 2004; Kook, 2018). 최근 한 연구(Kook, 2018)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세 가지 방법으로, 1) 단독으로 하는 경우, 2) 밀수업자 또는 브로커를 직접 통하는 경우, 3) 제3자를 통해 탈북브로커를 소개받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대체로 연구 참가자의 3분의 1은 두만강에 근접한 지역을 잘 살펴 탈북의 가능성을 연구하거나 국경수비대에게 뇌물을 주어 스스로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었다(Kook, 2018).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될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Davis, 2006; Hughes, 2005; Kim, 2011; Muico, 2005). 인신매매자들은 국경을 따라 움직이다가 탈북 여성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을 통보받았다(Kim, 2011). 인신매매는 보통 불법체류자가 많이 모이는 도강 지역, 철도 역, 시장 또는 다른 장소에서 탈북자를 기다렸다(Davis, 2006; Muico, 2005). 한 연구에 의하면(Ko et al., 2004),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거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탈북 직후에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에 크게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원조는 단기적인 것이었지만 중국에 도착하자

마자 일할 기회를 찾았다. 대부분의 탈북자 들은 농업 분야에서 취업 기회를 찾았지만 그들이 받는 돈의 액수는 상당히 낮았고 종종 착취를 당하기 일쑤였다. 중국 농장 소유주들은 탈북자들의 불법지위를 이용했다.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중국 노무자와 동일한 보수를 받지 못했으며 때때로 전혀 일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탈북자들이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때, 중국 농장 소유자는 그들을 공안이나 관계기관에 알릴 거라고 위협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탈북자들은 보통 중국-북한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이 접근한다(Kim, 2011). 인신매매범들이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교감을 하고 도움을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을 유인하는 기만전술을 활용하기 시작한다(Kim, 2011). 탈북자들은 사기 고용기회나 강제결혼을 제공받게 된다. 인신매매범이나 브로커는 탈북여성들에게 중국 남성들을 만나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Davis, 2006; Ko, Chung & Oh, 2004). 탈북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절망감으로 인해 그들의 미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 연구(Kook, 2018)는 연구에서 탈북자의 약 70%가 여성이었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탈북여성들은 중국 남성에게 신부로 판매되었다.

## 나. 브로커 또는 제3자 활용

### 1) 브로커 및 인신매매 업자의 프로필

탈북자 관련 기존 연구에서 보통 브로커와 인신매매범은 서로 구분 없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한 연구(Kook, 2018)는 북한 여성들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범에게 브로커, 밀수업자, 중매쟁이 등 다양한 단어들로 그 사람들을 언급한 것을 발견하였다. 브로커는 한편 '좋은 브로커'와 '나쁜 브로커'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악의를 가진 좋지 않은 브로커들은 '인신매매범'으로 불렸다. Lindquist, Xiang & Yeoh(2012)의 연구는 브로커를 두 매매당사자들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브로커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혼자 또는 집단으로 여럿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익창출 목적에 의해 동기부여된다. 인신매매범은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그들이 피해자를 모집할 때 강제, 사기 혹은 강압적 위력을 사용한다. 모든 브로커와 밀수업자가 인신매매범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브로커 또는 인신매매범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조선족 남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Davis, 2006; Kim, 2011; Kim et al., 2009; Kook, 2018). 밀수업자와 인신매매범들이 탈북자를 팔아넘기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한 연구(Park et al., 2009)는 북한인, 조선족, 중국인 등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인신매매로부터 상호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조선족은 북한브로커와 한족 중국인 브로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선족은 탈북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북한 브로커의 경우 모집 과정에 적극적이다(Kim et al., 2009). 많은 경우에 탈북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팔렸다. 탈북자가 가족, 지인 또는 친구에 의해 판매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Davis, 2006; Kim, 2011; Kim, 2014; Muico, 2005). 한 연구(Kim et al., 2009; Kim, 2014)에 따르면 중개인이나 신병 모집자가 북한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이미 전에 탈북했던 사람들도 인신매매에 연루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중 67 %가 다른 탈북자에 의한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했다(Kook, 2018).

## 2) 인신매매 방법

Kim, Yun, Park & Williams(2009)는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방법의 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기회주의적 개별 범죄자로부터 보다 조직적인 범죄네트워크로 발전했다고 한다. 1996년 이전에는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자들은 밀매 농업이나 기타 업종에 팔려 갔고 이로 인한 브로커들의 수익도 상당했다. 따라서 조선족 농부들은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국경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납치하거나 그들을 강제결혼에 팔아넘겼다. 탈북여성이 인신매매를 통한 결혼제안을 거절했다면 그녀를 다른 곳에 팔거나 중국 경찰에게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할 것이다. 오늘날 인신매매범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서 활동한다. 개별 인신매매범이 몇 명의 개인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합작 브로

커 사업을 하거나 인신매매법이 기존 범죄조직과 협력할 수도 있다(Davis, 2006; Kim et al., 2009). 그러나 마약거래가 여전히 중국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범죄조직 중 극히 일부만이 여성 탈북자들을 인신매매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차츰 이들 조직이 증가하고 있었다(Kim et al., 2009).

### 3) 인신매매 산업

탈북자의 인신매매 거래에 가담한 인신매매범은 초국가적·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사례 연구(Kim et al., 2009)는 인신매매범들의 네트워크와 여성 탈북자들의 국가 간 인신매매 경로를 보고했다. 그들의 인신매매 방법은 4 단계로 나뉘어진다.

- 1) 1 단계: 북한에서 잠재 피해자를 모집하고 국경을 넘는 단계
- 2) 2 단계: 국경을 건넌 후 탈북자를 중간 인신매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단계
- 3) 3 단계: 중간 밀매자가 탈북자를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단계
- 4) 4 단계: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흔히 재 피해자가 되는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북한 주민들은 모집책의 역할을 하고 조선족들은 인신매매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Kim et al., 2009). 모집책 또는 밀수꾼은 인신매매 대상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고(Kim et al., 2009; Kook, 2018), 암시장에서의 탈북자 모집은 중년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Kim et al., 2009). 모집책이 잠재적 대상을 인지했을 때 일단 거짓 약속과 좋은 기회가 있다는 말로 북한 여성으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한 다음 유혹하고 기만한다(Davis, 2006; Kim, 2011; Kim et al., 2009; Muico, 2005). 북한 여성은 공장일, 가사도우미, 중국 남자와의 결혼 등을 미끼로 인신매매에 빠진다(Davis, 2006; Muico, 2005).

탈북 여성들은 국경을 넘은 후에 중간 브로커에게 넘겨지는 경우도 많다. 인신매매자들은 보통 외모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어디로 팔지를 결정하였다(Hughes, 2005; Kim et al., 2009). 팔려간 북한여성들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

탈북 여성들이 한번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다시 또 다른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꽤나 흔한 일이다(Davis, 2006; Kim et al. 2009). 때로는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이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은신처에 숨어 있는 탈북여성들을 찾기

도 한다(Kim et al. 2009). 팔려가는 피해자들의 경우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업소에 다시 팔려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중국인 남편이 북한 여성인 아내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심지어 다른 브로커에게 되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Davis, 2006; Kim 2011; Kim et al. 2009). 또 한편으로 중국 경찰과 국경 수비대가 인신매매에서 빠져나온 탈북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들을 체포해서 다른 곳으로 팔아넘긴 사례들도 보고되었다(Davis, 2006; Hughes, 2005).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심리적 외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연구결과가 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다(최현실, 2013; 김영수, 2003; 정은미, 2005; 김강녕, 2006; 송영훈, 2016; 엄태완, 2009; 성경현, 2014; 최현실, 2011; 이화진, 2011a; 이화진, 2011b; 국가인권위원회 외, 2009).

#### 다. 모든 사람이 인신매매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이 강제 결혼을 위해 인신매매를 당하지만, 일부 탈북여성들은 자신과 중국 남자 사이의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결혼상대를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Muico, 2005). 이 같은 합의에 의한 결혼은 탈북자들과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 남자와의 결혼은 살 집, 음식, 물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Muico, 2005; Kim, 2014). 결혼이 확실한 생존방식이고 성공적인 이주의 방법이 된다는 인식도 퍼졌다.

보다 최근의 민족지학(ethnography)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이 국경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혹은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자금축적 등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Kim, 2014). 탈북여성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미 탈북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할 것을 예상하고, 결혼 후 중국 남편과 어느 정도의 감정적 유대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동안 중국어도 배우고 돈도 모아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Kim,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을 위한 인신매매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탈북 여성의 경우 반드시 이 과정에서 가혹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Kook, 2018). 인신매매로 인한 위험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자들이 결혼생활을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하는 면도 발견되었다(Kim, 2011).

#### 4. 한국 정착

탈북자들은 중국에서의 지위가 불법이주민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한 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조차 이러한 불법적인 지위로 인해 항상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중국 공안에 적발되었을 경우 북한으로 강제 이송될 수 있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한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생활로 인해 기회가 있으면 남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Kim, 2014).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정착 프로그램 후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일단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원들을 통해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연구결과들은 이들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차츰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2014).

한편 일부 탈북자들은 각종 지원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 때문에 남한에 정착 한 후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었다(Kim, 2014; Kim, 2017). 또 연구결과들은 탈북자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주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3세계 국가에 가서 일하는 것이 편견과 차별이 있는 남한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남한에 남아서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Kim, 2017).

## 제 3 장

# 연구방법



# 연구방법

기존 탈북자 관련 연구들은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탈북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탈북자들이 겪은 인신매매범죄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탈북 여성이 국경을 넘은 이 후 인신매매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인신매매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누구인지, 인신매매와 관련된 브로커들의 활동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 제1절 자료의 수집

### 1. 설문조사

#### 가. 표본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먼저 이들에 대한 섭외와 설문조사 동의의 과정을 거쳤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전체 탈북자의 수와 이들 중 여성 탈북자의 수를 고려하고 또 전체 가용연구비를 고려하여 목표 표본수는 200명으로 정하였다. 먼저 조사원 2명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들을 섭외하도록 하였다.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천, 수원, 평택, 서울 등 다섯 개 지역에서 각각 응답자들을 섭외하였으며 조사원 교육을 통해 탈북시기, 나이, 한국 정착시기

들을 고려하여 골고루 표집되도록 하였다.\* 연구의 성격상 탈북자들이 경험한 내용들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은 무작위표집(random sampling)에 비해 이점이 있다. 편의표집을 통해 탈북여성들이 겪는 강제결혼 피해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섭외를 위해 자녀들을 중국이나 북한에 두고 있는 여성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먼저 섭외하였으며 이들로 하여금 조사대상자들이 충분히 섭외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북한관련 활동 단체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 대상자들을 섭외하였다.

조사는 2018년 8월4일부터 8월17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조사보조원은 각 지역에서 한 장소에 5명에서 12명 정도 함께 모이도록 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탈북자 중에 섭외된 탈북자 출신 조사보조원은 설문참여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다. 참가자는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데에는 개인별 해당되는 문항의 숫자와 개인별 문항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 최소 2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는 설문조사 사례로 상품권이 제공되었다.

## 나. 변수의 측정

### 1) 탈북동기 및 과정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여성 응답자들의 탈북동기, 탈북정보의 취득경로, 탈북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 탈북과정에 브로커 개입 여부 등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 표집방법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의 N동, W동, 인천의 N동, D동, 부천의 B동, 수원시 O동, H동, 평택의 B동 등 전체 8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에서 단지별로 응답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여러 군데로 나누어 한 곳에 모이는 인원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2명을 넘지 않았으며, 조사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설문문항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설문지 응답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간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았다.

\*\* 편의표집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연구결과의 분석과 해석에서 전체 모집단을 이들 표본들이 반드시 대표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탈북여성 모집단을 그 동안 탈북해서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의 잠정치인 22,776명이라 가정하면, 유효표본 201명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6.85\%$ 이고, 모집단이 무한하다고 가정할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6.91\%$ 이다.

넘기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질문문항들을 보면, “귀하가 북한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을 떠나기 전에 떠나는 방법이나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북한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복수응답) 등이다. 각 질문들에 대해서 탈북여성들과의 면접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을 통해 응답범주를 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 2) 브로커 개입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의 존재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북한을 떠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또 여기에 브로커의 개입 여부 및 그들의 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탈북과정에서 나타나는 브로커 활동이 어느 정도 이들의 탈북에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들은,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누구 입니까?”(복수응답), “돈을 요구한 사람별로 각각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북한 국경을 넘는데 개인적으로 모두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귀하의 탈북 과정이나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브로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로커를 어디에서 만났거나 소개를 받았습니까?”, “브로커는 맨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브로커가 접근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복수응답) 등 질문항목들을 포함시켰다.

이어서 브로커의 나이, 성별, 인원, 활동지역, 정체성 등에 관한 질문과 함께 브로커와 같이 있을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일련의 질문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들 브로커로부터의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 3) 탈북 및 복송경험

탈북여성들이 탈북 시 누구와 같이 국경을 넘었는지, 또 사업상 국경을 넘은 경우를 질문하여 탈북을 위한 월경과 북한에서의 탈출을 위해 월경한 경우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 탈북 시도 횟수, 탈북지역, 그리고 복송경험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 4) 탈북 직후 중국에서의 경험

국경을 넘은 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 만에 결혼 등을 통해 정착을 하게 됐는지, 머물렀던 도시는 어디인지, 중국에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국에 살았는지, 한국에 올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중국에서 신분상 안정이 되었었다면 중국에 계속 살 의향은 있었는지 등에 관해 물어 보았다.

#### 5)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죄 피해상황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각 피해유형별 구체적인 상황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 ① 일반적 상황

일반적 질문들은 먼저, “귀하는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경험이 있으십니까?” “귀하는 중국에서 어떤 종류의 인신매매를 경험하셨습니다?”(복수응답) “귀하가 중국에서 경험한 인신매매 유형별로 기간을 적어주세요”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귀하는 몇 살이었습니까?” “귀하는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북한에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은 탈북 후 얼마 후였습니까?” 등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위한 질문들로 시작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과정과 자발적인 연루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신매매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는지(예컨대 결혼의 경우 어떤 이유로 빠져 나왔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 ② 강제결혼

탈북여성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가장 많이 경험한 인신매매는 강제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항목들은 강제결혼의 여부, 나이, 횟수, 지속기간, 강제결혼의 이유, 결혼상대방 등에 관한 기본적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 상황, 만족도, 학대 및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일련의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결혼 만족도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가사분담, 부부관계, 가족원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결혼 상대방에 대한 일련의 문항들을 통해 결혼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③ 성매매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제성매매의 경우 먼저 “귀하가 중국에 있는 동안 업소 등에서 성매매, 마사지 시술소, 컴퓨터로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을 구별해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계속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들은,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기간, 탈북 전 성매매경험 인지여부, 성매매에 연루된 이유, 유형, 할당량, 대가의 직접 수수여부, 대가 액수 등을 물어보았다. 이어서 성구매자 및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일련의 질문항목들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④ 강제노동

탈북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강제노동은 먼저 “귀하가 중국에 있는 동안 강제로 농장일, 나무하는 일, 식당종업원 등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관련 질문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유형들은 앞의 강제성매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항목들을 활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들은, 강제노동을 경험한 나이, 기간, 탈북 전 강제노동 인지여부, 강제노동에 연루된 이유, 유형, 할당량, 대가의 직접 수수여부, 대가 액수 등을 물어보았다. 이어서 강제노동 알선자에 대한 일련의 질문항목들을 통해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⑤ 장기적출

중국에 있을 동안 혹시 탈북여성들이 장기적출의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귀하는 불법 장기적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경험했거나 피

해를 당할 뻔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장기적출 알선자와 구매자 관련 일련의 문항들을 통해 구체적인 현상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 ⑥ 중국에서 범죄피해로부터의 탈출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중국에서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 일부는 북한에 있을 때 이미 남한으로 가는 루트에 남한의 가족과 같이 준비된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형적인 경우는 중국에서 신부로 팔려가서 살다가 그 곳을 빠져나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가 연결되어 있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지불했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 ⑦ 한국 정착 생활에 대한 인식

한국에 들어온 후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도, 만족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운 점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들에 대해 그 필요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 ⑧ 법 준수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 여성들의 법준수의식을 묻기 위해 1)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는 법을 어겨도 좋다, 3)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들도 법을 위반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5) 법을 위반하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6)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7)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죽여도 된다, 8)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등 여덟 개의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했다.

#### ⑨ 북한 및 중국의 자녀 문제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 있는 자녀들의 문제는 이들 북한이탈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질문항목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 있는 자녀가

있는지, 이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양육비나 생필품을 전달해 주고 있는지, 또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⑩ 자존감, 자기통제력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자존감은 다음의 4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2) 나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 3)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4) 나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자기통제력은 Grasmick and Bursik(1993)의 6개 차원의 자기통제 측정 문항 중에 각 차원에서 한 개씩 사용하였다. 그 항목들은, 1) 나는 재미로 위험한 일을 하곤 한다, 2) 나는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3)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4) 나는 책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 5) 나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 즐거운 일을 우선하고 본다,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이들 문항들은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질문들로 출생연도, 입국시기, 하나원 기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 북한 출신 지역, 북한에서의 직업, 현재 가족 총수입, 가족 수 등을 질문하였다.

### 다. 자료의 분석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이 연구가 북한이탈 여성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의 과정과 구조파악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그 다양한 현실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연구의 목적이기에 빈도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과 항목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연구문제들이다.\*\*

\* 자존감과 자기통제력은 범죄학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독립변수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이 변수의 기술적 통계가 이 연구에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 필요한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인신매매 범죄피해 관련 변수들이 한국사회 적응도 및 만족도에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교차분석은 연령, 학력, 최종 탈북시기, 중국체류기간,公安체포경험, 학대경험, 중국결혼생활 만족도, 남한 입국시기 등에 따른 탈북과정(탈북비용 지출, 돈 요구받은 경험 등) 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남한생활의 만족도 및 적응도와 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2. 심층면접 조사

### 가. 심층면접 조사 절차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탈북여성들이 겪는 탈북과정과 중국에서 인신매매 관련 내용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조사문항에서 밝혀지는 것 이상으로 깊이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은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탈북자 관련 NGO 두 곳을 통해 섭외하였다. 자녀들을 중국에 두고 있는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의뢰해서 15명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섭외하였으며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8명을 섭외하였다. 선정된 면접 참여자들은 미리 전화 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한 1명의 면접원이 1회기 최소 2시간에서 5시간에 걸쳐 면담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더 필요한 참여자들은 바로 다음날로 시간을 정해서 추가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은 면접자와 참여자의 래포(rapport) 형성과 시간적 제약을 덜 받기 위해 참여자에 집에서 주로 다른 가족원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집중해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면접은 2018년 8월6일부터 8월2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 참가자는 면접에 앞서서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절차 및 성격을 구두로 알리고 기밀 유지 및 익명성 보장받았다. 면접 도중 참여자가 원하면 아무 때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면접내용은 동의를 얻어 녹음기로 녹취하였다. 녹취한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 면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인터뷰가 끝나면 참여자들은 면접을 위해 할애한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1인당 15만원의 사례비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를 받았다.

## 나. 면접의 내용 및 분석방법

사례연구로 진행된 심층면접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지들을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면접의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접자는 참여자가 대답하는 내용들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순서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다. 면접자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보충질문을 해서 참여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면접에 활용된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A. 인신매매

1. 왜 북한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까?
2. 얼마나 오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까?
3. 국경을 넘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4. 국경을 어디에서 건너셨습니까?
5. 누가 당신을 도주시켰습니까?
6. 언제 국경을 넘기로 결정했습니까?
7. 국경을 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B. 인신매매 및 범죄 조직의 배경

1. 인신매매 브로커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2. 브로커는 남자였습니까 혹은 여자였습니까?
3. 인신매매범이 어떻게 당신을 끌고 갔습니까? 할 수 있으시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 끌려간 인신매매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5. 인신매매에 끌려갔을 때 몇 살이셨습니까?
6. 가해자가 범죄 조직원이었거나 혹은 범죄 조직에서 물건을 구입 했습니까?
7. 가해자 또는 범죄 조직원이 특별한 엠블럼이나 색깔, 또는 특별한 손동작을 사용했습니까?
8. 그가 범죄 조직에 있었다면, 범죄 조직에 얼마나 많은 조직원이 있었습니까?
9. 범죄 조직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 및 지역?)
10. 범죄 조직원도 같은 곳에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 조직의 회원은 어떤 국가와 도시에서 왔습니까?

\* 여기에 포함된 질문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질문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면접 대상자들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이들에게 관련되는 질문 문항들도 거기에 맞도록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 문항들은 연구자가 연구를 위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접질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 조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이었습니다가?
12. 그들은 사업을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인신매매 서비스)? (국가, 지역, 지역 등)
13. 범죄 조직원들이 귀하를 심하게 감시했습니까? 그들이 귀하를 어떻게 감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 판매되기 전에 가해자 또는 범죄 조직에 얼마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까?
15. 그들은 귀하를 어떻게 광고했습니까?
16. 귀하는 얼마에 팔렸습니까?
17. 중국인 남편이 현금으로 돈을 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18. 신부로 팔리기 전에 다른 희생자가 얼마나 많이 귀하와 함께 매매가 되었습니까?
  - 가. 그들의 성별, 나이 및 출신 국가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나. 그들의 가격은 귀하와 같았습니까? 가격이 다른 경우 왜 가격이 달라졌으며 가격은 얼마입니까?

### C. 신부로서의 경험

1. 귀하는 어느 도시에서 신부로 팔렸습니까?
2. 남편이 일하게 하거나 강제로 집에 남게 했습니까?
  - 가. 귀하가 일할 수 있었다면, 귀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가?
  - 나. 귀하는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3. 남편이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당신을 학대했습니까?
  - 가. 만약 그랬다면 어떤 방식이었습니다가?
4. 남편의 가족이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당신을 학대했습니까?
  - 가. 만약 그랬다면 어떤 방식이었습니다가?
5. 남편이 귀하를 재판매했습니까?
  - 가.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누구에게 재판매를 했습니까?
  - 나. 팔린 후 귀하의 새로운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가? (예: 강제 신부 또는 성매매 여성)
  - 다. 어디에서 팔렸습니까? (시 /도)
  - 라. 팔리기 전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마. 그는 귀하를 얼마에 재판매했습니까?
  - 바. 그는 왜 귀하를 재판매했습니까?
6. 여러 번 판매된 경우 합계로 판매된 횟수는 몇 번입니까? 이전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매번의 경험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 가. 판매의 경험마다:
    - a. 그는 누구에게 재판매를 했습니까?
    - b. 귀하가 팔린 후에 당신의 새로운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가? (예: 강제 신부 또는 성매매 여성)
    - c. 어디에서 팔렸습니까? (시 /도)
    - d. 팔리기 전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e. 그는 귀하를 얼마에 재판매했습니까?

- f. 그는 왜 귀하를 재판매했습니까?
7. 중국에서의 강제 신부로서의 전반적인 경험을 묘사하십시오.

#### **D. 인신매매 종료**

1. 강제 결혼에서 탈출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2. 귀하는 얼마나 오래 강제 신부였습니까?
3. 중국 남편을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4. 다른 강제 신부가 탈출한 것을 목격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탈출은 성공했습니까?
5. 귀하가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때 법 집행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남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 탈출하는 동안 공안이나 다른 기관원에게 붙잡힌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 귀하 또는 귀하의 남편을 팔았던 범죄 조직 / 인신매매업자로부터의 보복 등을 두려워합니까?
8. 인신매매를 피해 피난소를 찾은 후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9. 피난소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10. 설문지에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 **E. 인구통계학적 질문**

1.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3. 어느 도시에 거주하십니까?
4. 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5.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가. 어떻게 그 직업을 찾았습니까?
  - 나.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7. 귀하가 받은 학교 교육은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8.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제 4 장



#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북한이탈 주민 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난 201명 응답자들의 특성이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1.3%, 30대가 23.9%, 50대가 18.4%, 20대 이하가 12.4%로 나타났다. 이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앞의 제2장에서 제시한 입국자들의 연령분포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장에서 본 입국자들의 연령은 입국 시 연령이며 <표 4-1>에 제시된 연령은 입국한 이후 현재 남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분포를 보여 준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연령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이유로 입국시의 연령분포가 30대, 20대, 40대의 순으로 많은 것과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 차이의 패턴에 있어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우 40대, 30대, 50대의 순서로 비율이 많은 것과 입국시의 연령분포는 시차를 두고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고 설문조사의 표집방법이 임의표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분포가 약 10년 단위로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은 표집의 대표성을 일부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북한에서 받은 최종학력을 보면 고등중학교 이하가 69.7%이고 전문대학 이상이 16.9%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여성들의 탈북 전 거주 지역은 함경남북도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강도·양강도가 22.9%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는 미혼이 37.8%, 기혼이 26.4%, 동거(사실혼)가 7.0%로 나타났다. 현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30.7%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200만원대와 300만원대는 각각 7.5%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응답자들의 최종 탈북 시기는 분석을 위해서도 중요한 변수이다. 응답자들을 최종 탈북시기별로 나누어보면, 2010년~2014년까지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5년~2009년이 19.9%, 2000년~2004년이 18.9%, 2000년 이전이 15.9%의 순으로 뒤를 따랐다. 국경을 넘은 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체류한 기간을 나누어보면, 5~10년이 29.4%, 2~5년이 22.9%, 2년 이하 20.4%이었으며 10년을 넘는 응답자들은 26명으로 12.9%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남한 입국시기를 2010년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보면, 2010년 이전이 72명(35.8%), 2010년~2014년과 2015년 이후가 각각 57명으로 28.4%를 차지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        |                  | 사례수 | 퍼센트     |
|--------|------------------|-----|---------|
|        |                  | 201 | (100.0) |
| 연령     | 19~29세           | 25  | (12.4)  |
|        | 30~39세           | 48  | (23.9)  |
|        | 40~49세           | 63  | (31.3)  |
|        | 50~59세           | 37  | (18.4)  |
|        | 60세이상            | 14  | (7.0)   |
|        | 무응답              | 14  | (7.0)   |
| 북한최종학력 | 고등중학교 이하         | 140 | (69.7)  |
|        | 전문대학교 이상         | 34  | (16.9)  |
|        | 무응답              | 27  | (13.4)  |
| 북한거주지역 | 함경남북도            | 126 | (62.7)  |
|        | 자강·양강도           | 46  | (22.9)  |
|        | 평안남북도            | 6   | (3.0)   |
|        | 평양               | 5   | (2.5)   |
|        | 강원도·개성           | 4   | (2.0)   |
|        | 황해남북도            | 2   | (1.0)   |
|        | 무응답              | 12  | (6.0)   |
| 혼인상태   | 미혼               | 76  | (37.8)  |
|        | 기혼(배우자 있음)       | 53  | (26.4)  |
|        | 동거(사실혼)          | 14  | (7.0)   |
|        | 기타(사별, 별거, 이혼 등) | 15  | (7.5)   |
|        | 무응답              | 43  | (21.4)  |

|             |                | 사례수 | 퍼센트     |
|-------------|----------------|-----|---------|
|             |                | 201 | (100.0) |
| 월평균<br>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75  | (37.3)  |
|             | 100만원~200만원 미만 | 61  | (30.3)  |
|             | 200만원~300만원 미만 | 15  | (7.5)   |
|             | 300만원~400만원 미만 | 8   | (4.0)   |
|             | 400만원~500만원 미만 | 6   | (3.0)   |
|             | 500만원~600만원 미만 | 1   | (0.5)   |
|             | 600만원~700만원 미만 | 1   | (0.5)   |
|             | 무응답            | 34  | (16.9)  |
| 최종탈북시기      | 1994~1999년     | 32  | (15.9)  |
|             | 2000~2004년     | 38  | (18.9)  |
|             | 2005~2009년     | 40  | (19.9)  |
|             | 2010~2014년     | 54  | (26.9)  |
|             | 2015~2017년     | 12  | (6.0)   |
|             | 무응답            | 25  | (12.4)  |
| 중국체류기간      | 2년 이하          | 41  | (20.4)  |
|             | 2년~5년이하        | 46  | (22.9)  |
|             | 5년~10년이하       | 59  | (29.4)  |
|             | 10년 초과         | 26  | (12.9)  |
|             | 무응답            | 29  | (14.4)  |
| 입국시기        | 2010년 이전       | 72  | (35.8)  |
|             | 2010~2014년     | 57  | (28.4)  |
|             | 2015년 이후       | 57  | (28.4)  |
|             | 무응답            | 15  | (7.5)   |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북한 학력 합쳐서)”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18.9%,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16.9%이 그 뒤를 이었다.\*

\*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귀하의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은 무엇인가요?(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부가 32명, 회사원 19명, 학생 12명, 기타 다양한 직업이 58명으로 응답되었다. 나머지 80명은 무응답이었다.

[표 4-2] 최종 학력(남북한 학력 합쳐서)

|                 | 빈도  | 퍼센트     |
|-----------------|-----|---------|
| 무학(학교에 다닌 적 없음) | 2   | (1.0)   |
|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4   | (2.0)   |
|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 38  | (18.9)  |
|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81  | (40.3)  |
|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 34  | (16.9)  |
| 대학원 이상          | 8   | (4.0)   |
| 무응답             | 34  | (16.9)  |
| 총계              | 201 | (100.0) |

“귀하는 현재 북한에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201명 중 151명(75.1%)이 가족이 북한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28명(13.9%)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귀하는 현재 중국에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0명(19.9%)이 있다고 응답했고 118명(58.7%)이 없다고 대답했다.

[표 4-3] 북한 가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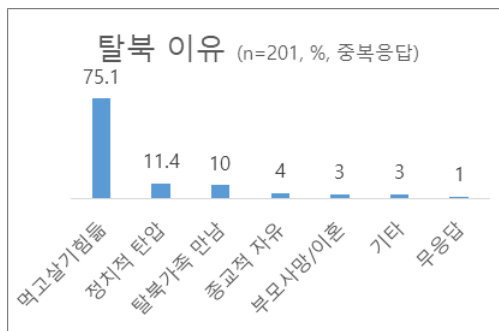
|     | 빈도  | 퍼센트     |
|-----|-----|---------|
| 있다  | 151 | (75.1)  |
| 없다  | 28  | (13.9)  |
| 무응답 | 22  | (10.9)  |
| 총계  | 201 | (100.0) |

[표 4-4] 중국 가족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있다  | 40  | (19.9)  |
| 없다  | 118 | (58.7)  |
| 무응답 | 43  | (21.4)  |
| 총계  | 201 | (100.0) |

## 제2절 탈북 동기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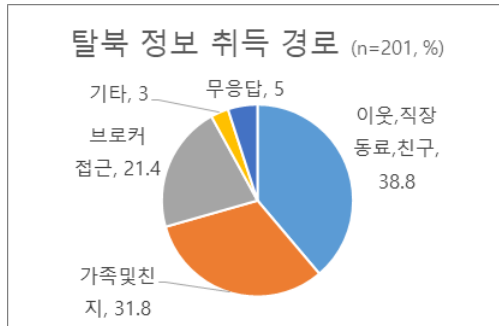
북한이탈 여성들은 중국으로 국경을 넘게 되는 다양한 동기와 이유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월경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밝히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게 된 동기를 “귀하가 북한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을 통해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4-1>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 탈북 이유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이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가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탄압”11.4%, “탈북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10%, “종교적 자유”4%, “기타”응답은 어머니 고향, 인신매매, 사기, 돈 벌기 위해 등으로 답한 응답자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정보는 탈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어 질문은 “북한을 떠나기 전에 떠나는 방법이나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그림 4-2] 탈북 정보 취득 경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관련 정보 취득 경로는 “이웃, 직장동료, 친구”등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지” 31.8%, “브로커 접근” 2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준비과정을 거쳐 몇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공했는지 물어 보았다. 운이 좋게도 한번에 월경에 성공한 경우가 127명, 63.2%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시도한 경우도 29명, 14.4%, 세 번 시도한 경우는 13명, 6.5%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탈북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과연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 6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한 31.3%로 나타나 중국과 남한이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탈북 시도 횟수

|     | 빈도  | 퍼센트     |
|-----|-----|---------|
| 1   | 127 | (63.2)  |
| 2   | 29  | (14.4)  |
| 3   | 13  | (6.5)   |
| 4   | 1   | (0.5)   |
| 5   | 1   | (0.5)   |
| 6   | 2   | (1.0)   |
| 무응답 | 28  | (13.9)  |
| 총계  | 201 | (100.0) |

[표 4-6] 탈북 최종 목적지

|     | 빈도  | 퍼센트     |
|-----|-----|---------|
| 중국  | 130 | (64.7)  |
| 남한  | 63  | (31.3)  |
| 일본  | 3   | (1.5)   |
| 미국  | 1   | (0.5)   |
| 북한  | 1   | (0.5)   |
| 무응답 | 3   | (1.5)   |
| 총계  | 20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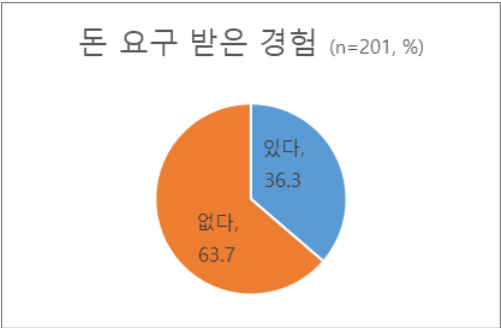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탈북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

|                   | 퍼센트    |
|-------------------|--------|
| 사례수               | 201    |
| 브로커               | (43.8) |
|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 | (24.4) |
|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 | (13.4) |
| 도움 받은 적이 없다       | (11.4) |
| 친구                | (2.5)  |
| 기타                | (2.5)  |
| 무응답               | (5.5)  |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는 “브로커”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24.4%), “남한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를 다음 그림에 나와 있다.



[그림 4-3] 탈북 과정에서 돈을 요구 받은 경험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받은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탈북 과정에 돈을 요구한 사람

|            | 전체     |
|------------|--------|
| 사례수        | 73     |
| 브로커        | (74.0) |
| 북한군인       | (23.3) |
| 중국인(중국브로커) | (2.7)  |
| 중국군인       | (1.4)  |
| 아는 사람      | (1.4)  |
| 무응답        | (5.5)  |

돈을 요구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추가 질문으로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복수응답)라고 물어보았다. 결과는 브로커에게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7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북한군인(23.3%), 중국브로커(2.7%), 중국군인(1.4%)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사람별로 각각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통해 브로커나 북한군인에게 각각 얼마나 지불했는지 알아보았다.

[표 4-9] 탈북 과정 지불 비용: 브로커

|                | 빈도                      | 퍼센트     |
|----------------|-------------------------|---------|
| 1,000위안 이하     | 11                      | (20.4)  |
| 1,001~5,000위안  | 9                       | (16.7)  |
| 5,001~10,000위안 | 7                       | (13.0)  |
| 10,000위안 초과    | 14                      | (25.9)  |
| 무응답            | 13                      | (24.1)  |
| 총계             | 54                      | (100.0) |
| 평균             | 10,878위안(한화 1,773,042원) |         |

[표 4-10] 탈북 과정 지불 비용: 북한 군인

|                | 빈도                   | 퍼센트     |
|----------------|----------------------|---------|
| 1,000위안 이하     | 4                    | (23.5)  |
| 1,001~5,000위안  | 3                    | (17.6)  |
| 5,001~10,000위안 | 1                    | (5.9)   |
| 무응답            | 9                    | (52.9)  |
| 총계             | 17                   | (100.0) |
| 평균             | 2,663위안(한화 433,988원) |         |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가 요구한 금액은 평균 10,878위안(한화 1,773,042원, 1위안 =163원 기준)이고, 북한 군인이 요구한 금액은 평균 2,663위안(한화 433,988원, 1위안 =163원 기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돈 요구받은 경험”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chi^2 = 6.123(p=.294, d.f.=5)$ 로 나타나  $\alpha$ (알파)=.05 수준에서, 돈 요구받은 경험이 나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1] 탈북 과정에서 나이에 따른 돈을 요구 받은 경험

|    |        | 있다       | 없다       | 전체  |
|----|--------|----------|----------|-----|
| 연령 | 19~29세 | 6(24.0)  | 19(76.0) | 25  |
|    | 30~39세 | 18(37.5) | 30(62.5) | 48  |
|    | 40~49세 | 23(36.5) | 40(63.5) | 63  |
|    | 50~59세 | 11(29.7) | 26(70.3) | 37  |
|    | 60세이상  | 7(50.0)  | 7(50.0)  | 14  |
|    | 무응답    | 8(57.1)  | 6(42.9)  | 14  |
| 전체 |        | 73       | 128      | 201 |

이어서 북한최종 학력에 따른 돈 요구받은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2.943(p=.230, d.f.=2)$ 으로  $\alpha=.05$  수준에서 “북한최종 학력”과 “돈 요구받은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북한최종학력과 탈북 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은 경험

|                |          | 있다       | 없다       | 전체  |
|----------------|----------|----------|----------|-----|
| 북한<br>최종<br>학력 | 고등중학교 이하 | 55(39.3) | 85(60.7) | 140 |
|                | 전문대학교 이상 | 8(23.5)  | 26(76.5) | 34  |
|                | 무응답      | 10(37.0) | 17(63.0) | 27  |
| 전체             |          | 73       | 128      | 201 |

또한 “북한 최종 탈북 시기별 돈 요구받은 경험”에 대한  $\chi^2$  분석 결과  $\chi^2=13.310(d.f.=5)$ 이고, 유의확률( $p=.021$ )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탈북 시기”와 “돈 요구받은 경험”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탈북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최종 탈북 시와 탈북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은 경험

|            |            | 있다       | 없다       | 전체  |
|------------|------------|----------|----------|-----|
| 최종탈북<br>시기 | 1994~1999년 | 9(28.1)  | 23(71.9) | 32  |
|            | 2000~2004년 | 14(28.1) | 24(71.9) | 38  |
|            | 2005~2009년 | 19(47.5) | 21(52.5) | 40  |
|            | 2010~2014년 | 15(27.8) | 39(72.2) | 54  |
|            | 2015~2017년 | 9(75.0)  | 3(25.0)  | 12  |
|            | 무응답        | 7(28.0)  | 18(72.0) | 25  |
| 전체         |            | 73       | 128      | 201 |

다음은 중국 체류 기간과 돈 요구받은 경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 8.299$ 이고, 유의확률( $p=.081$ )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중국 체류 기간”과 “돈 요구받은 경험”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중국체류기간과 탈북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은 경험

|            |          | 있다       | 없다       | 전체  |
|------------|----------|----------|----------|-----|
| 중국체류<br>기간 | 2년 이하    | 21(51.2) | 20(48.8) | 41  |
|            | 2년~5년이하  | 16(34.8) | 30(65.2) | 46  |
|            | 5년~10년이하 | 17(28.8) | 42(71.2) | 59  |
|            | 10년 초과   | 6(23.1)  | 20(76.9) | 26  |
|            | 무응답      | 13(44.8) | 16(55.2) | 29  |
| 전체         |          | 73       | 128      | 201 |

“북한 국경을 넘는데 개인적으로 모두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0위안 이하가 1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0위안 초과가 9.0%, 1,001~5,000위안아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국경을 넘는데 지출한 총 비용은 평균 7,867위안(한화 1,282,305원, 1위안=163원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화로 계산해 보면 돈을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평균 지출한 액수는 약 128만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탈북 과정에서 총 지출 비용

|                | 빈도                     | 퍼센트   |
|----------------|------------------------|-------|
| 지출비용 없다        | 22                     | 10.9  |
| 1,000위안 이하     | 33                     | 16.4  |
| 1,001~5,000위안  | 9                      | 4.5   |
| 5,001~10,000위안 | 8                      | 4.0   |
| 10,000위안 초과    | 18                     | 9.0   |
| 무응답            | 111                    | 55.2  |
| 총계             | 201                    | 100.0 |
| 평균             | 7,867위안(한화 1,282,305원) |       |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브로커에게 외상으로”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북한에서 스스로 모은 돈”(18.4%),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11.9%), “친척, 친구 등에게 빌림”(8.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탈북한 결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실제로 이들이 소지한 돈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6] 탈북 자금 마련

|                                | 빈도  | 퍼센트     |
|--------------------------------|-----|---------|
| 브로커에게 외상으로                     | 56  | (27.9)  |
| 북한에서 스스로 모은 돈(북한에 있는 가족의 지원포함) | 37  | (18.4)  |
|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 24  | (11.9)  |
| 나중에 갚기로 하고 친척, 친구 등에게 빌림       | 17  | (8.5)   |
| 선교단체, 시민단체 등 구조단체를 통해서         | 4   | (2.0)   |
| 중국에서 번 돈으로                     | 1   | (0.5)   |
| 팔려옴(돈 안냄)                      | 1   | (0.5)   |
| 자금마련 없음                        | 3   | (1.5)   |
| 무응답                            | 58  | (28.9)  |
| 총계                             | 201 | (100.0) |

탈북 시 지출비용이 탈북을 혼자 한 경우와 가족과 함께 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를 보면 혼자 탈북한 경우 1,000위안 이하가 57.6%로 나타났으나,

가족과 함께인 경우 10,000위안 초과가 44.4%로 나타나, 혼자 탈북했을 때보다 가족과 함께 탈북 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탈북 시 동행여부와 탈북 지출 비용

|        | 전체    | 없다   | 1,000위안<br>이하 | 1,001~<br>5,000위안 | 5,001~<br>10,000위안 | 10,000위안<br>초과 | 무응답   |
|--------|-------|------|---------------|-------------------|--------------------|----------------|-------|
| 사례수    | (201) | (22) | (33)          | (9)               | (8)                | (18)           | (111) |
| 혼자     | 43.8  | 31.8 | <b>57.6</b>   | 55.6              | 50.0               | 38.9           | 41.4  |
| 가족과 함께 | 20.4  | 31.8 | 18.2          | 22.2              | 25.0               | 44.4           | 14.4  |
| 기타     | 35.8  | 50.0 | 21.2          | 33.3              | 25.0               | 16.7           | 41.4  |
| 무응답    | 3.5   |      | 3.0           |                   |                    |                | 5.4   |

나이에 따라 탈북 시 동행한 가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 38.924(p=.001, d.f.=15)$ 으로 나타나,  $\alpha=.01$  수준에서 “연령”과 “탈북 시 동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과 함께 탈북하는 경향이 명확히 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인 경우 72%가 혼자 탈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혼자서 탈북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발견되었다.

[표 4-18] 연령 별 탈북 시 동행여부

|    |        | 혼자       | 가족과 함께   | 기타       | 무응답    | 전체  |
|----|--------|----------|----------|----------|--------|-----|
| 연령 | 19~29세 | 18(72.0) | 0        | 7(28.0)  | 0      | 25  |
|    | 30~39세 | 17(35.0) | 8(16.7)  | 22(47.9) | 1(2.1) | 48  |
|    | 40~49세 | 29(46.0) | 10(19.0) | 20(33.3) | 4(6.3) | 63  |
|    | 50~59세 | 14(37.8) | 6(21.6)  | 16(43.3) | 1(2.7) | 37  |
|    | 60세이상  | 3(21.4)  | 9(64.3)  | 1(7.1)   | 1(7.1) | 14  |
|    | 무응답    | 7(50.0)  | 3(28.6)  | 4(28.6)  | 0      | 14  |
| 전체 |        | 88       | 36       | 70       | 7      | 201 |

다음은 최종 탈북시기와 탈북과정 자금조달 방법이 관계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chi^2 = 67.980(p=.004, d.f.=40)$ 으로  $\alpha=.01$  수준에서 “최종 탈북 시기”와 “탈북과정 자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서 사례수가 적어 퍼센트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05년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2005년 이전에는 브로커에게 외상으로 하거나 나중에 갚기로 하고 친구나 친척에게 빌린 비율이 높고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조달한 경우가 적었던 반면 2005년도 이후에는 거꾸로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나중에 갚기로 하고 북한에서 친구나 친척에게 빌린 비율은 적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표 4-19] 최종탈북시기와 탈북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법

|                |                | 남한에<br>있는<br>가족을<br>통해서 | 선교단체<br>·시민단<br>체 등<br>구조단체<br>를 통해서 | 북한<br>에서 스스<br>로 모은 돈<br>(북한에 있<br>는 가족의<br>지원 포함) | 브로커<br>에게 외상<br>으로 | 나중에<br>갚기로<br>하고 친<br>척, 친구<br>등에게<br>빌림 | 중국에<br>서 번<br>돈으로 | 팔려움<br>(돈 안<br>냄) | 자금<br>마련<br>없음 | 무응답 | 전체  |
|----------------|----------------|-------------------------|--------------------------------------|----------------------------------------------------|--------------------|------------------------------------------|-------------------|-------------------|----------------|-----|-----|
| 최종<br>탈북<br>시기 | 1994~<br>1999년 | 0                       | 0                                    | 8                                                  | 6                  | 4                                        | 0                 | 0                 | 0              | 14  | 32  |
|                | 2000~<br>2004년 | 1                       | 0                                    | 7                                                  | 9                  | 5                                        | 0                 | 0                 | 2              | 14  | 38  |
|                | 2005~<br>2009년 | 7                       | 2                                    | 11                                                 | 13                 | 4                                        | 1                 | 0                 | 0              | 2   | 40  |
|                | 2010~<br>2014년 | 7                       | 2                                    | 6                                                  | 21                 | 2                                        | 0                 | 1                 | 1              | 14  | 54  |
|                | 2015~<br>2017년 | 6                       | 0                                    | 2                                                  | 2                  | 0                                        | 0                 | 0                 | 0              | 2   | 12  |
|                | 무응답            | 3                       | 0                                    | 3                                                  | 5                  | 2                                        | 0                 | 0                 | 0              | 12  | 25  |
| 전체             |                | 24                      | 4                                    | 37                                                 | 56                 | 17                                       | 1                 | 1                 | 3              | 58  | 201 |

“북한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 등에게 성적 대가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 등에게 성적 대가를 요구받은 사람들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5.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이 분석에서 기대 빈도수가 5 이하인 셀이 전체의 20% 이상(72.2%)이므로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4-20] 성적 대가 요구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11  | (5.5)   |
| 아니오 | 180 | (89.5)  |
| 무응답 | 10  | (5.0)   |
| 총계  | 201 | (100.0) |

“북한에서 중국으로 누구와 같이 국경을 넘었습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혼자”라는 응답이 43.8%로 나타났고, “친구, 지인 등”이 35.8%, “가족과 함께”가 20.4%로 응답해서, 혼자 국경을 넘기보다는 동행이 있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탈북 시 동행 여부

|        | 전체     | 비고       |
|--------|--------|----------|
| 혼자     | (43.8) |          |
| 기타     | (35.8) | 친구, 지인 등 |
| 가족과 함께 | (20.4) |          |
| 무응답    | (3.5)  |          |

“귀하는 탈북 이전에 사업상의 이유로 북한 국경을 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 중 북한에 거주하면서 탈북이 아닌 사업상의 이유로 국경을 넘나든 경험은 17.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사업상의 이유로 북한 국경을 넘은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있다 | 35  | (17.4)  |
| 없다 | 166 | (82.6)  |
| 총계 | 20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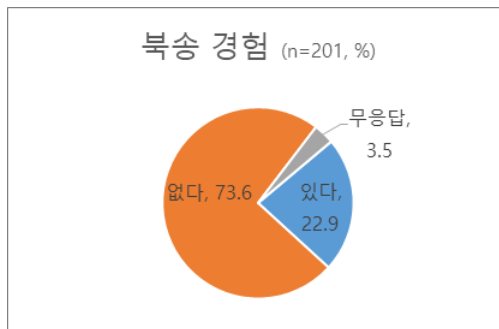
국경을 넘은 경우가 사실 탈북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여러 국경을 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국경을 넘나든 것은 몇 번입니까?”라는

질문에 왕복 몇 번인지 기입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사업상 이유로 북한 국경을 넘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35명이었으며 이들의 월경 경험 횟수는 평균 2.9회로 나타났다.

[표 4-23] 북한 국경 넘은 횟수

|       | 빈도   | 퍼센트     |
|-------|------|---------|
| 1번    | 11   | (31.4)  |
| 2번    | 10   | (28.6)  |
| 3번 이상 | 8    | (22.9)  |
| 무응답   | 6    | (17.1)  |
| 총계    | 35   | (100.0) |
| 평균    | 2.9회 |         |

“귀하는 탈북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되어 복송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된 경험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2.9%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탈북 과정에서 북송 경험 유무

북한을 떠날 때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과 함께 북한을 떠났는지 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여러 번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 표는 첫 번째 국경을 넘었을 때의 응답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 4-24] 탈북 시 동반 인원

|      | 빈도    | 퍼센트     |
|------|-------|---------|
| 1명   | 49    | (24.4)  |
| 2명   | 39    | (19.4)  |
| 3명   | 29    | (14.4)  |
| 4명   | 12    | (6.0)   |
| 5명이상 | 20    | (10.0)  |
| 무응답  | 52    | (25.9)  |
| 총계   | 201   | (100.0) |
| 평균   | 2.82명 |         |

탈북 시 동반인원은 혼자인 경우가 24.4%였으며 2명이 19.4%, 3명인 경우가 14.4% 등으로 나타났으며 5명 이상인 경우도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체 평균 동반인원은 2.82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탈북한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사업 때문에 국경을 여러 번 넘은 것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러 번의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에,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 최종 탈북시기를 다음 표에 제시하기로 한다.

[표 4-25] 최종 탈북 시기

|            | 빈도  | 퍼센트     |
|------------|-----|---------|
| 1994~1999년 | 32  | (15.9)  |
| 2000~2004년 | 38  | (18.9)  |
| 2005~2009년 | 40  | (19.9)  |
| 2010~2014년 | 54  | (26.9)  |
| 2015~2017년 | 12  | (6.0)   |
| 무응답        | 25  | (12.4)  |
| 총계         | 201 | (100.0) |

탈북 시기를 2000년 이전부터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대상자들은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빈도 분포는 임의표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빈도는 단지 최근으로 오면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되며, 조사에 포함된 표본들의 분포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4-26] 탈북 지역

|      | 빈도  | 퍼센트     |
|------|-----|---------|
| 양강도  | 40  | (19.9)  |
| 함경북도 | 75  | (37.3)  |
| 기타   | 21  | (10.4)  |
| 무응답  | 65  | (32.3)  |
| 총계   | 201 | (100.0) |

“탈북 시기별로 북한쪽 지역은 어디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경북도가 3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양강도 1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7] 탈북 시도 횟수

|     | 빈도    | 퍼센트     |
|-----|-------|---------|
| 1회  | 127   | (63.2)  |
| 2회  | 29    | (14.4)  |
| 3회  | 13    | (6.5)   |
| 4회  | 1     | (0.5)   |
| 5회  | 1     | (0.5)   |
| 6회  | 2     | (1.0)   |
| 무응답 | 28    | (13.9)  |
| 총계  | 201   | (100.0) |
| 평균  | 1.42번 |         |

삼엄한 경비를 피해 국경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는 지역과 시간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정보를 통해 결행하기 마련이다. 어떤 탈북자와의 면담에서는 1년 동안 군인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높은 곳에 올라서 조사한 후 가족들과 국경을 넘었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 “몇 번의 탈북시도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탈북 시도 횟수는 1번으로 성공한 경우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 시도해서 성공한 경우도 29명(14.4%)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탈북 시도 횟수는 1.42번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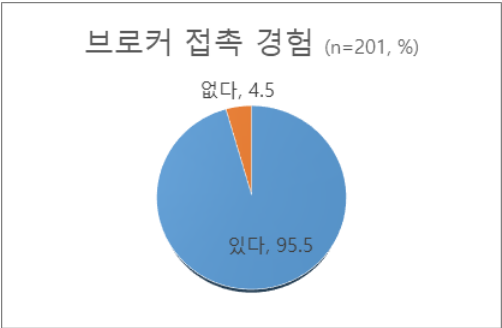
요약해 보면, 탈북여성 대부분은 정치적, 종교적 혹은 다른 이유보다도 먹고살기가 힘들어 탈북했으며 탈북관련 정보들은 이웃이나 직장동료, 가족 및 친지가 가장 많았

으며 브로커의 접근에 의한 것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 전체 응답자의 2/3에 근접했고 남한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 월경한 사람들은 약 1/3 정도 되었다. 탈북과정에 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약 1/3이 넘었고 요구한 사람은 브로커가 약 3/4, 북한군인이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브로커에게 지출한 돈은 평균 한국돈으로 177만원 정도로 나타났고 북한군인에게 제공한 돈은 평균 4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통한 흥미로운 발견은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일수록 탈북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과 함께 탈북하는 경향이 많았고 2005년 이전과 비교해서 그 이후에는 탈북자금을 브로커에게 외상으로 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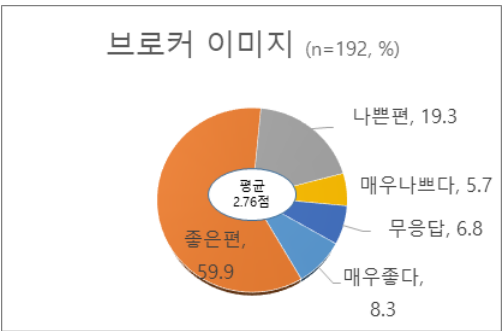
### 제3절 브로커에 대한 경험

앞에서 브로커가 접근해서 탈북을 하게 된 경우가 약 20% 정도가 되었으며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탈북여성들이 브로커와 접촉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귀하의 탈북과정이나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브로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에 나와 있다.



[그림 4-5] 브로커 접촉 경험



[그림 4-6] 브로커에 대한 이미지

\*평균척도: 1=매우나쁘다, 2=나쁜편, 3=좋은편, 4=매우좋다

이 결과를 보면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 접촉 경험은 조사 대상자의 95.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브로커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응답이 68.2%, 부정적인 측면이 25.0%(4점 척도 평균 기준 2.76점)로 브로커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8] 브로커를 만난 지역

|           | 빈도  | 퍼센트     |
|-----------|-----|---------|
| 북한        | 51  | (26.6)  |
| 중국        | 97  | (50.5)  |
| 북한과 중국 모두 | 20  | (10.4)  |
| 무응답       | 24  | (12.5)  |
| 총계        | 192 | (100.0) |

다음으로 “브로커를 어디에서 만났거나 소개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지역(시기)은 북한에 있을 때가 26.6%, 탈북 후 중국에서가 50.5%로 중국에서 만나는 경우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브로커 인지 경로

|                          | 빈도  | 퍼센트     |
|--------------------------|-----|---------|
| 친구나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다         | 73  | (38.0)  |
|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해줬다           | 43  | (22.4)  |
| 브로커와 연결되어있는 제3의 사람이 알려줬다 | 31  | (16.1)  |
| 중국인이 돈을 받고 브로커에게 넘겨주었다   | 18  | (9.4)   |
| 브로커가 직접 먼저 접근해왔다         | 14  | (7.3)   |
| 선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소개해줬다      | 3   | (1.6)   |
| 사돈                       | 1   | (0.5)   |
| 인터넷 검색으로                 | 1   | (0.5)   |
| 북한 사람이 돈을 받고 브로커에게 넘겨줌   | 1   | (0.5)   |
| 무응답                      | 7   | (3.6)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는 맨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의 브로커 인지 경로는 친구나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경우가 38.0%, 가족/친척이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22.4%로, 조사 대상자의 과반이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브로커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브로커 접근 방법

|                                       | 빈도 | 퍼센트     |
|---------------------------------------|----|---------|
| 중국에 가면 부유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함 | 10 | (22.2)  |
|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함                | 28 | (62.2)  |
|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함                        | 5  | (11.1)  |
| 무응답                                   | 2  | (4.4)   |
| 총계                                    | 45 | (100.0) |

“브로커가 접근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62.2%, “부유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 22.2%로, 경제적인 측면을 빌미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브로커 연령

|       | 빈도    | 퍼센트     |
|-------|-------|---------|
| 20대   | 8     | (4.2)   |
| 30대   | 34    | (17.7)  |
| 40대   | 81    | (42.2)  |
| 50대   | 33    | (17.2)  |
| 60대이상 | 8     | (4.2)   |
| 무응답   | 28    | (14.6)  |
| 총계    | 192   | (100.0) |
| 평균    | 42.6세 |         |

[표 4-32] 브로커 성별

|          | 빈도  | 퍼센트     |
|----------|-----|---------|
| 남자       | 120 | (62.5)  |
| 여자       | 57  | (29.7)  |
| 남자 여자 모두 | 2   | (1.0)   |
| 무응답      | 13  | (6.8)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 연령은 40대(42.2%), 30대(17.7%), 50대(17.2%) 순으로 평균 42.6세로 조사되었으며, 브로커 성별은 남자가 62.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3] 브로커 출신

|            | 빈도  | 퍼센트     |
|------------|-----|---------|
| 북한인        | 92  | (47.9)  |
| 한족         | 22  | (11.5)  |
| 조선족        | 53  | (27.6)  |
| 한국인        | 2   | (1.0)   |
| 북한인/한족/조선족 | 2   | (1.0)   |
| 한족/조선족     | 2   | (1.0)   |
| 사돈         | 1   | (0.5)   |
| 모름/무응답     | 18  | (9.4)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 출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북한인”이 47.9%, 조선족 27.6%, 한족 11.5% 순으로 나타나 북한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4] 브로커 인원

|      | 빈도   | 퍼센트     |
|------|------|---------|
| 1명   | 107  | (55.7)  |
| 2명   | 43   | (22.4)  |
| 3명이상 | 42   | (21.9)  |
| 총계   | 192  | (100.0) |
| 평균   | 2.4명 |         |

“브로커는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들이 언급한 접촉 브로커 인원은 평균 2.4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35] 브로커 범죄 조직 연관성

|           | 빈도  | 퍼센트     | 비고     |
|-----------|-----|---------|--------|
| 매우 그렇다    | 8   | (4.2)   | (21.4) |
| 대체로 그렇다   | 33  | (17.2)  |        |
| 대체로 그렇지않다 | 55  | (28.6)  | (72.9) |
| 전혀 그렇지않다  | 85  | (44.3)  |        |
| 무응답       | 11  | (5.7)   | (5.7)  |
| 총계        | 192 | (100.0) |        |

“브로커를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의 범죄 조직 연관성 측면은 브로커 접촉 경험자의 21.4%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브로커가 타인과 연락하며 업무 처리

|           | 빈도 | 퍼센트    | 비고     |
|-----------|----|--------|--------|
| 항상 그렇다    | 29 | (15.1) | (42.2) |
| 대체로 그렇다   | 52 | (27.1) |        |
| 대체로 그렇지않다 | 20 | (10.4) | (19.3) |

|           | 빈도  | 퍼센트     | 비고     |
|-----------|-----|---------|--------|
| 전혀 그렇지 않다 | 17  | (8.9)   |        |
| 잘 모르겠다    | 62  | (32.3)  | (32.3) |
| 무응답       | 12  | (6.3)   | (6.3)  |
| 총계        | 192 | (100.0) |        |

“귀하가 접촉한 브로커는 항상 누군가에게 연락하며 일을 진행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접촉 브로커의 42.2%는 항상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7] 브로커 주 활동 지역

|               | 빈도  | 퍼센트     |
|---------------|-----|---------|
| 개인 집이나 아파트    | 95  | (49.5)  |
| 브로커들 사무실      | 4   | (2.1)   |
| 여관/호텔, 산속, 교회 | 4   | (2.0)   |
| 식당이나 술집       | 2   | (1.0)   |
| 잘 모르겠다        | 75  | (39.1)  |
| 무응답           | 12  | (6.3)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들이 언급한 브로커 활동 지역은 “개인 집이나 아파트”가 4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8] 브로커 동행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항상 그렇다     | 29  | (15.1)  |
| 대체로 그렇다    | 65  | (33.9)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35  | (18.2)  |
| 전혀 그렇지 않다  | 55  | (28.6)  |
| 무응답        | 8   | (4.2)   |
| 총계         | 192 | (100.0) |

“귀하는 브로커나 다른 한 사람이 항상 동행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49%는 이동시 브로커 또는 다른 사람이 항상 함께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이동 전 브로커와 함께 머무

|           | 빈도  | 퍼센트     |
|-----------|-----|---------|
| 항상 그렇다    | 30  | (15.6)  |
| 대체로 그렇다   | 75  | (39.1)  |
| 대체로 그렇지않다 | 33  | (17.2)  |
| 전혀 그렇지않다  | 41  | (21.4)  |
| 무응답       | 13  | (6.8)   |
| 총계        | 192 | (100.0) |

“귀하는 다른 곳으로 가기 전, 브로커와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54.7%는 다른 곳으로 이동 전 브로커와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탈북 여성의 동행

|           | 빈도  | 퍼센트     |
|-----------|-----|---------|
| 항상 그렇다    | 47  | (24.5)  |
| 대체로 그렇다   | 65  | (33.9)  |
| 대체로 그렇지않다 | 19  | (9.9)   |
| 전혀 그렇지않다  | 52  | (27.1)  |
| 무응답       | 9   | (4.7)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와 접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다른 탈북여성들과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58.4%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길 때 다른 탈북 여성과 함께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1] 탈북 여성 동행 인원

|        | 빈도  | 퍼센트     |
|--------|-----|---------|
| 없었음    | 45  | (23.4)  |
| 1~2명   | 48  | (25.0)  |
| 3~5명   | 49  | (25.5)  |
| 6~9명   | 24  | (12.5)  |
| 10명 이상 | 11  | (5.7)   |
| 무응답    | 15  | (7.8)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다른 장소로 옮길 때 함께 이동한 탈북여성이 1~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 3~5명은 25.5%로 과반이 5명 이하로 조사되었다.

[표 4-42] 브로커 이동 빈도

|           | 빈도  | 퍼센트     |
|-----------|-----|---------|
| 항상        | 34  | (17.7)  |
| 종종        | 31  | (16.1)  |
| 가끔        | 73  | (38.0)  |
| 전혀 그렇지 않다 | 46  | (24.0)  |
| 무응답       | 8   | (4.2)   |
| 총계        | 192 | (100.0) |

“귀하는 브로커 혹은 관련자와 얼마나 자주 이동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브로커 혹은 관련자와 전혀 이동하지 않은 경우는 2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브로커와 같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브로커 및 관련자의 신체·성적 공격

|           | 빈도  | 퍼센트     |
|-----------|-----|---------|
| 항상        | 2   | (1.0)   |
| 종종        | 5   | (2.6)   |
| 가끔        | 23  | (12.0)  |
| 전혀 그렇지 않다 | 153 | (79.7)  |
| 무응답       | 9   | (4.7)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얼마나 자주 귀하를 공격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15.6%는 가끔/종종/항상 브로커 또는 관련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을 조사되었다.

[표 4-44] 브로커 및 관련자의 흥기 소지

|            | 빈도  | 퍼센트     |
|------------|-----|---------|
| 항상 그렇다     | 1   | (0.5)   |
| 대체로 그렇다    | 3   | (1.6)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5  | (7.8)   |
| 전혀 그렇지 않다  | 103 | (53.6)  |
| 잘모르겠다      | 61  | (31.8)  |
| 무응답        | 9   | (4.7)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총, 칼 등 흉기를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9.9%가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총, 칼 등과 같은 흉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표 4-45] 브로커 및 관련자의 두려워함

|            | 빈도  | 퍼센트     |
|------------|-----|---------|
| 매우 그렇다     | 14  | (7.3)   |
| 대체로 그렇다    | 14  | (7.3)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9  | (9.9)   |
| 전혀 그렇지 않다  | 81  | (42.2)  |
| 잘모르겠다      | 57  | (29.7)  |
| 무응답        | 7   | (3.6)   |
| 총계         | 192 | (100.0) |

“머물러있던 곳의 이웃사람들이 브로커 혹은 관련자를 두려워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24.5%는 함께 머물러있던 곳의 이웃사람들이 브로커 혹은 관련자를 두려워했다고 언급하였다.

[표 4-46] 브로커 및 관련자, 군·경찰·정부 소속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매우 그렇다     | 4   | (2.1)   |
| 대체로 그렇다    | 11  | (5.7)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5  | (7.8)   |
| 전혀 그렇지 않다  | 68  | (35.4)  |
| 잘모르겠다      | 85  | (44.3)  |
| 무응답        | 9   | (4.7)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 혹은 관련자들이 북한 혹은 중국의 군대, 경찰, 정부 관리에 속해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15.6%는 함께 한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북한 혹은 중국의 군대, 경찰, 정부 관리라고 응답하였다.

[표 4-47] 브로커 및 관련자, 군·경찰·정부와의 연결성

|            | 빈도  | 퍼센트     |
|------------|-----|---------|
| 매우 그렇다     | 10  | (5.2)   |
| 대체로 그렇다    | 9   | (4.7)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8  | (9.4)   |
| 전혀 그렇지 않다  | 59  | (30.7)  |
| 잘모르겠다      | 83  | (43.2)  |
| 무응답        | 13  | (6.8)   |
| 총계         | 192 | (100.0) |

“브로커 혹은 관련자들이 북한 혹은 중국의 군대, 경찰, 정부 관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19.3%는 함께 한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북한 혹은 중국의 군대, 경찰, 정부 관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 4-48] 브로커에 의한 피해

|                     | 퍼센트    |
|---------------------|--------|
| 강제결혼                | (49.0) |
| 강제노동 (농장일, 가사도우미 등) | (5.7)  |
| 성매매 (안마시술소, 음란채팅 등) | (2.1)  |

|     | 퍼센트    |
|-----|--------|
| 없음  | (3.1)  |
| 무응답 | (42.2) |

브로커 접촉 경험자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복수응답)라고 질문하였더니,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49%는 강제결혼, 강제결혼(5.7%), 성매매(2.1%)와 같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로커 관련 응답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5.5%였으며 브로커에 대한 이미지는 응답자의 68.2%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브로커는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들이 탈북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브로커 접촉지역은 약 1/4은 북한에 있을 때 이들과 접촉했으며 약 절반이 중국에서 접촉했고 약 10%는 중국과 북한 양쪽에서 브로커를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는 대개 아는 사람이나 가족 등을 통해 소개받은 경우가 약 6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로커와 연결된 제3자가 접근하거나 브로커가 접근해 온 경우도 약 1/4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는 중국에 가면 돈을 잘 벌수 있다고 유혹한 경우가 62.2%로 가장 많았고 부유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한 경우도 22.25%나 되었다. 또 브로커가 북한이나 중국의 군대, 정부 관리 등인 경우도 15.5%로 나타났으며 브로커가 이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약 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4절 탈북 후 중국에서의 생활

국경을 넘은 후 이들은 신분상의 제약과 언어소통의 문제, 생소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험들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 특히 이들이 경험한 인신매매범죄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참고로 여기에 제시된 피해자들은 브로커 접촉 경험자들 중에서 응답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범죄피해자의 숫자 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먼저“귀하가 중국에서 살았던 지역에 강제결혼이나 성매매에 노출된 탈북 여성들이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이어서 그들이 몇 명 정도였는지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는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표 4-49] 강제결혼 및 성매매 노출

|     | 빈도  | 퍼센트     |
|-----|-----|---------|
| 예   | 88  | (43.8)  |
| 아니오 | 94  | (46.8)  |
| 무응답 | 19  | (9.5)   |
| 총계  | 201 | (100.0) |

[표 4-50] 강제결혼 및 성매매 노출 탈북 연성의 인원 수

|      | 빈도   | 퍼센트     |
|------|------|---------|
| 1~2명 | 29   | (33.0)  |
| 3~4명 | 19   | (21.6)  |
| 5~6명 | 16   | (18.2)  |
| 7명이상 | 14   | (15.9)  |
| 무응답  | 10   | (11.4)  |
| 총계   | 88   | (100.0) |
| 평균   | 4.4명 |         |

전체 조사 대상자의 43.8%는 탈북 후 중국에 거주하면서 주변에“강제결혼/성매매”에 노출된 탈북여성이 있었다고 언급하였고, 인원은 평균 4.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1] 중국 내 체류 기간

|          | 빈도 | 퍼센트    | 비고     |
|----------|----|--------|--------|
| 1년 이하    | 24 | (11.9) | (20.4) |
| 1년~2년 이하 | 17 | (8.5)  |        |
| 2년~3년 이하 | 20 | (10.0) | (22.9) |
| 3년~4년 이하 | 11 | (5.5)  |        |
| 4년~5년 이하 | 15 | (7.50) |        |
| 5년~6년 이하 | 12 | (6.0)  | (29.4) |
| 6년~7년 이하 | 7  | (3.5)  |        |

|           | 빈도  | 퍼센트     | 비고      |
|-----------|-----|---------|---------|
| 7년~8년 이하  | 12  | (6.0)   |         |
| 8년~9년 이하  | 16  | (8.0)   |         |
| 9년~10년 이하 | 12  | (6.0)   |         |
| 10년 초과    | 26  | (12.9)  | (12.9)  |
| 무응답       | 29  | (14.4)  | (14.4)  |
| 총계        | 201 | (100.0) | (100.0) |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무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에 오기 전 중국 체류기간은 1년 이하 11.9%, 2년 이하 8.5%, 2년 초과 ~ 5년 이하가 22.9%, 5년 초과 10년 이하가 29.4%, 10년 초과 12.9%로 조사되었다.

[표 4-52] 중국 내 거주 지역

|      | 전체     |
|------|--------|
| 길림성  | (41.8) |
| 요녕성  | (17.9) |
| 산둥성  | (15.9) |
| 흑룡강성 | (13.9) |
| 하북성  | (10.9) |
| 상해   | (1.5)  |
| 절강성  | (1.0)  |
| 저장성  | (0.5)  |
| 허난성  | (0.5)  |
| 위난성  | (0.5)  |
| 산시성  | (0.5)  |
| 무응답  | (24.4) |

다음은 “시간순서대로 귀하께서 살았던 중국 내 도시와 각 도시에서 보낸 시간을 작성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중국 내 거주 지역은 길림성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요녕성 17.9%, 산둥성 15.9%, 흑룡강성 13.9%, 하북성(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3] 중국 공안예의 체포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있다 | 59  | (29.4)  |
| 없다 | 142 | (70.6)  |
| 총계 | 201 | (100.0) |

[표 4-54] 중국 공안예의 체포 횟수

|     | 빈도   | 퍼센트     |
|-----|------|---------|
| 1번  | 19   | (32.2)  |
| 2번  | 9    | (15.3)  |
| 3번  | 3    | (5.1)   |
| 무응답 | 28   | (47.5)  |
| 총계  | 59   | (100.0) |
| 평균  | 1.5회 |         |

“중국에서 발각되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잡혀간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중국 거주 기간 동안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경험은 전체 조사 대상 중 29.4%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들의 체포 횟수는 평균 1.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중국 공안 체포 시 대처 방법

|                          | 전체     |
|--------------------------|--------|
| 북한으로 복송되었다               | (67.8) |
| 돈을 주고 풀려났다               | (18.6) |
| 도망 나왔다                   | (10.2) |
| 결혼을 할 것인가 북한으로 갈 것인가 물어봄 | (1.7)  |
| 무응답                      | (3.4)  |

“중국 공안에게 잡혀간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국 공안 체포 경험자 중 67.8%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후 북한으로 복송되었으며, 18.6%는 돈을 주고 풀려났고, 10.2%는 도망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포된 후 북한으로 강제 복송된 사람들 중 많은 비율은 다시 중국으로 국경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서 응답한 67.8%는 강제복송 후 다시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4-56] 중국 거주 시 직업

|                                            | 전체     |
|--------------------------------------------|--------|
| 농장일                                        | (22.9) |
| 식당일                                        | (15.9) |
| 남의 집 가사도우미                                 | (10.9) |
| 축산일                                        | (1.5)  |
| 노동자                                        | (1.5)  |
| 재봉사                                        | (1.0)  |
| 패션 코디네이터, 회사에 다님, 농사,<br>복무원, 통역, 채팅, 병원청소 | (3.5)  |
| 전혀 일한 적 없다(가정주부 포함)                        | (34.3) |
| 무응답                                        | (18.4) |

“귀하는 중국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농장일”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식당일”15.9%, “가사도우미”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한 적 없다”라는 응답 또한 34.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7] 임금 정상 수령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 42  | (20.9)  |
| 받았으나 적게 받았다 | 43  | (21.4)  |
| 전혀 받지 못했다   | 34  | (16.9)  |
| 무응답         | 82  | (40.8)  |
| 총계          | 201 | (100.0) |

“중국에서 일을 했다면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20.9%만이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받았으나 적게 받았다”는 21.4%, “전혀 받지 못했다”는 16.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58] 성 상납 요구 받은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24  | (11.9)  |
| 아니오 | 149 | (74.1)  |
| 무응답 | 28  | (13.9)  |
| 총계  | 201 | (100.0) |

“중국 내 불법 체류 신분을 발미로 돈이나 성적인 요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돈이나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의 11.9%로 나타났다.

[표 4-59] 한국행 결심 동기

|               | 전체     |
|---------------|--------|
| 중국에서의 신분 불안정함 | (54.2) |
| 복송 위협         | (26.9) |
| 더 나은 경제적 삶    | (14.9) |
| 가족 상봉         | (9.5)  |
| 가족의 확대        | (1.0)  |
| 아이 신분등록을 위하여  | (0.5)  |
| 무응답           | (10.4) |

“귀하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중국에서의 신분이 불안정해서가 54.2%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복송 위협(26.9%), 더 나은 경제적 삶(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0] 한국행에 도움을 준 사람 혹은 단체

|                   | 전체     |
|-------------------|--------|
| 브로커               | (57.2) |
| 남한의 가족            | (11.9) |
| 선교단체, 시민단체 등 구조단체 | (8.5)  |
| 아는 사람의 소개로        | (3.5)  |

|          | 전체     |
|----------|--------|
| 친구       | (2.5)  |
| 혼자       | (1.5)  |
| 한국사람     | (0.5)  |
| 형제들 도움으로 | (0.5)  |
| 무응답      | (15.9) |

“한국에 올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에 올 때 도움을 준 이는 “브로커”가 5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한의 가족”(11.9%), “선교/시민단체 등 구조단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1] 신분 안정 시 중국 체류 의향

|           | 빈도  | 퍼센트     |
|-----------|-----|---------|
| 매우그렇다     | 14  | (7.0)   |
| 그런편이다     | 52  | (25.9)  |
| 그렇지 않은편이다 | 44  | (21.9)  |
| 전혀 그렇지 않다 | 65  | (32.3)  |
| 무응답       | 26  | (12.9)  |
| 총계        | 201 | (100.0) |

“중국에서 신분이 안정되었다면(외국인 체류허가 등) 중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2.9%(매우 그렇다 7%, 그런 편이다 25.9%)가 중국에서의 신분이 안정되었다면 계속 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약해 보면, 먼저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5~10년이 전체 응답자의 2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5년 22.9%, 10년 초과 1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길림성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요녕성, 산둥성, 흑룡강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30%가 공안에 체포된 적이 있으며 체포경험자들 중에 약 2/3는 강제복송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돈을 주고 풀려났거나 도망쳐 나왔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과 복송 위험 때문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1/4은 중국에서 신분상의 안정만 확보되었다면 계속 중국에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5절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

이제 중국에서의 강제결혼, 강제성매매,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인신매매범죄 피해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표 4-62] 탈북 후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150 | (74.6)  |
| 아니오      | 49  | (24.4)  |
| 경험할 뻔 했다 | 2   | (1.0)   |
| 총계       | 201 | (100.0) |

“귀하는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4.6%가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인신매매 피해 내용

|            | 퍼센트    | 빈도  |
|------------|--------|-----|
| 강제 결혼      | (90.7) | 136 |
| 강제노동 및 서비스 | (21.3) | 32  |
| 강제 성매매     | (4.7)  | 7   |

“귀하는 중국에서 어떤 종류의 인신매매를 경험하셨습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신매매 피해 경험자의 90.7%가 “강제결혼”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4] 인신매매 피해 기간(강제결혼)

|       | 빈도 | 퍼센트   |
|-------|----|-------|
| 1년 이하 | 5  | (3.7) |
| 2년 이하 | 8  | (5.9) |
| 3년 이하 | 7  | (5.1) |
| 4년 이하 | 12 | (8.8) |

|        | 빈도     | 퍼센트     |
|--------|--------|---------|
| 5년 이하  | 5      | (3.7)   |
| 10년 이하 | 20     | (14.7)  |
| 10년 초과 | 9      | (6.6)   |
| 무응답    | 70     | (51.5)  |
| 총계     | 136    | (100.0) |
| 평균     | 68.4개월 |         |

다음으로 인신매매 유형별 피해 기간을 물어보았다. 먼저 강제 결혼 피해자의 결혼 생활 유지기간은 평균 68.4개월(약 5년 8개월)로 나타났다.

[표 4-65] 인신매매 피해 기간(강제노동)

|        | 빈도     | 퍼센트     |
|--------|--------|---------|
| 1년 이하  | 1      | (3.1)   |
| 2년 이하  | 2      | (6.3)   |
| 3년 이하  | 7      | (21.9)  |
| 10년 이하 | 5      | (15.6)  |
| 무응답    | 17     | (53.1)  |
| 총계     | 32     | (100.0) |
| 평균     | 47.5개월 |         |

다음으로 강제노동 피해자의 강제노동 기간은 평균 47.5개월(약 4년)로 나타났다.

[표 4-66] 인신매매 피해 기간(강제성매매)

|      | 빈도   | 퍼센트   |
|------|------|-------|
| 29개월 | 1    | 14.3  |
| 무응답  | 6    | 85.7  |
| 총계   | 7    | 100.0 |
| 평균   | 29개월 |       |

강제성매매 피해자는 1명이 있었으며 성매매 강요 기간은 29개월(2년 5개월)로 나타났다.

[표 4-67] 인신매매 피해 시 연령

|        | 빈도    | 퍼센트     |
|--------|-------|---------|
| 17~19세 | 6     | (4.0)   |
| 20대    | 48    | (32.0)  |
| 30대    | 30    | (20.0)  |
| 40대    | 16    | (10.7)  |
| 50대    | 2     | (1.3)   |
| 무응답    | 48    | (32.0)  |
| 총계     | 150   | (100.0) |
| 평균     | 29.6세 |         |

“탈북 후 중국에서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귀하는 몇 살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29.6세로 나타났다.

[표 4-68] 탈북 전 인신매매 인지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 29  | (19.3)  |
| 아니오 | 99  | (66.0)  |
| 무응답 | 22  | (14.7)  |
| 총계  | 150 | (100.0) |

“귀하는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북한에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 중 19.3%는 국경을 넘기 전에 이미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을 넘은 후 바로 인신매매를 당했는지, 아니면 얼마 지나서 당했는지 알아보았더니, 인신매매 피해자의 50.7%는 북한 국경을 넘은 직후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탈북 후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는 평균 7.5개월 이내에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9] 인신매매 피해 시점

|              | 빈도  | 퍼센트     |
|--------------|-----|---------|
| 북한 국경을 넘은 직후 | 76  | (50.7)  |
| 탈북 후         | 34  | (22.7)  |
| 무응답          | 40  | (26.7)  |
| 총계           | 150 | (100.0) |

[표 4-70] 인신매매 피해 시점\_ 탈북 후 얼마 후인지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1개월    | 8     | (23.5)  |
| 2개월    | 7     | (20.6)  |
| 3개월    | 7     | (20.6)  |
| 6개월 이후 | 6     | (17.6)  |
| 무응답    | 6     | (17.6)  |
| 총계     | 34    | (100.0) |
| 평균     | 7.5개월 |         |

[표 4-71] 인신매매 연루 계기

|                    | 빈도  | 퍼센트     |
|--------------------|-----|---------|
| 북한에서부터 도와준 브로커의 속임 | 47  | (31.3)  |
| 중국 내에서 브로커의 속임     | 44  | (29.3)  |
| 자발적으로 찾음           | 8   | (5.3)   |
| 혼자 돌아다닐 때          | 1   | (0.7)   |
| 학부형 통해서            | 1   | (0.7)   |
| 무응답                | 49  | (32.7)  |
| 총계                 | 150 | (100.0) |

“귀하는 탈북 후 중국에서 어떻게 인신매매에 연루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탈북 후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계기는 “북한에서부터 도와준 브로커의 속임”(31.3%) 또는 “중국 내에서 브로커의 속임”(29.3%)과 같이 브로커를 통해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것이 60.6%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경우도 5.3%로 나타났다.

[표 4-72] 자발적 인신매매 참여 이유

|                         | 빈도 | 퍼센트     |
|-------------------------|----|---------|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가 | 3  | (37.5)  |
| 북송의 두려움으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    | 4  | (50.0)  |
| 무응답                     | 1  | (12.5)  |
| 총계                      | 8  | (100.0) |

자발적으로 찾은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이유는 중국에서의 “북송 두려움으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50%, 4명)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가”(37.5%, 3명)와 같이 신분에 대한 불안과 북송위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3] 인신매매 관련 경험

|        | 퍼센트    | 빈도 |
|--------|--------|----|
| 정신적 학대 | (26.7) | 40 |
| 언어적 학대 | (20.7) | 31 |
| 신체적 학대 | (12.7) | 19 |

\* 인신매매 관련 경험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에서 각각의 경험율이다.

“귀하는 중국 내 인신매매에 연루된 후(강제결혼, 강제성매매 등)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정신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의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후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경험하거나 느낀 내용 중 정신적 학대 경험은 26.7%, 언어적 학대 경험은 20.7%, 신체적 학대 경험은 12.7%로 나타났다.

[표 4-74] 인신매매에서 벗어난 연령

|     | 빈도 | 퍼센트    |
|-----|----|--------|
| 20대 | 31 | (20.7) |
| 30대 | 28 | (18.7) |
| 40대 | 9  | (6.0)  |

|     | 빈도    | 퍼센트     |
|-----|-------|---------|
| 50대 | 6     | (4.0)   |
| 무응답 | 76    | (50.7)  |
| 총계  | 150   | (100.0) |
| 평균  | 33.3세 |         |

“귀하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서 벗어났을 당시 귀하는 몇 살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상태에서 벗어난 연령은 평균 33.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전체 201명 응답자 중에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약 3/4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의 약 90%가 강제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제노동은 32명, 강제성매매는 7명으로 조사되었다.

## 제6절 중국에서의 강제결혼 경험

이제 각 강제결혼, 강제성매매, 강제노동, 장기밀매 등 각 유형별로 인신매매 피해 경험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강제결혼 경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에서 강요에 의해서나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7%인 136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9.9%(60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75] 강제결혼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136 | (67.7)  |
| 아니오 | 60  | (29.9)  |
| 무응답 | 5   | (2.5)   |
| 총계  | 201 | (100.0) |

\* 응답범주별 응답 비율의 계산에는 무응답도 하나의 응답범주로 계산되도록 하여 퍼센트를 구했다. 왜냐하면 전체 201명 대비 각 응답범주별 인원수와 비율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강제 결혼했던 당시의 연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표 4-76] 강제결혼 연령

|        | 빈도    | 퍼센트     |
|--------|-------|---------|
| 17~19세 | 4     | (2.9)   |
| 20대    | 50    | (36.8)  |
| 30대    | 32    | (23.5)  |
| 40대    | 15    | (11.0)  |
| 50대    | 6     | (4.4)   |
| 무응답    | 29    | (21.3)  |
| 총계     | 136   | (100.0) |
| 평균     | 30.7세 |         |

“귀하는 중국에서 몇 번 결혼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표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 대상 중 중국에서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7.7%로 나타났고, 그들의 평균 연령은 30.7세로 조사되었으며, 강제결혼 피해 횟수는 평균 1.2회로 나타났다.

[표 4-77] 강제결혼 횟수

|      | 빈도   | 퍼센트     |
|------|------|---------|
| 1번   | 101  | (74.3)  |
| 2번   | 18   | (13.2)  |
| 3~4번 | 2    | (1.5)   |
| 무응답  | 15   | (11.0)  |
| 총계   | 136  | (100.0) |
| 평균   | 1.2회 |         |

[표 4-78] 탈북 전 강제결혼 인지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알고 있었다) | 20  | (14.7)  |
| 아니오(몰랐다)   | 101 | (74.3)  |
| 무응답        | 15  | (11.0)  |
| 총계         | 136 | (100.0) |

탈북 전 원치 않는 결혼을 할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을 탈북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더니, 강제결혼 피해자들 중 14.7%는 탈북 전부터 본인이 “강제결혼”에 연루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9] 강제 결혼의 이유

|                | 퍼센트    |
|----------------|--------|
|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서 | (41.9) |
| 강요에 의해서        | (26.5) |
|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 (6.6)  |
| 아는 사람의 권유      | (6.6)  |
|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 (2.9)  |
| 빛이 있어서         | (0.7)  |
| 친구의 권유로        | (0.7)  |
| 엄마한테 전화해주고 싶어서 | (0.7)  |
| 국적을 해준다고 해서    | (0.7)  |
| 공안에 신고한다고 해서   | (0.7)  |
| 무응답            | (21.3) |

“귀하가 처음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탈북 후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요(26.5%) 또는 유혹(6.6%) 등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결혼했던 상대방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결혼의 경우 여러 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귀하의 마지막 결혼 상대에 관한 질문입니다.”라고 묻고 남편의 출신, 장애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표 4-80]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민족

|        | 빈도 | 퍼센트    |
|--------|----|--------|
| 조선족    | 49 | (36.0) |
| 한족     | 65 | (47.8) |
| 중국기타민족 | 3  | (2.2)  |

|      | 빈도  | 퍼센트     |
|------|-----|---------|
| 북한남성 | 3   | (2.2)   |
| 무응답  | 16  | (11.8)  |
| 총계   | 136 | (100.0) |

[표 4-81]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장애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장애없음 | 67  | (49.3)  |
| 정신지체 | 6   | (4.4)   |
| 신체지체 | 9   | (6.6)   |
| 장애인  | 1   | (0.7)   |
| 무응답  | 53  | (39.0)  |
| 총계   | 136 | (100.0) |

강제결혼 피해자들의 결혼 상대는 한족 47.8%, 조선족 36.0%로 한족과 조선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경우는 11.7%로 나타났다.

[표 4-82]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직업

|                    | 빈도  | 퍼센트     |
|--------------------|-----|---------|
| 농사/농업/농민           | 42  | (30.9)  |
| 노가다/노동자/일용직        | 12  | (8.8)   |
| 농장                 | 11  | (8.1)   |
| 직장인/회사원            | 8   | (5.9)   |
| 기술자(전기기술/전기설비/수리공) | 6   | (4.4)   |
| 건설업 노동자            | 4   | (2.9)   |
| 운전수/택시기사           | 2   | (1.5)   |
| 자영업                | 1   | (0.7)   |
| 공무원                | 1   | (0.7)   |
| 공장                 | 1   | (0.7)   |
| 무직                 | 6   | (4.4)   |
| 무응답                | 42  | (30.9)  |
| 총계                 | 136 | (100.0) |

[표 4-83]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월 평균 소득

|            | 빈도        | 퍼센트     |
|------------|-----------|---------|
| 350위안 이하   | 12        | (8.8)   |
| 700위안 이하   | 14        | (10.3)  |
| 1,900위안 이하 | 14        | (10.3)  |
| 2,000위안 이상 | 17        | (12.5)  |
| 무응답        | 79        | (58.1)  |
| 총계         | 136       | (100.0) |
| 평균         | 1,465.8위안 |         |

강제결혼 피해자들의 결혼 상대 직업은 “농사/농업/농민”(30.9%), “농장”(8.1%)과 같이 농업(39.0%)과 관련된 직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그들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1,465.8위안(한화 238,925원, 1위안=163원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4-84] 강제결혼 상대방: 가족 구성원의 수

|       | 빈도   | 퍼센트     |
|-------|------|---------|
| 1~2명  | 30   | (22.1)  |
| 3~4명  | 49   | (36.0)  |
| 5~11명 | 14   | (10.3)  |
| 무응답   | 43   | (31.6)  |
| 총계    | 136  | (100.0) |
| 평균    | 3.3명 |         |

[표 4-85]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재혼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1번째 | 57   | (41.9)  |
| 2번째 | 28   | (20.6)  |
| 3번째 | 4    | (2.9)   |
| 무응답 | 47   | (34.6)  |
| 총계  | 136  | (100.0) |
| 평균  | 1.4회 |         |

[표 4-86] 강제결혼 상대방: 남편의 연령

|     | 빈도    | 퍼센트     |
|-----|-------|---------|
| 20대 | 20    | (14.7)  |
| 30대 | 59    | (43.4)  |
| 40대 | 23    | (16.9)  |
| 50대 | 13    | (9.6)   |
| 60대 | 4     | (2.9)   |
| 무응답 | 17    | (12.5)  |
| 총계  | 136   | (100.0) |
| 평균  | 37.3세 |         |

강제결혼 피해자들의 결혼 상대 가족 구성원 수는 평균 3.3명이고, 그들의 41.9%는 초혼, 20.6%는 두 번째 결혼으로, 강제결혼 피해자들의 결혼 상대는 평균 1.4번째 결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평균 37.3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과 관련한 금전적이 질문들을 물어보았다. 먼저 결혼으로 팔아 넘겨지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인지했었는지, 했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 댓가는 직접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표 4-87] 신부 거래 금액에 대한 인지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금액 인지  | 58  | (42.6)  |
| 모름/무응답 | 78  | (57.4)  |
| 총계     | 136 | (100.0) |

[표 4-88] 신부 거래 금액

|                  | 빈도       | 퍼센트     |
|------------------|----------|---------|
| 2,000위안 이하       | 6        | (10.3)  |
| 3,000~5,000위안    | 7        | (12.1)  |
| 7,000~10,000위안   | 12       | (20.7)  |
| 11,000~15,000위안  | 5        | (8.6)   |
| 16,000~20,000위안  | 10       | (17.2)  |
| 30,000~50,000위안  | 8        | (13.8)  |
| 55,000~100,000위안 | 10       | (17.2)  |
| 총계               | 58       | (100.0) |
| 평균               | 23,587위안 |         |

강제결혼 피해자들 중 42.6%는 자신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의 거래금액 평균은 23,587위안(한화 3,844,681원, 1위안=163원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강제결혼 피해자들 중 결혼 대가를 직접 수령한 사람은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9] 결혼 대가 직접 수령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 7   | (5.1)   |
| 아니오 | 107 | (78.7)  |
| 무응답 | 22  | (16.2)  |
| 총계  | 136 | (100.0) |

다음은 강제결혼과 관련해서 가사분담, 자녀양육, 사회적 활동, 대화방식, 부부성관계, 개인생활, 처가식구 배려,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응답결과이다.8)

[표 4-90]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 (n=136, %) | 긍정   | 부정   | 무응답  | 계     | 평균  |
|------------|------|------|------|-------|-----|
| 가사분담       | 33.8 | 55.1 | 11.0 | 100.0 | 2.1 |
| 양육방식       | 22.1 | 58.8 | 19.1 | 100.0 | 2.0 |
| 사회활동       | 21.3 | 64.7 | 14.0 | 100.0 | 1.9 |
| 대화방식       | 23.5 | 62.5 | 14.0 | 100.0 | 2.0 |
| 부부성관계      | 20.6 | 65.4 | 14.0 | 100.0 | 1.9 |
| 사생활인정      | 36.0 | 50.7 | 13.2 | 100.0 | 2.3 |
| 처가배려       | 34.6 | 52.2 | 13.2 | 100.0 | 2.2 |
| 전반적 만족도    | 25.0 | 62.5 | 12.5 | 100.0 | 2.0 |

\*4점 척도의 평균: 1=전 혀아니다, 2=아니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이 결과를 보면, 강제결혼 피해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점척도 평균 2점(긍정:부정=25%:62.5%)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사회활동/부부성관계”(각각 평균 1.9점)가 가장 부정적이고, “사생활 인정”(평균 2.3점) 측면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91] 결혼 생활 상대방에 대한 평가

| (n=136, %) | 비동의  | 동의   | 무응답  | 계     | 평균  |
|------------|------|------|------|-------|-----|
| 모욕         | 41.9 | 48.5 | 9.6  | 100.0 | 1.9 |
| 폭행위협       | 58.8 | 30.1 | 11.0 | 100.0 | 1.6 |
| 물건파손       | 64.7 | 25.0 | 10.3 | 100.0 | 1.5 |
| 생활비안중      | 52.2 | 37.5 | 10.3 | 100.0 | 1.9 |
| 재산임의처분     | 61.0 | 27.9 | 11.0 | 100.0 | 1.6 |
| 수입지출독점     | 55.1 | 33.8 | 11.0 | 100.0 | 1.8 |
| 물건던짐       | 62.5 | 27.2 | 10.3 | 100.0 | 1.5 |
| 움켜잡        | 69.1 | 19.9 | 11.0 | 100.0 | 1.4 |
| 신체때림       | 67.6 | 22.1 | 10.3 | 100.0 | 1.4 |
| 목 조름       | 74.3 | 13.2 | 12.5 | 100.0 | 1.3 |
| 흉기위협       | 78.7 | 11.0 | 10.3 | 100.0 | 1.2 |
| 혁명때림       | 76.5 | 13.2 | 10.3 | 100.0 | 1.3 |
| 마구때림       | 73.5 | 15.4 | 11.0 | 100.0 | 1.3 |
| 성관계강요      | 61.8 | 27.9 | 10.3 | 100.0 | 1.6 |
| 변태성관계강요    | 66.9 | 22.1 | 11.0 | 100.0 | 1.5 |
| 노동강요       | 71.3 | 16.9 | 11.8 | 100.0 | 1.4 |
| 신분협박       | 66.9 | 22.1 | 11.0 | 100.0 | 1.5 |

\* 비동의 = 전혀 없었다, 동의 = 가끔 + 자주 + 매우 자주 있었다  
\*\* 4점 척도 평균: 전혀 없었다 1, 가끔 있었다 2, 자주 있었다 3, 매우 자주 있었다 4

강제결혼 피해자들의 결혼 상대방에 대한 17가지 질문에 대해 평균 최소 1.2점에서 최대 1.9점(가끔 있었다)까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절 중국에서의 강제 성매매 경험

이제 중국에서의 강제성매매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표 4-92] 중국에서의 강제 성매매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7   | 3.5   |
| 아니오 | 194 | 96.5  |
| 총계  | 201 | 100.0 |

“귀하가 중국에 있는 동안 업소 등에서 성매매, 마사지 시술소, 컴퓨터로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전체 조사 대상 중 중국에서 성매매, 마사지 시술소, 컴퓨터 음란메시지 전송 등의 강제 성매매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7명)로 나타났다. 성매매 경험자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 제8절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중국에서 강제노동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은 모두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귀하가 중국에 있는 동안 강제로 농장일, 나무하는 일, 식당종업원 등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제노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강제노동의 유형은 가사노동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당일, 농사일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강제노동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3.7세로 조사되었다. 또 강제노동 경험자들의 강제 노동 기간 평균 38.8개월로 나타났다.

[표 4-93]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32  | (15.9)  |
| 아니오 | 165 | (82.1)  |
| 무응답 | 4   | (2.0)   |
| 총계  | 201 | (100.0) |

\* 빈도 수는 적으나 몇 가지 응답내용을 소개해 보면, 먼저 탈북전 성매매에 연루될 것을 대부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를 한 동기는 강제결혼과 마찬가지로 은신처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가담했다고 응답했다.

[표 4-94]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유형

|                       | 퍼센트    | 빈도 |
|-----------------------|--------|----|
| 가사 노예(가정에서 노예처럼 일을 함) | (43.8) | 14 |
| 식당일                   | (9.4)  | 3  |
| 농사일                   | (9.4)  | 3  |
| 강제출산                  | (6.3)  | 2  |
| 나무심는 것                | (3.1)  | 1  |
| 농장일                   | (3.1)  | 1  |
| 무응답                   | (28.1) | 9  |

[표 4-95]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연령

|     | 빈도    | 퍼센트     |
|-----|-------|---------|
| 18세 | 1     | (3.1)   |
| 20대 | 6     | (18.8)  |
| 30대 | 4     | (12.5)  |
| 40대 | 8     | (25.0)  |
| 무응답 | 13    | (40.6)  |
| 총계  | 32    | (100.0) |
| 평균  | 33.7세 |         |

[표 4-96]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기간

|       | 빈도     | 퍼센트     |
|-------|--------|---------|
| 1년 이하 | 3      | (9.4)   |
| 2년 이하 | 3      | (9.4)   |
| 3년 이하 | 4      | (12.5)  |
| 4년 이상 | 4      | (12.5)  |
| 무응답   | 18     | (56.3)  |
| 총계    | 32     | (100.0) |
| 평균    | 38.8개월 |         |

[표 4-97] 탈북 전 강제 노동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 4  | (12.5)  |
| 아니오 | 19 | (59.4)  |
| 무응답 | 9  | (28.1)  |
| 총계  | 32 | (100.0) |

[표 4-98] 강제 노동 제공 계기

|                        | 퍼센트  |
|------------------------|------|
| 강요에 의해서                | 21.9 |
|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서         | 21.9 |
|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 18.8 |
| 아는 사람의 권유              | 9.4  |
| 해당 안됨(강제노동서비스 해당되지 않음) | 6.3  |
|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 3.1  |
| 돈을 벌기 위해서              | 3.1  |
| 무응답                    | 25.0 |

강제노동 경험자들 중 12.5%(4명)는 탈북 전 본인이 강제 노동 및 서비스에 연루될 것을 알고 있었고, 탈북 전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강제 노동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요에 의해서”와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서”(각각 21.9%)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18.8%) 등이 언급되었다.

[표 4-99] 강제 노동 1일 할당량

|     | 빈도 | 퍼센트     |
|-----|----|---------|
| 예   | 6  | (18.8)  |
| 아니오 | 21 | (65.6)  |
| 무응답 | 5  | (15.6)  |
| 총계  | 32 | (100.0) |

[표 4-100] 강제 노동 내용

|                                         | 빈도 | 퍼센트   |
|-----------------------------------------|----|-------|
| 가정운영, 아기돌봄, 어른신수발                       | 1  | (3.1) |
| 가축, 농사일                                 | 1  | (3.1) |
| 강냉이 가을할 때 마대에 강냉이를 담아 머리에 이고 산에서 내려옴    | 1  | (3.1) |
| 나무를 심고 돈을 받음                            | 1  | (3.1) |
| 농사 짓는 일을 함                              | 1  | (3.1) |
| 농장일, 집 가사도우미 등                          | 1  | (3.1) |
| 농장 일을 시켰으며 더운 날씨에도 일을 시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 1  | (3.1) |
| 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한 달에 500위안 받음. 노동력 착취임      | 1  | (3.1) |

|                                                     | 빈도 | 퍼센트     |
|-----------------------------------------------------|----|---------|
| 먹고 살기 위해 일함                                         | 1  | (3.1)   |
| 목고 살기위해 스스로 일을 함                                    | 1  | (3.1)   |
| 밭 김매기, 사과나무 관리, 사과 배 따기                             | 1  | (3.1)   |
| 시골에 시집가서 먹고살기 위해 농사를 지음                             | 1  | (3.1)   |
| 식당에서 설거지 및 청소, 가사도우미 등                              | 1  | (3.1)   |
| 식당에서 중국돈 400원 받고 일함                                 | 1  | (3.1)   |
| 신체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남의 집 아이를 돌보는 일                      | 1  | (3.1)   |
| 월급 300원                                             | 1  | (3.1)   |
| 전반적인 농장일. 임신 중일 때에도 출산 후에도 낮과 밤이 구분없이 노동을 강요당함      | 1  | (3.1)   |
| 전주 비빔밥집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식당사장이 빚이 있었던 관계로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 | 1  | (3.1)   |
|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정보                                       | 1  | (3.1)   |
| 무응답                                                 | 13 | (40.6)  |
| 총계                                                  | 32 | (100.0) |

강제노동 경험자들 중 1일 할당량이 주어진 비율은 18.8%(6명)로 나타났고, 1일 할당량과 관계없이 그들의 노동 임무 또는 환경은 “가정운영, 아기 돌봄, 어르신 수발”, “가축, 농사일”,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표 4-101] 주당 근로 일수

|      | 빈도 | 퍼센트     |
|------|----|---------|
| 1~2일 | 3  | (9.4)   |
| 3~4일 | 2  | (6.3)   |
| 5~6일 | 9  | (28.1)  |
| 매일   | 15 | (46.9)  |
| 무응답  | 3  | (9.4)   |
| 총계   | 32 | (100.0) |

[표 4-102] 1일 근로 시간(최대)

|   | 빈도 | 퍼센트    |
|---|----|--------|
| 3 | 1  | (3.1)  |
| 5 | 1  | (3.1)  |
| 8 | 6  | (18.8) |

|     | 빈도     | 퍼센트     |
|-----|--------|---------|
| 10  | 8      | (25.0)  |
| 12  | 4      | (12.5)  |
| 14  | 2      | (6.3)   |
| 15  | 2      | (6.3)   |
| 18  | 1      | (3.1)   |
| 20  | 1      | (3.1)   |
| 무응답 | 6      | (18.8)  |
| 총계  | 32     | (100.0) |
| 평균  | 10.8시간 |         |

[표 4-103] 1일 근로 시간(최소)

|     | 빈도    | 퍼센트     |
|-----|-------|---------|
| 2   | 2     | (6.3)   |
| 5   | 1     | (3.1)   |
| 6   | 1     | (3.1)   |
| 8   | 3     | (9.4)   |
| 10  | 4     | (12.5)  |
| 12  | 1     | (3.1)   |
| 무응답 | 20    | (62.5)  |
| 총계  | 32    | (100.0) |
| 평균  | 7.6시간 |         |

강제노동 경험자들의 주당 근로 일수는 매일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근로시간은 평균 최소 7.6시간에서 최대 10.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4] 강제 노동 대가 수령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돈을 받았다)     | 18 | (56.3)  |
| 아니오(돈을 받지 못했다) | 11 | (34.4)  |
| 무응답            | 3  | (9.4)   |
| 총계             | 32 | (100.0) |

[표 4-105] 강제 노동 대가 (최대)

|               | 빈도                   | 퍼센트     |
|---------------|----------------------|---------|
| 1,000위안 이하    | 9                    | (50.0)  |
| 1,001~5,000위안 | 7                    | (38.9)  |
| 10,000위안 초과   | 1                    | (5.6)   |
| 무응답           | 1                    | (5.6)   |
| 총계            | 18                   | (100.0) |
| 평균            | 2,133위안(한화 347,679원) |         |

[표 4-106] 강제 노동 대가 (최소)

|               | 빈도                | 퍼센트     |
|---------------|-------------------|---------|
| 1,000위안 이하    | 4                 | (22.2)  |
| 1,001~5,000위안 | 1                 | (5.6)   |
| 무응답           | 13                | (72.2)  |
| 총계            | 18                | (100.0) |
| 평균            | 540위안(한화 88,020원) |         |

강제 노동 및 서비스 제공 후 돈을 받은 경우는 56.3%(18명)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최소 540위안(한화 88,020원)에서 최대 2,133위안(한화 347,679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7] 강제 노동 대가 직접 수령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 9  | (28.1)  |
| 아니오 | 16 | (50.0)  |
| 무응답 | 7  | (21.9)  |
| 총계  | 32 | (100.0) |

[표 4-108] 강제 노동 대가 수량인

|           | 빈도 | 퍼센트     |
|-----------|----|---------|
| 중국 국적 사람들 | 1  | (6.3)   |
| 모름/무응답    | 15 | (93.8)  |
| 총계        | 16 | (100.0) |

강제 노동 대가로 돈을 직접 받은 경우는 28.1%(9명)에 불과하고 50%(16명)는 직접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제노동 경험자들 중 18.8%(6명)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곳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9] 강제 노동 장소

|              | 빈도 | 퍼센트     |
|--------------|----|---------|
| 옮겨다녔다        | 6  | (18.8)  |
| 한 곳에서 계속 일했다 | 21 | (65.6)  |
| 무응답          | 5  | (15.6)  |
| 총계           | 32 | (100.0) |

[표 4-110] 강제 노동력 구매자 평가

|       | 퍼센트    | 빈도 |
|-------|--------|----|
| 쉬지못함  | (37.5) | 12 |
| 돈안줌   | (34.4) | 11 |
| 건강악화  | (31.3) | 10 |
| 신분위협  | (28.1) | 9  |
| 조건안지킴 | (25.0) | 8  |
| 욕설폭행  | (18.8) | 6  |
| 성관계강요 | (9.4)  | 3  |
| 성추행   | (9.4)  | 3  |
| 금품탈취  | (6.3)  | 2  |
| 성폭행   | (6.3)  | 2  |

강제 노동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은 가장 큰 피해는 “쉬고 싶을 때,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37.5%, 12명)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았다”(34.4%, 11명),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적이 있다”(31.3%,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노동 및 서비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는 “약속한 만큼 돈을 배분해 주지 않았다”(34.4%, 11명)는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중국에서의 기타 인신매매 경험으로 장기적출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으나 단 한 명만 장기적출을 당할뻔 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11] 강제 노동력 알선자 평가

|        | 퍼센트  | 빈도 |
|--------|------|----|
| 돈안줌    | 34.4 | 11 |
| 동일공간생활 | 15.6 | 5  |
| 벌금부과   | 12.5 | 4  |
| 성착취가요  | 9.4  | 3  |
| 빛강요    | 3.1  | 1  |
| 신분위협   | 3.1  | 1  |

제9절 중국에서의 범죄피해로부터의 탈출

중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계기를 만들었는지 먼저 “귀하는 강제결혼·성매매·강제노동 상대방, 브로커 등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표 4-112] 탈출 방법

|                         | 빈도  | 퍼센트     |
|-------------------------|-----|---------|
| 다른 브로커의 도움으로            | 52  | (25.9)  |
| 스스로의 힘으로                | 34  | (16.9)  |
| 시민단체나 선교단체 등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 7   | (3.5)   |
| 아는 사람                   | 1   | (0.5)   |
| 브로커가 보내줌                | 1   | (0.5)   |
| 친구                      | 1   | (0.5)   |
| 무응답                     | 105 | (52.2)  |
| 총계                      | 201 | (100.0) |

전체 조사 대상자들 중 30.4%는 타인(다른 브로커 25.9%, 구호단체 3.5%, 지인/친구 1%)의 도움으로 범죄 피해 상황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한 경우는 16.9%로 조사되었다.

[표 4-113] 탈출을 도와준 사람 및 단체의 접촉 경로

|                       | 빈도 | 퍼센트     |
|-----------------------|----|---------|
|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소개로 | 11 | (18.6)  |
| 남한에 있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 18 | (30.5)  |
|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소개로 | 5  | (8.5)   |
| 중국에 있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 19 | (32.2)  |
| 위챗                    | 1  | (1.7)   |
| 무응답                   | 5  | (8.5)   |
| 총계                    | 59 | (100.0) |

“귀하는 인신매매 상황에서의 탈출을 도와준 단체나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탈출을 도와준 사람/단체를 만나게 된 경로는 남한에 있는 아는 사람(30.5%) 또는 가족/친인척 소개(18.6%) 등과 같이 남한과 관련 사람이 49.1%로 나타났다.

[표 4-114] 탈출 추가 비용

|     | 빈도  | 퍼센트     |
|-----|-----|---------|
| 예   | 33  | (16.4)  |
| 아니오 | 65  | (32.3)  |
| 무응답 | 103 | (51.2)  |
| 총계  | 201 | (100.0) |

[표 4-115] 탈출 비용 지불 대상

|       | 빈도 | 퍼센트     |
|-------|----|---------|
| 브로커에게 | 30 | (90.9)  |
| 친구    | 1  | (3.0)   |
| 무응답   | 2  | (6.1)   |
| 총계    | 33 | (100.0) |

또한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하면서 추가적으로 귀하가 지불한 돈이 있습니까?” 또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불하셨습니다?”라고 물어보았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하면서 조사 대상자 본인이 추가적으로 지불한 돈이

있는 경우는 16.4%로 나타났고, 지불대상은 브로커가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6] 다른 사람 혹은 단체 지불 비용

|                               | 빈도  | 퍼센트     |
|-------------------------------|-----|---------|
| 예                             | 10  | (5.0)   |
| 아니오                           | 73  | (36.3)  |
| 다른 사람이 지불한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몰랐다 | 6   | (3.0)   |
| 무응답                           | 112 | (55.7)  |
| 총계                            | 201 | (100.0) |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지불한 비용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탈출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탈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는 5%(10명)로 조사되었다.

[표 4-117] 인신매매 탈출 목적

|               | 퍼센트    |
|---------------|--------|
| 한국으로 가기 위하여   | (32.3) |
| 신체적, 정신적 힘들어서 | (8.5)  |
|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 (2.5)  |
| 일단 나쁜 곳이라서    | (0.5)  |
| 복숭이 두려워서      | (0.5)  |
| 신분이 필요해서      | (0.5)  |
| 죽으려고 나옴       | (0.5)  |
| 공안의 위협        | (0.5)  |
| 무응답           | (57.7) |

인신매매 탈출을 왜 시도했는지 “귀하가 인신매매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한 목적은 “한국으로 가기위해서”가 32.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응답 또한 8.5%로 나타났다.

인신매매 탈출시 상황에 대해 “귀하께서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하여 피해있었던

장소가 있으셨습니까?” “피해있었던 장소와 기간에 대하여 답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 중 9.5%만이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피해있던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있던 장소는 연길(21.1%, 4명), 심양/하얼빈(각각 10.5%, 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8] 탈출 시 피해있던 장소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 19  | (9.5)   |
| 아니오 | 64  | (31.8)  |
| 무응답 | 118 | (58.7)  |
| 총계  | 201 | (100.0) |

[표 4-119] 탈출 시 피해있던 장소

|      | 빈도 | 퍼센트     |
|------|----|---------|
| 북경   | 1  | (5.3)   |
| 산둥   | 1  | (5.3)   |
| 심양   | 2  | (10.5)  |
| 연길   | 4  | (21.1)  |
| 요녕성  | 1  | (5.3)   |
| 청진   | 1  | (5.3)   |
| 청도   | 1  | (5.3)   |
| 칭왕도  | 1  | (5.3)   |
| 태림시  | 1  | (5.3)   |
| 하얼빈  | 2  | (10.5)  |
| 후순   | 1  | (5.3)   |
| 흑룡강성 | 1  | (5.3)   |
| 경찰서  | 1  | (5.3)   |
| 무응답  | 1  | (5.3)   |
| 총계   | 19 | (100.0) |

다음은 탈북 후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체류한 나라들을 적도록 하였다. 그 순서는 대체로 중국에서 시작해서 라오스 또는 베트남을 거쳐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머문 국가들을 순서에 관계없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20] 탈출 과정에서의 체류 국가

|      | 퍼센트    |
|------|--------|
| 중국   | (74.6) |
| 태국   | (46.8) |
| 라오스  | (26.9) |
| 베트남  | (6.0)  |
| 몽골   | (6.0)  |
| 캄보디아 | (4.5)  |
| 미얀마  | (1.0)  |
| 무응답  | (25.4) |

[표 4-121] 가족 동반 입국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혼자 입국    | 138 | (68.7)  |
| 가족 일부 입국 | 42  | (20.9)  |
| 가족 전체 입국 | 9   | (4.5)   |
| 무응답      | 12  | (6.0)   |
| 총계       | 201 | (100.0) |

한국 입국시 동반가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68.7%인 138명이 혼자 입국했다고 응답했고 가족 일부 입국이 20.9%로 4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이 입국한 경우는 1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경험한 가족분리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했는가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60.7%인 122명이 한 번의 시도에 한국에 올 수 있었고 14.9%인 30명이 2번, 5.0%인 10명이 3번의 시도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2] 중국에서 한국 입국 시도 횟수

|     | 빈도  | 퍼센트     |
|-----|-----|---------|
| 1회  | 122 | (60.7)  |
| 2회  | 30  | (14.9)  |
| 3회  | 10  | (5.0)   |
| 4회  | 1   | (0.5)   |
| 무응답 | 38  | (18.9)  |
| 총계  | 201 | (100.0) |

## 제10절 자녀 분리 문제

자녀들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귀하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체의 55.2%인 111명이 자녀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9.9%인 60명이 자녀와 현재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3] 한국에서의 동거 자녀 유무

|     | 빈도  | 퍼센트     |
|-----|-----|---------|
| 있다  | 111 | (55.2)  |
| 없다  | 60  | (29.9)  |
| 무응답 | 30  | (14.9)  |
| 총계  | 201 | (100.0) |

이어서 “현재 북한에 자녀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8.4%인 37명이 북한에 자녀를 두고 왔다고 응답했으며 68.2%인 137명은 북한에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에 자녀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0.4%인 41명이 중국에 자녀를 남겨두고 온 것으로 응답했으며 64.2%는 중국에 자녀를 두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현재 북한에 자녀를 두고 온 응답자들보다 중국에서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를 중국에 두고 온 응답자들이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4] 북한 자녀 유무

|     | 빈도  | 퍼센트     |
|-----|-----|---------|
| 있다  | 37  | (18.4)  |
| 없다  | 137 | (68.2)  |
| 무응답 | 27  | (13.4)  |
| 총계  | 201 | (100.0) |

[표 4-125] 중국 자녀 유무

|     | 빈도  | 퍼센트     |
|-----|-----|---------|
| 있다  | 41  | (20.4)  |
| 없다  | 129 | (64.2)  |
| 무응답 | 31  | (15.4)  |
| 총계  | 201 | (100.0) |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북한이나 중국에서) 자녀와 헤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36.8%인 74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56.2%인 113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6] 탈북 과정에서 자녀와의 이별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74  | (36.8)  |
| 아니오 | 113 | (56.2)  |
| 무응답 | 14  | (7.0)   |
| 총계  | 201 | (100.0) |

[표 4-127] 자녀와의 이별 원인

|                 | 빈도 | 퍼센트    |
|-----------------|----|--------|
| 탈북과정에서의 위험때문에   | 13 | (17.6) |
| 경제적인 측면         | 8  | (10.8) |
| 이혼/남편과의 사이 안좋아서 | 3  | (4.1)  |
| 무응답             | 50 | (67.6) |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이별한 경험이 있는 응답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의 36.8%로 나타났고, 그들의 이별 원인은 “탈북 과정에서의 위험 때문에”(17.6%, 13명), “경제적인 측면”(10.8%, 8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에 떨어져 있는 자녀와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락

\* 이들 74명의 응답자들 중에는 북한과 중국에 모두 자녀들을 두고 온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수는 이전 두 문항을 응답자를 합친 숫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고 있는 비율이 28.4%, 그렇지 않은 비율이 25.7%로 나타나 중국에 있는 자녀들과 연락하고 있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자녀와 떨어져 있는 응답자 중에서 중국에 있는 남편(가족)에게 자녀와의 만남을 조건으로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4.9%(11명)는 자녀 만남을 조건으로 중국에 있는 남편 또는 가족에게 돈을 지불한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8] 중국에 있는 자녀와의 연락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예          | 21 | (28.4)  |
| 아니오        | 19 | (25.7)  |
| 중국에 자녀가 없음 | 23 | (31.1)  |
| 무응답        | 11 | (14.9)  |
| 총계         | 74 | (100.0) |

[표 4-129] 자녀와의 만남을 조건으로 돈 지불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11 | (14.9)  |
| 아니오 | 34 | (45.9)  |
| 무응답 | 29 | (39.2)  |
| 총계  | 74 | (100.0) |

[표 4-130] 자녀 양육비 혹은 생필품 전달 경험

|          | 빈도 | 퍼센트     |
|----------|----|---------|
| 예        | 22 | (29.7)  |
| 전달한 적 없다 | 21 | (28.4)  |
| 무응답      | 31 | (41.9)  |
| 총계       | 74 | (100.0) |

자녀와 이별을 경험한 북한 이탈 주민 중 29.7%는 자녀 양육비 및 생필품을 전달한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1] 중국 거주 자녀가 어머니와 동거 의향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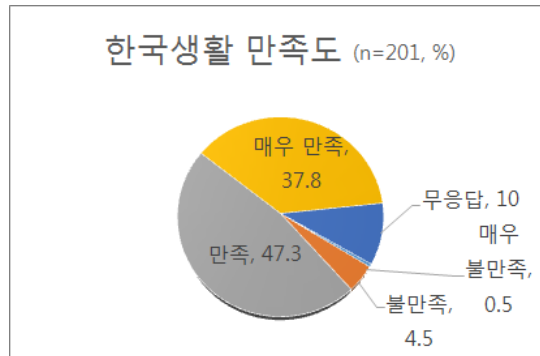
|       | 빈도 | 퍼센트     |
|-------|----|---------|
| 예     | 23 | (31.1)  |
| 아니오   | 8  | (10.8)  |
| 잘모르겠다 | 13 | (17.6)  |
| 무응답   | 30 | (40.5)  |
| 총계    | 74 | (100.0) |

[표 4-132]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

|                     | 빈도 | 퍼센트     |
|---------------------|----|---------|
| 브로커에게 부탁            | 7  | (9.5)   |
| 직접 중국 방문            | 7  | (9.5)   |
| 선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등에게 부탁 | 4  | (5.4)   |
| 자녀가 원해하지 않음         | 3  | (4.1)   |
|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함        | 1  | (1.4)   |
| 노력하고 있지 않음          | 7  | (9.5)   |
| 함께 살고 싶지 않음         | 2  | (2.7)   |
| 무응답                 | 43 | (58.2)  |
| 총계                  | 74 | (100.0) |

자녀와 이별한 북한이탈주민 중 31.1%는 중국에 있는 자녀가 응답자 본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들은 자녀와 함께 살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로커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중국 방문(각각 9.5%, 7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1절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



[그림 4-7] 한국생활에서의 만족도

[표 4-133]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도

|              | 빈도  | 퍼센트     |
|--------------|-----|---------|
| 매우 잘 적응      | 42  | (20.9)  |
| 잘 적응하는 편     | 127 | 963.2)  |
|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 | 16  | (8.0)   |
| 매우 부적응       | 1   | (0.5)   |
| 무응답          | 15  | (7.5)   |
| 총계           | 20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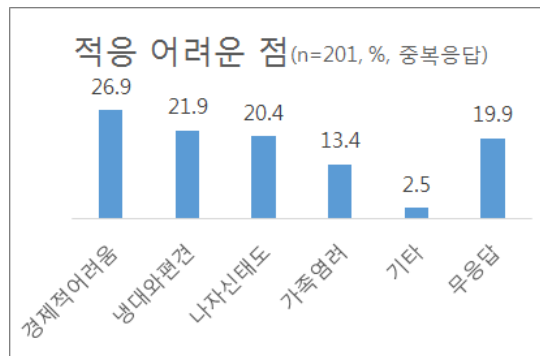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현재 자신의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조사 대상 중 85.1%는 한국생활에 만족(매우만족이 37.8% + 만족이 47.3%)하고 있으며, 84.1%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매우 잘 적응 20.9% + 잘 적응하는 편 63.2%)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4] 한국생활에 적응 못하는 이유

|                      | 퍼센트    |
|----------------------|--------|
| 한국에서 적당한 직업 선택이 힘들어서 | (30.3) |
|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      | (18.4) |
| 삶의 목표 4-불확실          | (16.9) |

|                            | 퍼센트    |
|----------------------------|--------|
| 자녀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 (11.4) |
| 가족들과의 문화적 차이               | (10.4) |
| 사치와 허영                     | (4.0)  |
| 탈북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상처 및 죄책감 때문에 | (4.0)  |
| 많은 유혹                      | (0.5)  |
| 적응 잘함                      | (0.5)  |
| 한국사람들의 편견                  | (0.5)  |
| 무응답                        | 15.4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복수응답), “적당한 직업 선택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력 없이 기대가 커서”(18.4%), “삶의 목표가 불확실해서”(16.9%), “자녀 키우기 힘들어서”(11.4%), “가족들과의 문화적 차이”(1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8]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운 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직장 구하기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주민들의 냉대와 편견”(21.9%),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 및 무능력”(20.4%), “북한, 중국 등에 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13.4%)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35] 기초생활수급 여부

|        | 빈도  | 퍼센트     |
|--------|-----|---------|
| 수급 대상자 | 78  | (38.8)  |
| 대상자 아님 | 107 | (53.2)  |
| 무응답    | 16  | (8.0)   |
| 총계     | 201 | (100.0) |

[표 4-136] 정착금 사용처

|                             | 퍼센트    |
|-----------------------------|--------|
|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을 위하여          | (49.8) |
| 북한/중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 위한 송금  | (25.4) |
| 북한/중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 (12.4) |
| 본인의 탈북비용을 브로커 등에게 갚기 위하여    | (5.5)  |
| 자녀 학비로                      | (0.5)  |
| 북한 부모님                      | (0.5)  |
| 무응답                         | (15.4) |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8.8%인 78명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이나 스스로 번 수입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입의 주 사용처는 생활비가 4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북한/중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25.4%), 북한/중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정부가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원 퇴소 직후, 지역사회 정착과정, 자립이후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표는 4점 리커트척도로 응답한 점수의 항목별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표 4-137] 한국 정착 단계별 필요 항목 평가: 항목별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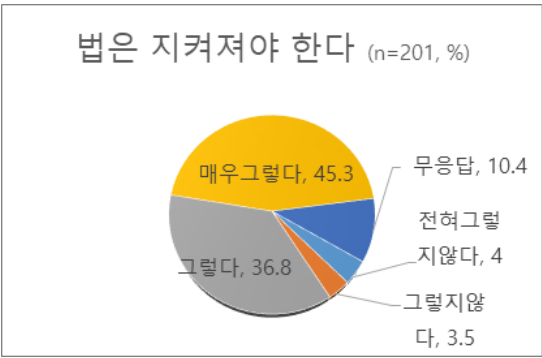
|                 | 하나원 퇴소 직후 | 지역사회 정착과정 | 자립 이후 |
|-----------------|-----------|-----------|-------|
| 1) 경제적 지원       | (3.5)     | (3.4)     | (3.2) |
| 2)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 (3.4)     | (3.4)     | (3.2) |
| 3) 탈북과정 트라우마 치료 | (3.3)     | (3.2)     | (3.2) |

|                  | 하나원<br>퇴소 직후 | 지역사회 정착과정 | 자립 이후 |
|------------------|--------------|-----------|-------|
| 4) 한국사회에 맞는 언어교육 | (3.4)        | (3.4)     | (3.2) |
| 5) 대인관계 기술 교육    | (3.4)        | (3.4)     | (3.2) |
| 6) 가족문제 상담       | (3.3)        | (3.2)     | (3.1) |
| 7) 자녀 양육 기술 및 교육 | (3.4)        | (3.4)     | (3.3) |
| 8) 금전관리 교육       | (3.4)        | (3.4)     | (3.2) |
| 9) 법률상담          | (3.4)        | (3.3)     |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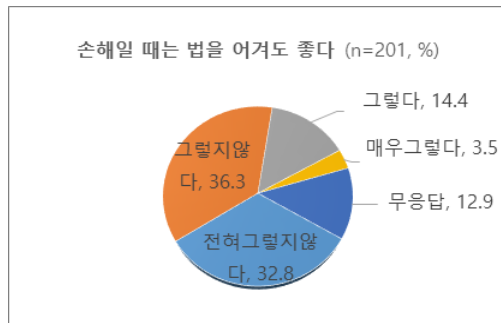
\*평균(4점척도): 1=전혀 필요없다, 2=필요없다, 3=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한국 정착 단계별로 그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아홉 가지 항목 모두 “하나원 퇴소 직후”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정착 초반인 “하나원 퇴소 직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립 이후 필요성은 정착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한 국민의 사회적응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태도 및 법준수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응답자들에게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는 법을 어겨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4점 리커트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범주를 사용해서 물어보았다. 두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 대상자중 82.1%는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매우 그렇다 45.3% + 그렇다 36.8%)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9] 준법에 대한 인식(1)



[그림 4-10] 준법에 대한 인식(2)

한편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에는 법을 어겨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의 17.9%만이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는 법을 어겨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매우 그렇다 3.5% + 그렇다 14.4%)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북한이탈 여성들은 약 85%가 현재의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약 85%는 본인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고 노력없이 기대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 삶의 목표가 불확실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사회구조적으로 기회가 적고 또한 문화적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모두 문제로 지적하였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냉대와 편견 또한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2절 한국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등 경험들이 한국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생활 만족도와 적응도는 4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불만족한다”의 4점 척도와 “매우 잘 적응”에서 “매우 부적응”까지 4점 척도를 각각 사용하였다.

먼저, 중국공안 체포경험이 한국생활 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2.709(p=.439,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중국공안 체포경험별 한국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8] 중국 공안 체포경험과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
| 중국공안<br>체포경험 | 있다 | 17         | 31          | 3              | 0           | 51      |
|              |    | (33.3)     | (60.8)      | (5.9)          | (0.0)       | (100.0) |
|              | 없다 | 59         | 64          | 6              | 1           | 130     |
|              |    | (45.4)     | (49.2)      | (4.6)          | (0.8)       | (100.0) |
| 전체           |    | 76         | 95          | 9              | 1           | 181     |
|              |    | (42.0)     | (52.5)      | (5.0)          | (0.6)       | (100.0) |

다음으로 중국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에 오래 머무는 경우 그만큼 인신매매 상황에 오래 노출될 수 있고 그것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아 한국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체류기관과 한국생활만족도 사이에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던 결과  $\chi^2 = 12.420(p=.413, d.f.=12)$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중국체류기간별 한국생활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9] 중국 체류기간에 따른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
| 중국<br>체류기간 | 2년 이하    | 14         | 20          | 1              | 0           | 35      |
|            |          | (40.0)     | (57.1)      | (2.9)          | (0.0)       | (100.0) |
|            | 2년~5년이하  | 20         | 18          | 4              | 1           | 43      |
|            |          | (46.5)     | (41.9)      | (9.3)          | (2.3)       | (100.0) |
|            | 5년~10년이하 | 22         | 31          | 1              | 0           | 54      |
|            |          | (40.7)     | (57.4)      | (1.9)          | (0.0)       | (100.0) |
|            | 10년 초과   | 12         | 13          | 0              | 0           | 25      |
|            |          | (48.0)     | (52.0)      | (0.0)          | (0.0)       | (100.0) |
|            | 무응답      | 8          | 13          | 3              | 0           | 24      |
|            |          | (33.3)     | (54.2)      | (12.5)         | (0.0)       | (100.0) |
| 전체         |          | 76         | 95          | 9              | 1           | 181     |
|            |          | (42.0)     | (52.5)      | (5.0)          | (0.6)       | (100.0) |

남한에 입국한 시기에 따른 한국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44.784 (p=.000, d.f.=12)$ 로  $\alpha=.001$  수준에서 “남한입국시기별 한국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나타난 대로 보다 최근에 남한으로 온 응답자일수록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0] 남한입국시기에 따른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무응답     |         |
| 남한<br>입국시기 | 2010년 이전   | 23         | 36          | 6              | 1           | 6       | 72      |
|            |            | (31.9)     | (50.0)      | (8.3)          | (1.4)       | (8.3)   | (100.0) |
|            | 2010~2014년 | 24         | 29          | 0              | 0           | 4       | 57      |
|            |            | (42.1)     | (50.9)      | (0.0)          | (0.0)       | (7.0)   | (100.0) |
|            | 2015년 이후   | 27         | 26          | 2              | 0           | 2       | 57      |
|            |            | (47.4)     | (45.6)      | (3.5)          | (0.0)       | (3.5)   | (100.0) |
|            | 무응답        | 2          | 4           | 1              | 0           | 8       | 15      |
|            |            | (13.3)     | (26.7)      | (6.7)          | (0.0)       | (53.3)  | (100.0) |
| 전체         | 76         | 95         | 9           | 1              | 20          | 201     |         |
|            | (37.8)     | (47.3)     | (4.5)       | (0.5)          | (10.0)      | (100.0) |         |

다음은 한국생활 적응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중국공안 체포경험 여부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약한 정도이긴 하지만 체포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이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chi^2 = 5.895 (p=.117,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중국공안 체포경험별 한국생활 적응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1] 중국공안 체포경험과 한국생활에의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 잘 적응  | 잘 적응하는 편 |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 | 매우 부적응 |         |
| 중국공안<br>체포경험 | 있다 | 8        | 37       | 8            | 0      | 53      |
|              |    | (15.1)   | (69.8)   | (15.1)       | (0.0)  | (100.0) |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는<br>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
|    | 없다 | 34         | 90          | 8               | 1         | 133     |
|    |    | (25.6)     | (67.7)      | (6.0)           | (0.8)     | (100.0) |
| 전체 |    | 42         | 127         | 16              | 1         | 186     |
|    |    | (22.6)     | (68.3)      | (8.6)           | (0.5)     | (100.0) |

중국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11.157(p=.516, d.f.=12)$ 로  $\alpha=.05$  수준에서 “중국체류기간”과 “한국 생활 적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2] 중국체류기간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는<br>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
| 중국<br>체류기간 | 2년 이하    | 11         | 22          | 4               | 0         | 37      |
|            |          | (29.7)     | (59.5)      | (10.8)          | (0.0)     | (100.0) |
|            | 2년~5년이하  | 13         | 26          | 3               | 1         | 43      |
|            |          | (30.2)     | (60.5)      | (7.0)           | (2.3)     | (100.0) |
|            | 5년~10년이하 | 10         | 42          | 4               | 0         | 56      |
|            |          | (17.9)     | (75.0)      | (7.1)           | (0.0)     | (100.0) |
|            | 10년 초과   | 4          | 20          | 1               | 0         | 25      |
|            |          | (16.0)     | (80.0)      | (4.0)           | (0.0)     | (100.0) |
|            | 무응답      | 4          | 17          | 4               | 0         | 25      |
|            |          | (16.0)     | (68.0)      | (16.0)          | (0.0)     | (100.0) |
| 전체         |          | 42         | 127         | 16              | 1         | 186     |
|            |          | (22.6)     | (68.3)      | (8.6)           | (0.5)     | (100.0) |

남한입국시기별로 한국생활적응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42.240(p=.000, d.f.=12)$ 으로  $\alpha=.05$  수준에서 “남한입국시기”와 “한국 생활 적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이전과 비교해서 그 이후를 살펴보면 나중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여성들의 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3] 남한입국시기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br>는 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무응답     |         |
| 남한입국시<br>기 | 2010년 이전   | 15         | 43           | 8               | 1         | 5       | 72      |
|            |            | (20.8)     | (59.7)       | (11.1)          | (1.4)     | (6.9)   | (100.0) |
|            | 2010~2014년 | 13         | 40           | 2               | 0         | 2       | 57      |
|            |            | (22.8)     | (70.2)       | (3.5)           | (0.0)     | (3.5)   | (100.0) |
|            | 2015년 이후   | 12         | 39           | 5               | 0         | 1       | 57      |
|            |            | (21.1)     | (68.4)       | (8.8)           | (0.0)     | (1.8)   | (100.0) |
|            | 무응답        | 2          | 5            | 1               | 0         | 7       | 15      |
|            |            | (13.3)     | (33.3)       | (6.7)           | (0.0)     | (46.7)  | (100.0) |
| 전체         | 42         | 127        | 16           | 1               | 15        | 201     |         |
|            | (20.9)     | (63.2)     | (8.0)        | (0.5)           | (7.5)     | (100.0) |         |

다음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학대 경험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언어적 학대 경험 여부가 한국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5.08(p=.917,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언어적 학대” 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4] 언어적 학대 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
| 언어적 학대 | 있다     | 13         | 14          | 1              | 0           | 28      |
|        |        | (46.4)     | (50.0)      | (3.6)          | (0.0)       | (100.0) |
|        | 없다/무응답 | 63         | 81          | 8              | 1           | 153     |
|        |        | (41.2)     | (52.9)      | (5.2)          | (0.7)       | (100.0) |
| 전체     |        | 76         | 95          | 9              | 1           | 181     |
|        |        | (42.0)     | (52.5)      | (5.0)          | (0.6)       | (100.0) |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경험 여부가 한국생활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1.704(p=.636,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신체적

학대”와 “한국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5] 신체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
| 신체적 학대 | 있다     | 10         | 7           | 1              | 0           | 18      |
|        |        | (55.6)     | (38.9)      | (5.6)          | (0.0)       | (100.0) |
|        | 없다/무응답 | 66         | 88          | 8              | 1           | 163     |
|        |        | (40.5)     | (54.0)      | (4.9)          | (0.6)       | (100.0) |
| 전체     |        | 76         | 95          | 9              | 1           | 181     |
|        |        | (42.0)     | (52.5)      | (5.0)          | (0.6)       | (100.0) |

정신적 학대 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321(p=.956,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정신적 학대”경험 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6] 정신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
| 정신적 학대 | 있다     | 17         | 20          | 2              | 0           | 39      |
|        |        | (43.6)     | (51.3)      | (5.1)          | (0.0)       | (100.0) |
|        | 없다/무응답 | 59         | 75          | 7              | 1           | 142     |
|        |        | (41.5)     | (52.8)      | (4.9)          | (0.7)       | (100.0) |
| 전체     |        | 76         | 95          | 9              | 1           | 181     |
|        |        | (42.0)     | (52.5)      | (5.0)          | (0.6)       | (100.0) |

다음으로 한국생활 적응도가 학대경험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언어적 학대경험 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3.794(p=.285,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언어적 학대”와 “한국생활 적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7] 언어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는<br>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
| 언어적 학대 | 있다     | 9          | 15          | 4               | 0         | 28      |
|        |        | (32.1)     | (53.6)      | (14.3)          | (0.00)    | (100.0) |
|        | 없다/무응답 | 33         | 112         | 12              | 1         | 158     |
|        |        | (20.9)     | (70.9)      | (7.6)           | (0.6)     | (100.0) |
| 전체     |        | 42         | 127         | 16              | 1         | 186     |
|        |        | (22.6)     | (68.3)      | (8.6)           | (0.5)     | (100.0) |

신체적 학대경험 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1.746(p=.6270,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신체적 학대”와 “한국생활 적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8] 신체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는<br>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
| 신체적<br>학대 | 있다     | 6          | 10          | 2               | 0         | 18      |
|           |        | (33.3)     | (55.6)      | (11.1)          | (0.0)     | (100.0) |
|           | 없다/무응답 | 36         | 117         | 14              | 1         | 168     |
|           |        | (21.4)     | (69.6)      | (8.3)           | (0.6)     | (100.0) |
| 전체        |        | 42         | 127         | 16              | 1         | 186     |
|           |        | (22.6)     | (68.3)      | (8.6)           | (0.5)     | (100.0) |

정신적 학대 경험과 한국생활 적응도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2.513(p=.473, d.f.=3)$ 으로  $\alpha=.05$  수준에서 “정신적 학대”와 “한국생활 적응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9] 정신적 학대여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는<br>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
| 정신적<br>학대 | 있다     | 12         | 23          | 4               | 0         | 39      |
|           |        | (30.8)     | (59.0)      | (10.3)          | (0.0)     | (100.0) |
|           | 없다/무응답 | 30         | 104         | 12              | 1         | 147     |
|           |        | (20.4)     | (70.7)      | (8.2)           | 90.7)     | (100.0) |
| 전체        |        | 42         | 127         | 16              | 1         | 186     |
|           |        | (22.6)     | (68.3)      | (8.6)           | (0.5)     | (100.0) |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생존을 위한 강제결혼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상처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3.422(p=.945, d.f.=9)$ 로 나타나  $\alpha=.05$  수준에서 “결혼생활 만족도”와 “한국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4-150] 중국에서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
| 결혼<br>만족도 | 8점이하   | 36         | 50          | 4              | 1           | 91      |
|           |        | (39.6)     | (54.9)      | (4.4)          | (1.1)       | (100.0) |
|           | 9~15점  | 12         | 9           | 2              | 0           | 23      |
|           |        | (52.2)     | (39.1)      | (8.7)          | (0.0)       | (100.0) |
|           | 16~19점 | 17         | 21          | 2              | 0           | 40      |
|           |        | (42.5)     | (52.5)      | (5.0)          | (0.0)       | (100.0) |
|           | 20~31점 | 11         | 15          | 1              | 0           | 27      |
|           |        | (40.7)     | (55.6)      | (3.7)          | (0.0)       | (100.0) |
| 전체        |        | 76         | 95          | 9              | 1           | 181     |
|           |        | (42.0)     | (52.5)      | (5.0)          | (.6)        | (100.0) |

다음은 중국에서 살았던 결혼상대에 대한 평가와 한국생활 만족도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chi^2=6.003(p=.740,$

d.f.=9)으로  $\alpha=.05$  수준에서 “결혼상대 평가”와 “한국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51] 중국에서의 결혼상대 평가와 한국생활 만족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만족도   |             |                |             | 전체      |
|----------------|---------|------------|-------------|----------------|-------------|---------|
|                |         | 매우<br>만족한다 | 만족하는<br>편이다 | 만족하지<br>못한 편이다 | 매우<br>불만족한다 |         |
| 결혼<br>상대<br>평가 | 15점이하   | 25         | 39          | 4              | 1           | 69      |
|                |         | (36.2)     | (56.5)      | (5.8)          | (1.4)       | (100.0) |
|                | 17, 18점 | 17         | 23          | 3              | 0           | 43      |
|                |         | (39.5)     | (53.5)      | (7.0)          | (0.0)       | (100.0) |
|                | 19~28점  | 16         | 17          | 2              | 0           | 35      |
|                |         | (45.7)     | (48.6)      | (5.7)          | (0.0)       | (100.0) |
|                | 29~60점  | 18         | 16          | 0              | 0           | 34      |
|                |         | (52.9)     | (47.1)      | (0.0)          | (0.0)       | (100.0) |
| 전체             |         | 76         | 95          | 9              | 1           | 181     |
|                |         | (42.0)     | (52.5)      | (5.0)          | (0.6)       | (100.0) |

다음은 중국에서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한국생활 적응도와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에 나타난대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6.383(p=.701, d.f.=9)$ 으로  $\alpha=.05$  수준에서 “결혼생활 만족도”와 “한국생활 적응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2] 중국에서의 결혼생활만족도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는<br>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
| 결혼<br>만족도 | 8점이하   | 23         | 62          | 9               | 1         | 95      |
|           |        | (24.2)     | (65.3)      | (9.5)           | (1.1)     | (100.0) |
|           | 9~15점  | 6          | 14          | 3               | 0         | 23      |
|           |        | (26.1)     | (60.9)      | (13.0)          | (0.0)     | (100.0) |
|           | 16~19점 | 10         | 29          | 1               | 0         | 40      |
|           |        | (25.0)     | (72.5)      | (2.5)           | (0.0)     | (100.0) |
|           | 20~31점 | 3          | 22          | 3               | 0         | 28      |
|           |        | (10.7)     | (78.6)      | (10.7)          | (0.0)     | (100.0) |
| 전체        |        | 42         | 127         | 16              | 1         | 186     |
|           |        | (22.6)     | (68.3)      | (8.6)           | (0.5)     | (100.0) |

마지막으로 결혼상대에 대한 평가와 한국생활 적응도에 관계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 = 9.544(p=.389, d.f.=9)$ 로 나타나  $\alpha=.05$  수준에서 “결혼상대 평가”와 “한국생활 적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3] 중국에서의 결혼상대평가와 한국생활 적응도 교차분석

|                |         | 한국생활 적응도   |             |                 |           | 전체      |
|----------------|---------|------------|-------------|-----------------|-----------|---------|
|                |         | 매우<br>잘 적응 | 잘 적응하는<br>편 | 잘 적응하지<br>못하는 편 | 매우<br>부적응 |         |
| 결혼<br>상대<br>평가 | 15점이하   | 19         | 46          | 7               | 1         | 73      |
|                |         | (26.0)     | (63.0)      | (9.6)           | (1.4)     | (100.0) |
|                | 17, 18점 | 5          | 36          | 3               | 0         | 44      |
|                |         | (11.4)     | (81.8)      | (6.8)           | (0.0)     | (100.0) |
|                | 19~28점  | 8          | 22          | 5               | 0         | 35      |
|                |         | (22.9)     | (62.9)      | (14.3)          | (0.0)     | (100.0) |
|                | 29~60점  | 10         | 23          | 1               | 0         | 34      |
|                |         | (29.4)     | (67.6)      | (2.9)           | (0.0)     | (100.0) |
| 전체             |         | 42         | 127         | 16              | 1         | 186     |
|                |         | (22.6)     | (68.3)      | (8.6)           | (0.5)     | (100.0) |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교차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입국시기별로 보았더니 최근에 입국한 응답자들 보다 2010년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마도 입국 후 몇 년 동안은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북한의 생활과 비교를 통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에 대한 책임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 마지막으로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연령, 북한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자존감, 자기통제, 최종탈북시기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중국체류기간, 북송경험, 중국 공안체포경험, 인신매매경험,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학대경험,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 상대자에 대한 만족도 등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를 당한 경험 ( $Beta=-.165, b=-.206, t=-2.907, s.e.=.098, p=.037$ )이 한국생활 적응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인신매매 관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표본의 동질성으로 인한 독립변수들의 분산이 크지 않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죄 피해와 한국생활의 만족도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약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난 후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 공안체포 경험 여부가 한국생활 적응에 유일하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의 결과 아직도 공안에게 쫓기고 잡히는 꿈을 자주 꾀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으며 이들의 과거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아직도 현재 한국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제 5 장



# 심층면접조사 결과



# 심층면접조사 결과

##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총 24명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국에서의 전반적인 인신매매 경험을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 중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떠돌며 어떻게 인신매매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 구조와 과정, 양상 및 인신매매 내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어떻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탈북과정에서의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신매매 노출문제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층면접조사는 탈북 동기, 탈북 경로, 중국에서의 체류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범죄 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경험 등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탈북 경로에서 어떻게 인신매매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대상자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성인으로서 연령, 출신 지역, 탈북시기, 한국 입국시기, 중국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탈북 후 인신매매 범죄노출 실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탈북시기에 따라 탈북경로 및 브로커 등을 통한 인신매매 범죄피해의 일련의 과정, 경로 및 구조가 상이한 바 면접자 결정시 탈북시기를 1990년대 말부터 2017년까지로 넓혀 다양한 기간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5-1>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의 익명성을 위해 영문자로 구분하였다.

[표 5-1] 면접 응답자 기본정보(여성 북한이탈주민)

|   | 나이  | 탈북연도  | 중국 체류기간 | 출신지역 | 중국에서의 직업    |
|---|-----|-------|---------|------|-------------|
| A | 44세 | 2002년 | 4년      | 함경북도 | 주부          |
| B | 31세 | 2017년 | 6개월     | 양강도  | 주부          |
| C | 33세 | 2013년 | 4년 6개월  | 양강도  | 주부          |
| D | 33세 | 2013년 | 5년      | 양강도  | 주부          |
| E | 28세 | 2013년 | 5년      | 양강도  | 주부          |
| F | 43세 | 2012년 | 5년 4개월  | 양강도  | 주부          |
| G | 35세 | 2008년 | 10년     | 양강도  | 공장, 장사      |
| H | 23세 | 2014년 | 3년      | 양강도  | 노동, 농사, 주부  |
| I | 26살 | 2012년 | 1년 7개월  | 양강도  | 주부          |
| J | 51세 | 2007년 | 5년      | 함경북도 | 주부          |
| K | 42세 | 1999년 | 12년     | 함경북도 | 농사, 주부      |
| L | 38세 | 2002년 | 5년      | 함경북도 | 농사, 주부      |
| M | 49세 | 1998년 | 19년     | 함경북도 | 주부          |
| N | 37세 | 2005년 | 10년     | 함경북도 | 농사, 주부      |
| O | 53세 | 1998년 | 18년     | 평양   | 농사, 장사, 주부  |
| P | 45세 | 2005년 | 11년     | 강원도  | 주부          |
| Q | 26세 | 2013년 | 5년      | 양강도  | 농사, 노동, 주부  |
| R | 54세 | 2002년 | 14년     | 함경남도 | 농사, 주부      |
| S | 57세 | 1999년 | 8년      | 양강도  | 주부          |
| T | 60세 | 1999년 | 8년      | 황해남도 | 농사, 노동, 주부, |
| U | 51세 | 2008년 | 3년      | 양강도  | 주부          |
| V | 50세 | 1998년 | 8년      | 평양   | 농사, 주부      |
| W | 43세 | 2006년 | 3년      | 양강도  | 주부          |
| X | 47세 | 2003년 | 3년      | 양강도  | 농사, 주부      |

24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4명, 30대 6명, 40대 7명, 50대 6명, 60대 1명으로 구성하여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별 인신매매 범죄 노출실태의 차이 및 강제혼 등 인신매매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탈북연도의 경우, 고난의 행군시기로 볼 수 있는 90년대 중후반 6명, 2000년대 중후반 12명, 최근 5년 내외(2013년~2017년) 6명으로 정하여 탈북시기별 탈북동기 및 탈북 과정에서의 브로커를 통한 인신매매 범죄 피해 구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 유형 중 강제결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에 심층면접은 강제결혼에 집중

하여 면접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2018년 8월 6일에서 8월 20일 사이 실시되었고, 1인당 최대 6시간, 최소 2시간 내외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질문은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자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특히, 질문에 대한 면접자의 응답 특성에 따라 질문을 변형시키거나 보다 심층적인 질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경험에 대한 면접내용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의미를 구성해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 1. 북한에서의 탈출동기: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의 몸부림 이동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여성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최근 이러한 비율은 더욱 높아져 2018년 6월 현재 88%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월등히 높다. 이는 꾸준히 북한에서 탈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북한사회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에 따라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식량 문제 등 가족의 생활영역의 문제는 장마당 등에 나가 온전히 여성이 해야 할 몫이 되었다. 그런데 장마당에는 일명 중국을 오가는 밀수꾼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이들을 통해 자세한 탈북경로 및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 노출된다는 점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직장근무)을 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짐에 따라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 정부의 감시를 피해 남몰래 북한을 탈출하는데 유리하단

\* 통일부 통계자료, 2018. 6,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최종 검색일: 2018년 9월 15일)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보여진다.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 때 밀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국경지대다보니까 밀수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진짜 먹고살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한 밀수업자가 저한테 와서 중국 갈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중국에서 한 달만 일하면 중국 돈으로 삼천원을 받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보내줄 수 있는데 가겠냐고... 국경지대에 살다보니까 탈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들긴 했는데 한 번도 생각은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 얘길 들으니깐 흔들리더라고요.”

“남편이 군사복무를 제대하고 광산에서 일을 하고 나는 주부로 일을 했지요. 그 때 94년도부터 식량이 미공급됐는데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진짜 너저분했어요... 내 자식들도 굶어 죽으려 하는데... 안되겠다 싶더라고... 딱 3개월만 중국 넘어가서 돈벌어 오자 싶었지.. 남편은 어쨌든 계속 일을 나가야 하고 계속 감시를 받으니까 그나마 내가 갔다 와야겠다 싶은거야... 그래서 브로커 찾은 거죠.”

기본적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결심은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즉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특히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로 경제난과 식량난이 생존권을 위협할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이 가족일원 중 대표로서 중국으로 넘어가 돈을 벌어 북한으로 보내줌으로써 집안경제사정에 도움을 주고자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못살겠더라고요. 올해만 지나면 되려나 싶은데도 계속 배급을 주질 않으니깐.. 95년도 후부터는 죽는 사람이 그냥 너저분했어요.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이... 애랑 나랑 굶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애를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깐 무작정 떠나 온 거예요. 돈이라도 보내서 애는 살려야하니깐...”

“집이 매대(슈퍼)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옆에 신병대대가 있었는데 거기 국경수비대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니깐.. 계속 매대 물건이 털리니까 가정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진짜 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지막에는 빗까지

지게 됐거든요. 너무 털리다 못해 이렇게... 본전은 세워야지 하고 또 다시 가져오면 또 잊어 먹고 하다 보니깐 집안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던 끝에 그냥, 중국이나 가야겠다... 중국 가서 돈 벌어서 엄마랑 아빠한테 보내줘야겠다..."

"우리가 막 아등바등 북한에서 살겠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변을 이렇게 보면 90년대 막 아사 시작되다 보니깐 탈북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먼저 간 사람이 있는 집은 돈을 받아서 살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그 때 내 친구가 저기 중국에 가면 어찌고 저찌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뭐 식당일을 하면 한 달에 800원을 준다나 900원을 준다나... 그 돈이면 북한에서는 몇 달은 살거든요."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 동경하고, 민주주의 체계를 소망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도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철없이 살긴 했는데.. 배운 대로 우리가 가장 살지 좋구나.. 했는데 언니가 한국에 먼저 왔어요. 그래서 언니네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니까 저희 다섯식구가 편하게 먹고 살았거든요. 언니가 북한 돈으로 백만원 정도를 보내줬어요. 이 돈이면 육개월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생각하는 게, 아 한국가면 자본주의나라여서 진짜로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너도 한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탈북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긴 했어요.. 올인 이런 거 봤는데.. 와 진짜 저 세상은 저런가?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랑은 수준이 다른 것 같으니깐..."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에는 남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바로 '막다른 골목에서의 치열한 선택'이다. 북한과 같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성향이 짙은 사회에서 불완전한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향땅을 버리는 것이다. 이혼, 사별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한 순간에 고아가 되버리는 경우 북한에서 여성이 홀로 의식주를 해결해나가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할 만한 것이라곤 장마당에 나가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지 만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흐름 상 결코 쉽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북한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줄 곳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순간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단 둘이 살았는데 아빠가 바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해서 그 집에도 딸을 데려오고 하니깐..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냥 그 집에 있기가 싫었어요. 엄마랑 살던 곳이니깐... 나한테 엄마는 큰 존재였거든요. 그 때 내가 이 집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었는데 그땐 제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을 못해봤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야 결혼해요... 그냥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고, 북한에서의 삶도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고아예요. 엄마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모네 집에 같이 살았는데 맨날 눈치가 보였어요. 맨날 눈치보며 시키는 일하고... 진짜 머슴처럼 일했어요. 비오면 비오는 대로 일해야 하고 더운데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눈치밥은 또 먹고.. 목구멍에 넘여가는 것도 눈치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친언니도 같이 이모집에서 살았는데 친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언니 결혼식 보는데 딱 가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도저히 언니도 없는 이모집에서 살 때는 아니다.. 그래도 중국가서 일해서 조그마한 허름한 집을 가져야겠다.. 나는 이모집 말고는 갈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이모집 아니면 탈북이었지. 그런데 이모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딱 남편하고 이혼신청을 하고 내 고향 청진으로 돌아와서 바다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고민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아빠가 다 돌아가셔서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조국을 배반해야하나... 근데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모의 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친척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니깐... 여기서 굶어 죽느냐 가다가 잡혀서 죽느냐.. 결국 죽는건데 한번 가보자.. 하고 탈북결심이...”

“남편이 제가 37세 되는 해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 놓으니깐 사는 것도 막막하고, 제가 장사를 돌다가 집에 왔는데 그냥 여기서 나 혼자 힘들게 사는 것보다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는 중국에 가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너무 때리니깐.. 못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놓고 도망나왔어요. 근데 친정엄마도 언니 집에 얹혀사니깐 나는 갈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언니도 힘들게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집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터전으로 가려고 선(브로커선)을 알아봤죠...”

물론, 탈북 동기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있지만, 모든 면접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탈북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별적 이유는 상이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사회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힘들었으며, 다양한 제약으로 안정적이고 만족할만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북한에서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위치, 사회적 관계망 등을 생애사적 맥락으로 파악하고 북한에서의 삶과 북한 밖에서의 삶을 비교하여 자신의 생존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자신의 고향 땅을 버리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기 위한 합리적이자 처절한 몸부림 이동이다.

## 2.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불법체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단 탈북을 결심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연결망을 통해 탈북 경로를 비밀스럽게 찾기 시작한다. 이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브로커를 소개받게 된다. 물론 90년대 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비가 삼엄하지 않아 소위 ‘깡도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북한 국경수비대의 경비가 심해지면서 브로커의 도움 없이 월경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진짜 바로 내 앞에서 깡도강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해가 떠있는 데도 하는 경우 봤다니깐요. 근데 제가 2008년에 건넜는데 제가 건널 때만해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대놓고 총을 쏘니깐... 그래서 바로 우리 동네에 점쟁이가 있어서 점쟁이한테 가서 어디로 가면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안되겠다.. 결심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친한 친구가 너 이렇게 살 바에야 중국에 가라~ 어떻게 이렇게 살겠니 응? 그러니깐 차라리 중국에 가서.. 그러기에 제가 아이는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니가 가서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좋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나한테 니가 선이 있으면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선이 좀 있으니깐 대주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그 옆 동네 브로커한테 갔죠.”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중국에 가야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이 그런 일을 하셔서

요. 그래서 엄마친구한테 가서 중국에 가겠다고...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아침인가? 엄마 친구가 우리 동네 살았는데 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국경지대에 사니깐 장마당에 가면 물건너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밀수...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봐서 장마당에 가서 밀수하는 사람을 만나서 선을 받았어요.”

“저희 사촌삼촌 집에 사는 사람이 밀수를 했어요. 그걸 알아서 제가 찾아갔어요. 중국에 가고싶다.. 보내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그런데 이 때,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해당 브로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신매매에 노출되게 된다. 물론,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한 탈북브로커를 통해 월경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배고파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일푼으로 월경을 시도한다. 따라서 브로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이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는 브로커가 자신을 중국의 어떠한 곳에 팔고 받은 비용을 월경도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돌아와 브로커에게 월경 도움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택의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똑같다.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인신매매 특히 강제결혼하여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삶이다.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소문이 있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면 조선여자들을 브로커들이 팔아넘긴다고...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깐 갔죠. 두만강을 건넜는데 딱 택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신매매범들이.. 같이 그 사람들 집에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강제로 결혼했어요. 한족이랑.”

“몰랐죠. 저는 3개월만 중국에서 일하다가 북한으로 다시 가려고 했으니깐.. 나를 도와주는 비용은 북한에 와서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아주머니랑(브로커). 근데 두만강을 건너서 바위 뒤에 숨어있었더니 중국쪽 브로커가 우리를 찾더라고. 왔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이젠 다 됐구나하고 차에 타라고 해서 차를 탔는데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야.. 그래서 애네가 왜그러지? 먹을 것도 줘... 야.. 중국 사람들은 다 친절한가?

했어요. 근데 친절한게 아니라 나를 팔아먹으려고 웃도 갈아입히고 그랬던거였어요. 한참을 차타고 가니깐 완전 주변이 산밖에 없는 시골에 사는 남자네 집이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깐 내가 살아야할 곳이라고...”

면접자 24명 중 10명은 중국으로 가면 인신매매를 통해 결혼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노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강제결혼이라는 범죄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탈북을 결심한 것일까? 북한 남편이 때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라도 중국으로 넘어가서 돈을 보내 줘야할 것 같아서, 중국에 잠깐 있다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그 이유는 매우 다양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생애사적, 맥락적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한 것임에는 공통된 것이다.

“아버지가 사망되고 없어서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저랑 세 명이 살았는데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저를 팔아먹을 브로커가 제가 중국으로 가서 결혼하면 중국 돈 천 원을 우리 집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면서 갔어요. 중국에. 그리고 그 중국 돈을 천 원 받으려면, 저희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말하고 탈북했어요. 중국남편이 저를 산 값에서 천 원은 북한 우리 집에 보냈어요.”

“그 때 당시에 브로커는 우리한테 돈을 요구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돈을 안줘도 되냐고 물었더니 우리를 중국에 데려가서 중국 집에다 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그 브로커는 진짜 솔직했던 거야.. 그 아저씨가... 근데 나는 북한에서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결혼도 힘들고 그러니깐 그냥 갔죠... 중국에...”

“이모가 밀수를 했어요. 이모가 말을 해줬거든요. 중국으로 사람 판다고. 가면 결혼시킨다고. 이모도 자기도 사람을 넘기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조카래 가지고 잘 해주자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 이모들이 완전 좀... 완전 나쁜 여자들이예요. 저는 완전 증오했고 그런 인간들인데, 내가 가야 되니깐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인 거예요. 이모한테 나 팔아달라고 했어요. 아빠랑 새어머니랑은 도저히 못살 것 같아서.”

그런데 10명 중 5명은 월경해서 중국으로 가면 결혼을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팔려간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즉 5명은 인신매매가 아닌 중국에서 결혼을 하려는 목적으로 월경한 경우인 것이다.

“그 때는 브로커가 저를 판다고 안했어요. 그냥 사례금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국 남자한테 그러니깐 소개 해준 사람한테 사례금을 받는다고... 인신매매가 아니라 아는 사람 선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판거예요. 얘기하기로는 집이 엄청 잘살고 그냥 조선사람 얻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보겠다고 한거고. 근데 후에는 그게 아니였거든요. 병어리였고 집도 못살았어요. 중국여자랑은 결혼 못할 것 같으니 나를 산거예요.”

“어차피 북한에서는 남편이 죽고 없으니깐 중국에 가서 돈도 벌고 새 남편 얻으라고... 그래서 시집가겠다고 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브로커)한테 돈을 줬다고는 상상조차 안했죠. 나중에 알고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받은 돈 북한 내 딸한테 보내라고 따졌어요.”

“내가 시집가는 건 알았죠. 그러니깐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깐 중국으로 가라. 중국에 결혼할 남자가 조선족 사람인데 뭐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선여자랑 살면 한국 국적을 따는게 수월해서 조선여자를 얻으려 한다고.. 그래서 갔죠. 내가 팔린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앞에서 살펴본 10명의 면접자는 크게 보면 중국에서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지만,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스스로 남편을 선택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를 알려주며 소개해 주는 대로, 팔려가는 대로 가서 그 길로 낯선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야한다.

이 외에, 면접자 중 14명은 해당 브로커가 안내해주는 탈북경로가 강제결혼이라는 인신매매 범죄 노출 경로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북한에서 월경하여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즉 브로커 등에게 속아 비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노출된 것이다. 이 경우 브로커를 비롯해 특정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회유에 의해 월경을 한 경우도 있고, 중국에 친지를 찾기 위해 혹은 잠깐 밀수업을 하기 위해 월경했다

가 인신매매로써 강제결혼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월경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강제결혼 여부는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돌격대 아는 언니가 저한테 여기서 힘들게 살지말고 차라리 중국 가 돈 벌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가면 강냉이 바라는 일 하고 돈벌 수 있다고. 그런데 진짜 맨 처음에 중국 가서는 한 석달 강냉이 발랐어요. 그 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강냉이 바르면 돈을 준대요. 그래서 손이 붙어 틀만큼 열심히 발랐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여자(브로커)가 통화하는데 중국돈 만 원 나한테 줘야 하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다른 데로 팔겠다고 이러는데... 그 소리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속이 다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 몰랐냐고... 여기 오면 시집가야한다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울었어요. 내가 열아홉 살인데 어떻게 시집가냐고... 막 이래 울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공장을 한다고 가면 거기서 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두만강을 건너니깐 그쪽 사람들이 나와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끊임없이 달리다가 어디 버스를 탔다가 어쨌든 중간에 사람만 번갈아대면서 끝이 없이 산길만 달려서 5일을 갔던 것 같아요. 갔더니 천장이 빗길로 되어있어요. 갔더니 다른 조선여자들 4명이 있더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1명이 없어진거예요. 애가 어디갔지? 하니깐 조용히 있으래요. 그때 아 애네들이 한명씩 우리를 파는구나..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엄마가 중국 사람이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자기 가족들을 그리워하니깐 잠깐 중국에 가서 엄마 친척들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을 받아서 넘어갔는데 말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받아서 간 친척 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찾냐고. 조용히 하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막 펄쩍 뛰었죠. 내가.”

개별적으로 상이한 사정으로 의도치 않게 인신매매에 노출되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들이 뒤늦게 인신매매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어떠한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인신매매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들은 낯선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상상조차 못한다. 생소한 언어,

알 수 없는 지리,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은 이들로 하여금 인신매매 브로커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주요 요건들이다.

“내가 울면서 나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깐 중국 그 브로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을 내라고. 나갈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내가 돈이 어디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내가 돈이 어딴어... 그러니깐 개네들이 하라는 대로 시집을 갈 수 밖에 없어요.”

“도망가려고 내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일단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다 사방이 중국어인데 내가 중국어를 아냐고... 그러니깐 나는 도망도 못가는 거예요. 그냥 개네들이 하라는 데로 해야지.”

“브로커 집에 있는데 절대 도망을 못쳐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중국 공안한테 잡힐 수도 있는데.. 말이 안되니깐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나는 돈이 일 전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중국에 간 상태인데. 내가 어디 그러니깐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브로커 말을 들었거든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 특히 강제결혼에 노출되는 경우 탈북 여성들에게는 각각 자신들의 몸값이 있었다. 이 가격은 탈북 당시 나이와 외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탈북 여성을 소개하는 브로커와 이들을 사려는 중국 남편들 사이에 가격 흥정도 벌어진다. 물건 값을 흥정하듯 사람의 가격이 이들의 말 한마디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24명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금액은 1998년 5,000 위안이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2013년 1만 5,000위안이었다.

“나한테 브로커가 나이를 속이자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40살이었는데 33살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돈을 더 받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중국 남자 한 세 명이 나를 보고 가더라고. 아래 위로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뒤로 돌아봐라 앞으로 돌아봐라 하는데 내가 진짜 소 돼지 취급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구경하러 그 브로커 집으로 남자네 식구들이 다 왔어요. 열 댓명 된 것 같아요.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로 나를 다 쳐다보는데 내가 옷을 다 벗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기 나한테 통역을 해주는 조선족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를 사겠다고 얘기한 것을 통역해줬어요. 진짜 그때 기분은.. 아.. 내가 돼지, 개 취급을 받는구나.. 자살하고 싶었어요..”

“뭐 어떤 남자가 나를 가리키면서 얼마 뭐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브로커가 안돼~ 더 줘~ 뭐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때 내가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한번 중국으로 월경하여 인신매매에 노출되면 중국 공간에 체포되어 복송되는 것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없는 낯선 타지에서 북한으로 조용히 돌아가는데 도움을 청할 브로커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갓 탈북한 여성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비용을 치를 물질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복송되어 북한사회로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찍혀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탈북여성들은 복송되는 것도 무서워하고 꺼려한다. 결국 잘못된 길, 범죄에 노출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녀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며 월경에 성공했지만 그 삶을 의지대로 희망차게 꾸려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신매매 특히 강제결혼 하기 ‘죽을 만큼’ 싫음에도 이들은 다시 고향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용기 내 다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기에 낯선 중국 땅위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집가게 되는 것이다. 즉 불법체류자로서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남편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인신매매 브로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남편에게 팔려가는 것이다.

### 3. 인신매매 후의 탈북여성들의 삶: 불법체류자로서 나의 유일한 은신처

중국-북한의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숫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국입장에서는 불

법체류자이며, 북한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북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 송환되어야 하는 반역자이다. 따라서 탈북여성들은 가능한 한 중국 공안의 체포,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전역의 은밀한 장소에 은거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정확한 그 숫자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전역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여성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중국 내 체류하며 수많은 인권 침해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문제제기하며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인권침해 상황, 억울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커녕 중국 사회에서 본인의 존재를 숨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제 결혼한 이후, 남편 혹은 남편 가족들과 낮은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내고 있었다. 중국에서 ‘살아내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호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며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먼저, 탈북여성들의 결혼상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였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이다. 24명의 면접자 중 20명의 남편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평균적으로 연평균 4,000위안정도의 소득이었다고 답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하며 모두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부부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았기에 강제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결혼만족도를 표현한 응답자도 4명 존재했다. 이 중 한명은 강제결혼 했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14년을 산 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조선족 중국남편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

“제가 어쨌든 팔려 간 거니깐 그 집에서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한 석 달은 제가 죽도록 켜게 앓았어요. 진짜 죽물도 못마시고 진짜 켜게 앓은 거예요.. 하... 일단 여기서는 말이 안통하고 남편이랑도 말이 안통하니깐... 근데 남편이 너무 잘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병원가서 그 집이 진짜 돈이 없는 집인데 빚을 내면서 치료해 주고 막 아프면 제 옆에서 울고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러니 정은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는 싸우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제가 뭐 집안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쇼핑나가도 같이 나가고 그랬어요. 남편은 저랑 재혼한 건데 진짜 잘해주긴 했어요.”

“남편은 조선족이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집식구들이 잘해줬어요. 뭘 해도 제 의견도 물었고... 특히 시아버지가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북한 여자들이 매맞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왔거든요. 저한테 화풀려...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랑 시형들이 그 집에 가서 대신 때려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불쌍한 조선여자들 때리느냐고. 한 번 더 때리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진짜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고아니깐 뭐 생일하나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제 생일을 챙겨주더라고요. 고추밭이랑 그런 걸 했는데 일도 많이 안시켰어요. 집안일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남편이 보고 싶어서 지금 국제결혼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20명의 면접자들은 강제결혼 생활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 태도를 보였다. 먼저 이들은 대부분 강제 감시, 감금생활을 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현재 중국 농촌지역에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중국 남편과 남편 가족들은 경험적으로 탈북 여성들이 강제 결혼하여 잠깐 머물러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결혼생활 내내 이들을 감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개네들은 핸드폰을 안해줘요. 내가 도망 갈까봐. 애기 낳고 나니깐 핸드폰 사주더라고요. 나 혼자 쇼핑도 못하게 하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하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실까지 따라와요. 중국 시골은 밭에 나무를 놓고 화장실을 봐요. 그런 이렇게 앉으면 사람들, 이 다리가 있잖아요, 몸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대소변 보는게 떨어지는지 발 부분까지는 보이는거죠. 그럼 제가 화장실을 보고있으면 딱 앉아서 지키고 있는거지요. 잠깐 밖에 나가면 따라 나오고... 내가 도망갈까봐... 어쨌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게 너무 막 못살겠는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예요. 그 생활은.”

“동네 친구들도 못사귀게 하고... 특히 동네에 조선여자들이 몇 있었는데 개네들이랑 못놀게 하더라고. 내가 개네들 통해서 한국으로 가는 선 알아낼 꺼라고. 하루 종일 방안에만...”

“결혼해서 처음 한 한 달은 문고리를 밖에서 걸더라고. 방에만 있으라고... 내가 도망갈까봐.... 근데 점점 좀 서로 살면서 날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방문을 잠구진 않았는데 핸드폰도 안사주고... 내가 어딜 나가려고 하면 계속 묻고...”

또한, 결혼생활 내내 전반적으로 남편이 자신을 매매해온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언행을 보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하기도 했다.

“남편이 한쪽이었는데 개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내 돈을 내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몸종이다. 애넌 노골적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내가 널 사왔으니깐. 내가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이제 죽으라고 해도 너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때 그 절망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진짜 내가 천하의 백정이라면 니들이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서 각을 떠서 너를 우물에 버려도 된다. 말을 이러더라고요.”

“성관계를 원치 않는 밤에도 노골적으로 계속 요구했어요. 하기 싫다하면 때렸어요. 옆에 잡히는 뭐든. 너는 내가 샀는데 왜 니 의견을 말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혼생활을 하며 자신은 주체적인 여성이 아닌 씨받이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딱 잠자리 방을 깔아놔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칸막이? 천 같은 거로 칸막이가 쳐있었을 뿐... 그러면서 우리가 잠자리를 하나 안하나 계속 힐끔 힐끔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 후에는 방을 하나 뒀는데 계속 밤마다 힐끔 힐끔 보더라고요. 잠자리 하는지.. 그 집에서 한 석달 사니깐 계속 애기 애기를 했어요. 애기를 낳아야 한다고...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강요를 하니깐 너무 짜증났어요.”

“계속 성관계를 하려하는데 임신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몰래 가서 고리를 넣었어요. 피임하려고. 그런데 그걸 제 뒤를 밟아서 알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지로 고리를 뺐어요. 그리고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애를 임신했어요. 진짜... 임신하기 싫었는데...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고...”

“남편이랑은 진짜 못자겠더라고요. 그냥 바보였어요. 침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몸도 잘 못움직이고... 그래서 시집가서 한 석 달을 성관계를 피하고 혼자 쇼파에서 잤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깐 이런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랬더니 남편 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 저한테 남동생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남동생이랑 다시 결혼해서 애기 낳으라고...”

무엇보다도, 탈북 여성들이 강제결혼 후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언어소통의 문제였다. 결혼생활 초반, 이들은 전혀 중국어를 할 수 없고,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기에 자신들을 ‘병어리’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인격 모독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물론 강제결혼 대상자가 조선족인 경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탈북여성들은 조선족이 걸리면 행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형이랑 시어머니랑 저를 보면서 씨부렁 씨부렁 하는데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병어리지.. 못알아듣고 있으니깐 샷대질 하면서 웃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나는 데... 정말.. 그 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눈물이 나오.. 억울해서... 자기들은 조선말 할 수 있냐고...”

“말이라도 통해야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하지... 뭐 아무 것도 안통하니깐... 잠자리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TV보면서 중국어를 연습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년은 중국어가 안되니깐 지옥이더라고. 내가 사는게 아니라 남이 내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

“내가 말도 대화를 모르니깐... 막 내가 사람 흉내내고 이러면.. 남편이 무시하고...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흉내내면 무시하고 쓱 가고... 중국어가 안되니깐 더 답답하고... 그러니깐 너네 나 돈주고 샀으니깐 돼지처럼 대하는 거지 생각들었어요.”

극단적으로, 강제결혼생활을 하며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도 5명이나 있었다.

“남편이었던 그 사람 말 안들으면 때려요. 1년을 맞고 살았어요. 나한테 잘해주다가도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요. 몽둥이로도 때리고 가죽 혁띠로도 때리고... 중국 남편은 도깨비였어요.”

“남편은 자기가 기분이 짜증나거나 그러면 저를 때리고 죽이려고 칼까지 휘두르고 그랬어요. 한족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깐 제가 제 삶을 포기했어요. 그 때는 내 운명이 이제 이런걸, 이 집에서 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거의 3년을 살았는데 많이 맞았어요. 어떨 때는 싸움하고 잘 생각이 안나요. 왜 싸움했

는지도. 너무 맞아서. 제가 좀 매타박을 썬게 받았어요. 그냥 농촌이니깐 밭 일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생리 때문에 아프고 그러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한 번씩 때렸어요. 뭐 맞은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맞아가지고..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제가 막 머리도 너무 맞아서.. 이렇게.. 발로 막 밟아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잘 뛰질 못해요. 머리가 울려서... 주기적으로 맞아서 7일씩 드러누워 앓고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 배운 중국말이 중국어 욕이에요. 남편에 하도 저한테 욕을 해서...”

또한, 심각한 노동착취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부인으로써 혹은 한 명의 인격체로써 존중받기보다는 자신들은 일하는 노예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노동을 통해 얻은 임금 역시 남편 혹은 남편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새벽 4시반쯤 나가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또 집안일을 했어요. 3년동안 그렇게 생활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농사일이에요. 남편도 일을 했긴 했지만 저처럼 하진 않았어요. 조금 힘들면 그냥 동네에서 마작이나 하고... 근데 저는 매일 매일 그렇게 일했어요. 아파도 일했어요. 일 안하면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니깐...”

“닭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 사촌네 집에서 일을 했어요. 사촌 누이고 그러니깐 눈치를 주거든요. 그러면 닭공장 노동자들이 사는 기숙사가 있는데 저희 부부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새벽에도 자다가 닭한테 주사 놓으러 일어나고... 5년은 바보처럼 그렇게 일했어요. 병아리 깨면 주사 맞히고, 이만한 병아리부터 큰 닭까지 알을 낳는 닭까지.. 다 주사 맞히는.. 그리고 시누이집 일도 해줬어요. 닭공장 일 끝나면 시누이집 가서 빨래도 해주고... 계속 눈치를 주니깐...”

“남편은 일안해도 나는 일해야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도 했고 남편의 집에가서 밭일도 했어요. 내가 이 집에 머슴이네. 영화나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집 도우미. 그렇게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은 내몫이었으니깐. 그런데 내가 벌어들인 돈은 오로지 그 남자가 관리했어요. 노예였던 거죠.”

이처럼 이들이 강제 결혼생활을 하며 인권침해 상황에 무수히 빈번히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

이다.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지만, 신고하면 중국공안들은 자신을 때린 남편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 불법체류자인 본인을 잡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남편 혹은 시댁 가족들은 탈북 여성들이 본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불법체류자임을 책잡으며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너무 때리니깐 그만 때리라고... 나 도망가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중국공안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싶었죠.”

“개네들은 도깨비들이어서 내가 무슨 지들 입맛에 안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공안에 찌르겠다고 협박해요. 그럼 나는 그게 무서우니깐 또 고개를 숙이는 거지... 이게 일상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깐 나는 개네들이 하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강제 결혼생활을 하며 은밀히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을 불안감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 언제 갑자기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 복송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살면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매일 옷입고 잤어요. 언제 공안이 올지 모르니깐... 오면 바로 도망가야 하니깐 옷을 벗고 잘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도 누구 눈도 못마주치고 살았어요. 내가 떨려서 못그려줬더라고... 그리고 항상 중국집 방 창문 앞에 신발을 놓고 살았어요. 중국 공안이 오면 나는 창문으로 바로 도망가야 하니깐.. 항상 가슴 졸이며... 살았던 그 삶은 절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탈북여성들의 상황은 비록 강제결혼의 삶이 힘들고 버거워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숨겨줄 은신처가 필요하다. 이에 탈북 여성들은 강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가짐으로써 그곳을 본인의 은신처로 삼는다.

“내가 언제까지 이 남자랑 살지 모르지만... 계속 살았던 건 나는 중국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사니깐... 아, 나 잠깐 어딘지 조 口될 수 있겠다,

그래도 내가 당분간은 살 안식처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나는 그 사람과의 결혼생활이 무서웠어요. 매일 눈뜨면 일해야 하고... 몸도 성하지 않았던 그 할아버지(부부간 나이차이가 25세 차이) 끔찍한데 그 사람이랑 그래도 2년 좀 넘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오직 그사람은 안식처. 나 중국에서 말 배우고 좀 한국으로 오는 브로커를 만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는 안식처.”

나아가, 그녀들은 강제결혼 생활을 통해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희망찬 새로운 삶을 꾸려나간다. 중국에서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에 가면 국적을 취득하여堂堂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강제결혼 생활은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 제 6 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및 정책 제언

탈북자들의 인신매매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앞의 제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푸시 인자(push factor)들과 풀 인자(pull factor)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신매매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들에 기대고 또한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여성들의 인신매매범죄 피해 방지와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탈북여성들의 중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의 안정

합법적 이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Haynes, 2004: 257).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 온 탈북여성들에게 무엇보다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는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어느 사회건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중국으로 월경해서 브로커가 개입된 강제결혼을 통한 중국사회 정착은 이들에게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매매를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혼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신매매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일시적인 출구에 불과하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기능적 요인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으로 팔려가는 피해자들의 삶은 결국 피폐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곳을 탈출하기 위한 방도를 찾게 만들고 결국은 일시적인 정착지를 떠나 다시 망망대해의 객지에

떠도는 신세를 면하기가 힘들게 된다.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일시적 긴급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로는 EU에서와 같이 보다 장기적인 보호시설(asylum)을 확보해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잡기 전까지 그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국경을 넘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보호시설(asylum)은 반드시 중국에만 있을 필요도 없으며 제3국이든 어디든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법상 이들 북한이탈 여성들이 난민(refugee)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중국에서도 이들의 안정된 지위가 확보될 수 있다면 계속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시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삶의 터전과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을 재고하고 개인 망명 신청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보다 탄력적 정책결단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면 이 작은 물꼬가 탈북자 사회 전체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클 것이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이들에게 국제법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일연구원 2014: 226).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난민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인신매매범죄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2.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

1980년대 이 후 인신매매를 근절시키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결코 사회구조 및 문화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인신매매범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적발 노력이 필요하다. 캠페인 형식의 단속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단속의 눈을 피해 독버섯처럼 자라는 인신매매조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Zhao, 2003: 92-93).

여성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북한과 중국 모두에서 이들이 경제주체로서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난과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탈북여성들은 더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 북한 내에서 이러한 푸시 인자(push factor)들이 이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힘든 경제상황에서 장마당으로 나간 이들에게 다가오는 브로커들의 유혹은 떨쳐버리기 힘들 것이다. 중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신매매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떠밀어지고 있다. 결국 이들 여성들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신매매범죄에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인신매매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난 후에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입법을 통한 지원, 정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에 입국해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지금 남한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 역시 또 다른 인신매매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여기에 자녀들과 같이 입국했거나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올 경우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 3. 푸시 인자(push factor) 및 풀 인자(pull factor)의 통제

최근 들어 북한에서 외국으로 가는 일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통일연구원 2017 북한인권백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경비가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한동호 외, 2017).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월경을 시도하는 북한주민의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져 가족해체로 인해 먹고 살기가 힘든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북한 내에서 열리게 된다면 이들을 중국으로 밀어내는 풀 인자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변화현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관망해야 하는 요인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국에서 그 동안 1자녀 정책과 남아선호 문화이 맞물려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일부 계층의 남성들이 결혼 상대 여자들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이것 또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팔려 강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중국의 인구증가 정책 및 2자녀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구정책은 장기적으로 인신매매범죄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저소득 계층 등 특정계층 남성들에게 결혼 대상자들을 얻기란 앞으로 상당기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푸시인자와 풀인자들의 변화를 통한 인신매매범죄의 추이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4. 탈북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제공 및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

북한이탈 주민들이 중국으로 향한 국경을 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북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조차 힘들게 살아온 원인이 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이들의 고통과 부정적 삶의 경험들은 경제적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이들이 남한에 입국해서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새로운 사회구조와 문화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기초수급생활 지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을 통해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북한이탈 주민들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고 이들이 고용되어 일을 배우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체계적 지원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설문조사결과와 심층면접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와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예 공안에게 체포되고 탈출하거나 복송된 경험을 한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기회제공과 병행해서 매우 시급한 정책적 지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국내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외. (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강녕. (2006). 제2장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통일전략」, 6(1), 41-85.
- 김영수. (2003). 탈북자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황.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1-25.
- 성정현. (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117-131.
- 송영훈. (2016). 해외체류 탈북자와 북한인권 개념의 복합구조: 국민, 난민, 이주민,  
「다문화사회연구」, 9(2), 69-94.
- 염태완.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189-213.
- 이화진. (2011a). 탈북여성의 이성관계를 통해 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19(2), 367-404.
- 이화진. (2011b).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 북한, 중국, 한국에서  
의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3), 173-211.
- 정은미. (2005). 북한연구방법으로서 탈북자 조사의 활용과 연구동향. 「현대북한연구」,  
8(3), 139-176.
- 최현실. (2011).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21(1), 161-204.
- 최현실. (2013). 20~21세기 한반도에서 국가적 성폭력과 그 희생제의로써 여성의 몸:  
일본군위안부, 여성빨치산, 그리고 여성탈북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  
화」, (46), 277-311.
- 통일연구원 2014 북한인권자료집: 유엔 COI 보고서 국문본.

## 2. 외국문헌

- Davis, K. (2006). Brides, Bruises and the Border: The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SAIS Review*, 26(1), 131-141.
- Grasmick, H.G., C.R. Tittle, R.J. Bursik, Jr., and B.J.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ynes, D. F. 2004. Used, Abused, Arrested and Deported: Extending Immigration Benefits to Protect 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to Secure the Prosecution of Traffickers. *Human Rights Quarterly* 26:221-272.
- Hughes, D. M. 2005. How Can I be Sold Like This? The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Refugees. *National Review Online*.
- ICAT The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Issue Brief, Issue 01, 10/2016]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Walk Free Foundation. 2017.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Kim, E., Yun, M., Park, M. & Williams, H. 2009. Cross border North Korean women trafficking and victim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 Ethnographic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37, 154-169.
- Kim, H. 2017. North Korean Defectors Choosing Third Countries Over South Korea. *Korea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7/11/103\\_238860.html](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7/11/103_238860.html)
- Ko, S. H., Chung, K., & Oh, Y. 2004.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Life and Well-Being After Defection. *Asian Perspective*, 28(2), 65-99.
- Kim, J. 2011. Trafficked: Domestic Violence, Exploitation in Marriage, and the Foreign- Bride Industry.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1, 1-47.
- Kook, K. 2018. "I Want to Be Trafficked so I Can Migrate!": Cross-Border Movement of North Koreans into China through Brokerage and

- Smuggling Network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6, 114-134. Doi: 10.1177/0002716217748591.
- Kim, S. K. 2014. "I am well-cooked food": survival strategies of North Korean female border-crossers and possibilities for employment. *Inter-Asia Cultural studies*, 15(4), 553-571.
- Lindquist, J., Xiang, B., & Yeoh, B. 2012. Opening the Black Box of Migration: Brokers, the Organization of Transnational Mobility and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in Asia. *Pacific Affairs*, 85(1), 7-19.
- Lutya, T. M., & Lanier, M. (2012).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to Describe Human Trafficking of Young Women and Girls for Involuntary Prostitution. Public Health Jay Maddock, IntechOpen, 555-570. DOI: 10.5772/37064.
- Muico, Norma Kang 2005.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 Shen, Z. & Xia, Y. 2014.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and Chinese Policy Toward Korean Cross-Border Migration, 1950-1962.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6(4), 133-158.
- South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Chapter 5: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ite Paper on Korean Unification.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 Tucker, C. & Hook, J. 2013. Surplus Chinese Men: 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Sex Ratio at Marriageable Ages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9(2), 209-229.
- United Nations. 2000.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Vienna, Austri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951.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Geneva, Switzerland: United Nations.
- Zhao, G. M. 2003. Trafficking of Women for Marriage in China: Policy and Practice. *Criminal Justice* 3(1): 83-102.



---

# Abstract

---

## **An Exploratory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en route to South Korea**

Yeon, Seong-jin\*

### Introduction

Due to human trafficking clandestine nature, it is difficult to accumulate accurate statistics of the number of victims and perpetrator.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stated that modern-day slavery victims totaled to approximately 40 million individuals worldwide in 2016. Human trafficking is not equally distributed across the globe. Human trafficking is predominately in Asia; approximately three-fourths of the world's victims in forced labor are in Asia (Shelly, 2010).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estimated tha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3.8 million adults and 1 million children who were victims of commercial sex exploitation were exploited in Asia and in the Pacific Region. While sexual exploitation is the most notorious form of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occurs in many forms, such as forced labor, organ removal, domestic servitude, begging, forced marriages and forced combat (Kim, 2011). In 2000, the United Nations defined human trafficking du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s:

---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arah Gross and Minjung Kang, KIC researchers, contributed to this project in various ways. Sarah Gross did an extensive library research and helped in formulating survey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questions as well as compiling literature reviews. Minjung helped arranging and completing both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The author is thankful for their efforts and contributions to this project.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p.1)

It is the fastest growing criminal enterprise and it is estimated to be a 32 billion dollar industry (Kim, 2011). A growing trafficking phenomenon and one that is often overlooked is bride trafficking (Kim, 2011).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estimated that 15 million people were victims of forced marriages.

## Purpose

Extensive research on the repercuss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fficulties assimilating into the South Korean culture;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human trafficking schemes, locations of entrapment, and the business enterprise of traffick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explored how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entered and exited human trafficking, the actors involved in the trafficking scheme, and find common locations and methods of entrapment into human trafficking. This exploratory study will also be the one of the first to examine the criminal business enterprises involved in human trafficking and their profits.

##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

### Push Factors

The exodus of North Korean migrants to China began with the economic crisis and famine in the mid-1990s which still remains today (Muico, 2005). Interestingly, prior to the economic crises, the migration flow was reversed. Shen & Xia (2014) claimed that the Korean Chinese migrated to North Korea to escape poverty and discrimination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and drought in the 1990's. Since the fal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defectors were primarily motivated to leave due to their hunger and economic instability (Ko, Chung & Oh, 2004; Muico, 2005). Since they are primarily motivated by hunger and economic reason, they are not viewed as refugees (Muico, 2005).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refugees are defined as: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p. 14)

Hence, they are viewed as economic migrants and not granted political asylum.

North Korea's patriarchal society is also one of the push factors for North Korean women. Many North Korean women could only find menial and low-income jobs. If they do have steady employment but become married, they are expected to leave the workforce. Once they left the workforce, they were stripped away from their state rations and forced to be fully dependent upon

their husband's income. North Korean women were further burdened with the expectation of caring for their aging parents (Davis, 2006). Hence the reason why many North Korean women fled to China for work or sought a marriage to a Chinese man. In fact, there is a disproportionate amou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Kim (2011)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two-thirds of defectors are female.

North Korea is an extremely oppressive country and violates many human rights. Ko, Chung & Oh (2004) claimed some of the defectors who remained in North Korea but had family who had already defected were afraid or faced the punitive punishmen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Kim, 2011). North Koreans with family members that defected were negatively stigmatized as traitors of the regime. The entire family became blacklisted and sent to labor camps as punishment for their family members' defection. If they were released from labor camps, they would never be able to obtain substantial employment. Much is at stake when female North Koreans illegally cross the Korean-Chinese border. Not only do the women fear repatriation for themselves, but also fear the consequences that her family will face if she is repatriated (Davis, 2006).

### Pull Factors

China's growing economy and its gender imbalance are pull factors for North Korean women (Davis, 2006).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trimental Chinese government's one-child policy in 1979 and the cultural preference for males, the Chinese population has suffered a severe sex imbalance (Ko, Chung & Oh, 2004; Muico, 2005; Tucker & Hook, 2013) Tucker & Hook (2013) projected that in 2030, the Chinese single men population would peak at an estimated 30 million. Even with sizeable changes, the sex imbalance will not be rectified any time in the near future. The migration of Chinese women from rural to urban areas in China or to other countries further exacerbates the shortage of women,

especially in China's agricultural provinces (Davis, 2006; Kim et al., 2009; Ko, Chung & Oh, 2004; Muico, 2005). The demand for women in China, coupled with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has endangered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by increasing their vulnerability to trafficking (Davis, 2006; Kim et al., 2009; Muico, 2005). Kook's (2018) study corroborates with this issue—approximately 70 perc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participants in their study were female and all of the femal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sold as brides to Chinese men. North Korean trafficked brides sell at a much lower price than Chinese brides, thus many indigent Chinese men sought for North Korean brides as a cost-effective choice (Kim, Yun, Park & Williams, 2009).

The shortage of Chinese women affects the commercial sex industry in China as well. Tucker & Hook (2013) claimed the huge population of single men is turning to commercial sex from the lack of wome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women in the sex industry since the local Chinese women cannot meet the demand. Chinese organized crime groups typically facilitate this demand and sexually exploit North Korean defectors and brothers, Karaoke bars and other exotic bars (Kim et. al., 2009). Since North Korean women cannot obtain legal status and fear of repatriation, they comply with the traffickers' demands (Kim et al., 2009). Thus, it is unsurprising that approximately 80 percent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re entrapped in a form of trafficking- commercial sex, forced labor, and forced marriages (Kim, 2011).

## Pathways out of North Korea

### *Independent*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aware that the pathway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 is extremely dangerous. In Ko, Chung & Oh's study (2004), prior to their participants' defection, they meticulously plan their defection. They cautiously calculated the best pathway to cross the border and financially and

psychologically prepared for their obscure and potentially dangerous fate in China, because they were aware of the high risk of becoming a trafficked victim. The study revealed 80 percent of the study's participants have heard or knew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sold to the local Chinese. Despite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gnizant of their vulnerability to human trafficking, the majority of defectors still used a third party to facilitate their defection from North Korea (Ko, Chung & Oh, 2004; Kook, 2018). In a recent study, Kook's (2018) empirical study revealed the three different methods tha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used to cross the border.

- 1)Independently
- 2)Through a smuggler or broker
- 3)The third party introduced defectors to a broker.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participants crossed the border independently by either studying the land surrounding the Tumen River or bribing border guards (Kook, 2018).

After crossing the border and arriving in China, North Korean defectors were prone to trafficking victimization (Davis, 2006; Hughes, 2005; Kim, 2011; Muico, 2005). Traffickers traveled along the border and searched for North Korean women or hired runners to search the border and notify the trafficker if there was a North Korean defector nearby (Kim, 2011). Traffickers usually waited for defectors at River crossings, railroad stations, markets or other places where there is a high population of illegal immigrants (Davis, 2006; Muico, 2005). Ko, Chung & Oh's (2004) study found tha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began their new lives in China as beggars and heavily dependent on the local Korean Chinese in the beginning. However, they claimed that the aid they received from the Korean Chinese was short-term and many defectors sought employment opportunities upon arrival. Most North Korean defectors found employment opportunities in agriculture, however, the pay was significantly lower and often

resulted in exploitation. Chinese farm owners took advant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illegal status. Participants of the study shared that they were not given the same pension as the other Chinese laborers and sometimes received no pension at all. When the participants asked for their pension, Chinese farm owners threatened to report them to authorities. Thus, they eventually became victims of labor trafficking.

North Korean defectors are usually approached by a trafficker as soon as they cross the Chinese-Korean border (Kim, 2011). Once the trafficker encounters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y begin to utilize their deceptive tactic of acting sympathetic and offering the North Korean help to build trust and lure them (Kim, 2011). North Korean defectors are offered false employment opportunities or marriages. Human traffickers and matchmakers persuade impoverished North Korean women that they will be supported by Chinese men (Davis, 2006 & Ko, Chung & Oh, 2004). Due to their desperation, many of the women take the trafficker's bait. Kook's (2018) study revealed that approximately 70 perc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female and all of the femal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sold as brides to Chinese men.

### Using a broker or third party

#### *Profile of Brokers and Traffickers*

Throughout several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 the term broker could be seen as an interchangeable term for a trafficker. Kook (2018) discovered that North Korean women referred to their traffickers to other titles, such as broker, smuggler, and matchmaker for arranged marriages. Brokers were labeled as good or bad- the helpful ones were called Seon and the malicious ones, traffickers, were called inshinmaemaebum. A trafficker could be a type of broker, but a broker cannot be solely labeled as a trafficker. Lindquist, Xiang & Yeoh's (2012)

study defined the term broker as an individual who convened two parties together. Brokers could operate in formal or informal networks, alone or in groups and motivated by altruistic or revenue generating purposes. Traffickers only operate for profit and use force fraud and coercion to entrap their victim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t all brokers and smugglers are traffickers.

The profile of a broker or trafficker was commonly described as an independently operated Korean-Chinese male, an individual who is ethnically Korean who lived in China because they can speak both languages (Davis, 2006; Kim, 2011; Kim et al., 2009; Kook, 2018). However, it is not uncommon, for smugglers and trafficker to work together to benefit from selling North Korean defectors. Kim, Yun, Park & Williams's (2009) study revealed that three nationalities- North Korean, Korean Chinese and Chinese- joined forces to mutually benefit from the trafficking trade. The Korean Chinese served as a bridge for the North Koreans and the Hans, those who were ethnically Chinese. The Korean Chinese utilized their familiarity with th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to entrap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s are active in the recruiting process (Kim et al., 2009). In many cases, a North Korean is sold by someone she knew. It is not uncommon for defectors to be sold by a family member, acquaintance or a friend (Davis, 2006; Kim, 2011; Kim, 2014; Muico, 2005). Kim et al. (2009) and Kim (2014) claimed brokers or recruiters used their own personal network to arrange the route for the victims. Former defectors may become involved in brokerage too. Kook's (2018) claimed an estimated 67 percent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provided brokerage or smuggling services to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 *Trafficking Methods*

Kim, Yun, Park & Williams's (2009) study discussed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trafficking trade of North Korean defectors. Traffickers have evolved from

opportunistic individual offenders into a more organized criminal network. Prior to 1996, traffickers were employed in other positions, such as farmers or other vocations, but realized the high profits they could reap with trafficking. Hence, many of the Korean Chinese farmers would wait for the Korean defectors near the borderline. They would either kidnap them or offer them marriage. If a woman refused a trafficker's marriage proposal, he would then threaten her by stating he would sell her or report her to the Chinese police. Today, traffickers operate individually or in organized criminal groups. An individual trafficker may collaborate with a few more individuals and form a joint business venture or traffickers may collaborate with a criminal organization (Davis, 2006; Kim et al., 2009). Yet, only a small portion of established organized criminal syndicates was active in the trafficking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since the drug industry was still more lucrative in China, but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criminal organization partaking in the trafficking industry (Kim et al., 2009).

Traffickers involved in the trafficking trade of North Korea defectors operate transnationally and systematically. Kim et al. (2009) case study unveiled the procedural network of traffickers and the cross-border trafficking route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trafficking methodology can be divided into stages into four stages.

- 1) Stage 1: Recruiters in North Korea recruit potential victims and cross the border.
- 2) Stage 2: After crossing the border, recruiters sell North Korean defectors to intermediate traffickers.
- 3) Stage 3: Intermediate traffickers sell North Korean defectors to a final buyer.
- 4) Stage 4: North Korean trafficked victims are often recycled.

### ***Recruitment***

In the first stage, North Koreans played the role of recruiters and the Korean

Chinese play the role as traffickers (Kim et. al. 2009). Recruiters or smugglers utilize their own social network to find victims (Kim et. al. 2009; Kook, 2018) or search the black markets, Jangmadang. The recruiters at the black market tend to be female middle-aged peddlers (Kim et. al. 2009). When recruiters recognized a potential victim, they employed deceptive tactics on North Korean females by building trust and enticing North Korean females with false promises and opportunities (Davis, 2006; Kim, 2011; Kim et. al. 2009; Muico, 2005). North Korean females were lured with false promise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such as a factory worker, maid or marriages between Chinese men (Davis, 2006; Muico, 2005). Human traffickers and matchmakers persuaded impoverished North Korean women by telling them that they will be supported by Chinese men (Davis, 2006 & Ko, Chung & Oh, 2004). Trust was additionally earned by offering the women food and shelter (Muico, 2005). After the recruiter successfully gained the victim's trust (Davis, 2006; Kim et. al. 2009), the recruiter leads the defectors across the Korean-Chinese border (Kim et. al. 2009).

#### *Recruiters sell to intermediate traffickers*

However, instead of recruiters fulfilling their false promises, female defectors were sold instead (Muico, 2005). Once the recruiter crossed the border with the defector, they sold the defectors at a fixed price to the intermediate trafficker, usually a Korean Chinese, at a planned meeting location across the river (Kim et. al. 2009). Traffickers determined the price of North Korean victims by their appearance and age (Hughes, 2005; Kim et al., 2009). In an earlier study, Muico (2005) claimed women were sold from 400- 10,000 yuan (\$50 to \$1,250). However, in a later study by Kim et al. (2009), women were sold at fixed prices: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24 were sold at 7,000 yuan (\$1,028), women between the ages of 25 and 29 were sold at 5,000 yuan (\$734), and women in their mid-30s were sold at 3,000 yuan (\$441). Once they were sold, they were dispersed

throughout China. The Korean Chinese traffickers may work independently or affiliated with an organized Chinese crime syndicate. Intermediate traffickers wait until they have a small collection of women (3-4) before selling them to a final buyer. Women were housed in a trafficker's safe house until they were sold (Kim et al. 2009). During the North Korean women's stay with their trafficker, they may experience physical assault, rape, psychological abuse (Kim et al. 2009) or starvation (Davis, 2006) from their trafficker. In Kim et al. (2009) study, a few survivors reported experiencing successive rapes by each intermediate brokers. Traffickers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sexually abuse their victims to maintain control over them (Davis, 2006; Kim et al., 2009).

*Intermediate traffickers sell North Korean defectors to a final buyer*

Kim, Yun, Park & Williams's (2009) claimed that the Han Chinese were usually the final distributors of North Korean brides. The division of labor was divided into different regions: North Korea and China. Traffickers in North Korea would collect and send the North Korean women across the border and the Korean traffickers in China would sell them to the Han Chinese organized crime groups. Communities in the area were aware that the traffickers were involved in the trafficking industry, even Chinese officials. The Chinese border guards and security officers were bribed by the Han Chinese so the Hans was able to administer the final distribution.

Women were sold to two types of buyers: bride seekers or owners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e.g., karaoke bars, brothels and for cyber-sex (Davis, 2006; Kim et al., 2009; Ko, Chung & Oh, 2004). Chinese criminal syndicates were usually involved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those involved either managed or protected the commercial sex businesses in China. These criminal organizations maintained their connections with corrupt Chinese officials and police to keep their business afloat. Women sold as prostitutes for karaoke bars

or entertainment bars usually sent to metropolitan cities in China (Kim et al., 2009). Yet, out of the two types of buyers, there was more business for forced marriages (Kook, 2018; Muico, 2005). Most bride-seekers originated from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and the grooms are usually older, poor, disabled, and tend to be abusive (Davis, 2006; Kim, et al., 2009; Kook, 2018; Muico, 2005). Hughes (2005) claimed most of the forced brides are sold mostly throughout the Jilin Province, Northeast China.

North Korean defectors married to Chinese men experienced being objectified and mistreated (Kim, 2011; Kook, 2018; Ko, Chung & Oh, 2004; Muico, 2005). Since a Chinese man paid a relatively high amount of money for his North Korean bride, the Chinese man and his family justified the mistreatment of the defector through the payment and treated her as a servant and expected her to work long hours and perform laborious tasks (Ko, Chung & Oh, 2004). The Chinese husbands and his family members controlled defectors through force and coercion. Many forced North Korean brides experienced psychological, physical, verbal and sexual abuse from their Chinese husbands (Kim, 2011; Ko, Chung & Oh, 2004; Muico, 2005). Kim (2011) claimed if North Korean forced brides did not comply with their demands, they were threatened with reporting her to the Chinese authorities for deportation. As of today,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marriage between Chinese men and illegal female North Korean migrants. Even if the husband sought his wife to have permanent residence, it is rather expensive for a rural farmer; it was estimated to be around 3,000 to 10,000 yuan (Kim, 2014). Therefore, female defectors were unable to obtain legal employment due to their inability of acquiring a residence permit or an identification card. Thus, many were forced to remain at home and perform household tasks or illegally work outside of the house. Some subjugating husbands forced them into prostitution to earn money for his family or pay off debt. However, many of them do not get to keep their earned wages (Kim, 2011). As

a result of this abhorrent treatment, many female North Koreans runaway and developed a reputation for being runaway brides (Kook, 2018). Therefore, Chinese men fear that their wives will desert them and may chain or lock away his enslaved wife when he is out of the house (Kim, 2011; Muico, 2005).

### *Victims are recycled*

Lastly, it is not uncommon for women to be re-trafficked again (Davis, 2006; Kim, et al., 2009). Kim et al. (2009) claimed Korean Chinese gangs search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hiding for profit. They kidnap them, beat them and sell them to owners in the sex industry. North Korean forced brides can be resold by their Chinese husbands (Davis, 2006; Kim, 2011; Kim, et al., 2009). Kim (2011) claimed some of the enslaving Chinese husbands forced their brides into prostitution to earn money for his family or pay off the bride's purchased fee. There even has been cases where the Chinese police and border guards sell women to traffickers after “arresting” them for illegal migration. (Davis, 2006; Hughes, 2005). Therefore, it is unsurprising that a vast amount of studies claim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d psychological trauma from their trafficked experiences (Kim, 2011).

### Not Everyone Is Trafficked

In an earlier study, Muico (2005) claimed while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men were trafficked for forced marriages, there was a large percentage of women that sought a third party to facilitate a marriage between themselves and a Chinese man. Consensual marriage was a growing occurrence betwee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Chinese men. Marrying a Chinese man seemed appealing to North Korean women because it was an assured way of receiving shelter, food, water and held the possibility of supporting their family back in North Korea (Muico, 2005; Kim, 2014). The belief that marriage was an assured

way of survival and a successful method of migration continued. In a later ethnographic study by Kim (2014), it revealed North Korean female border-crossers developed their own survival strategies, often using marriage-migration, to settle in China or used it as a waiting period until they acquired the skill set and funds to move on to a better opportunit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two main routes of marriage brokerage in China:

- 1) Female North Koreans choose to marry before entering China.
- 2)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ho worked in the industry in China and then decide to marry.

The wives worked on their daily tasks rigorously while maintaining a weak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husbands. In fact, they used their time during their marriage to learn Chinese and saved money so that they could leave their husbands and sustain on their own. Hence, their ambivalent attitudes towards their Chinese husbands and family remained during their stay in China (Kim, 2014).

The brokerage network for arranged marriages also became safer as time progressed. A participant in Kim's (2014) study stated that she did not experience any harsh treatment from her broker and actually enjoyed her stay; she ate well and was treated with respect. Kook's (2018) study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not forced into marriage and incidences of coercion were rare dur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journey across the border. In many scenarios,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sought to be sold as a bride to a Chinese man by a third party and utilized the brokerage networks frequently. Only five out of the twenty-seven female participants experienced force, deception, and were sold by a trafficker. However, once they were married to their Chinese husband, they often become susceptible to abuse and exploitation. Despite the known risk that they may be forced into trafficking, many North Koreans viewed marriage as the only viable option for survival (Kim, 2011).

### **Profile of Victims**

North Korean trafficking victims varied in age and were educated. Kim, Yun, Park & Williams's (2009) study revealed the age range of female North Korean women trafficking victims had a vast age range- ages ranged from the late 10's to the late 30's. They were educated than most of the trafficking victims in other countries; many defectors obtained a high school or college degree. Some of them even worked in professional occupations before the fall of North Korea's economy. North Korean women became entrapped into trafficking through two primary methods: deception and kidnapping. Women who crossed the border with the intention to work temporarily in China were kidnapped by Korean Chinese traffickers. Korean Chinese traffickers deceived female North Koreans by offering false job opportunities and marriage proposals from Chinese men. However, the traffickers' promises were never as promising as it seemed. If they worked, they were hardly paid if they were paid at all.

### **Pathway to South Korea**

Ko, Chung & Oh (2004) claimed that there were three precarious pathways to arrive in South Korea-visiting the South Korean embassy in China, traveling to third countries, boat smuggling and receiving aid from family and friends. Defectors, if caught, are at risk of exploitation by traffickers and repatriation by Chinese law authorities (Davis, 2006, Kim, 2014; Kook, 2018). Also, anyone who is caught aiding North Korean defectors faced serious repercussions as well (Kook, 2018). Davis (2006) claimed if defectors are found, they were sent to Chinese police stations for interrogation, where they succumbed to body searches, torture, physical assault, and rape. After interrogation, women were repatriated and incarcerated in a detention center or labor camp for one to three months (Kim, 2014). While detained, women are expected to perform strenuous labor

with inadequate food in an unsanitary living condition (Davis, 2006; Kim, 2014). Pregnant and elderly women were not exempt from this formidable and punitive sentence, a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case, she could serve up to six months at the labor camps (Davis, 2006). Hence, North Korean defectors attempted to run away, bribe or fight the guards at the border (Ko, Chung & Oh, 2004). If they were caught and repatriated back to North Korea and survived the labor camps, many still crossed the Korean Chinese border. Kook's study (2018) revealed that half of the female participants who we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absconded once more. Even though they may have experienced severe trauma and hardships during their trafficking experience, it was better than starving in North Korea (Muico, 2005).

### Arrival in Korea

Since it is difficult to start their lives in China because of their illegal migrant status and their marriages were not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were eager to start their life chapter in South Korea (Kim, 2014). South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claimed that approximately 70 perc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female. Upon their arrival in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were immediately enrolled in a twelve-week long orientation program at Hanawon. The program rehabilitated defectors in order to regain their emotional stability and assisted them in cultivating the necessary tools needed to independently thrive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their new environment (South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Kim's (2014) study found that female North Koreans gained empowerment through achieving their own 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freedom. Hence, many do not report their marriages in China upon arrival in South Korea and inclined to sever ties with their former husbands, because they received free housing and settlement funding upon arrival and viewed their husbands as a burde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efectors who remained in contact with their husbands. Some remained in contact to repay them for their assistance in the past or they had children with them. However, they were burden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their family in North Korea or China. Female defectors often emotionally divided their family into two categories: North Korean family and family created in mobility. Many female defectors felt a stronger attachment to their family in North Korea, but still had a strong desire to bring their children from previous marriages with them (Kim, 2014).

Despite the aid and relief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 in South Korea, many were inclined to move to other countries after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y experienced from South Koreans (Kim, 2014; Kim, 2017). North Korean defectors expressed they had difficulty obtaining stable employment due to their lack of work experience. Employment in a third world country where they received better treatment seemed more appealing than to work in South Korea where they suffered from discrimination and could only find part-time employment. Criminals recognized this opportunity to profit off of North Korean. Perpetrators portrayed themselves as brokers who could assist 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ir refugee screening for other countries. As a result, brokers conned many defectors and defectors were left with no other option but to remain in South Korea (Kim, 2017).

### III. Methodology

#### Data

#### *Survey*

A convenience sample of 201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re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located in Gyeonggi and Seoul City Provinces in South Korea were administered surveys.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during the week of August 4 - 17, 2018. Due to limited space at the NGO's and out of convenience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s were administered at eight residential areas near the defectors' homes- two neighborhoods in Seoul City and six neighborhoods in Gyeonggi Province. The defectors' host NGO arranged the time and location for the participants to fill out their surveys. Two social workers from each NGO acted as survey managers and were in charge of administering and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surveys to the participants and answering any potential inquiries regarding the questions on the surveys. Participants were given up to an hour to complete the survey. After completing the surveys, the participants were compensated with 20,000 Wons (approximately \$18). When the last round of surveys were completed, all surveys were taken back to KIC for coding.

### *Measurement and variables.*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Forced marriages- age, number of times, husband demographics, types of trafficking, money, and abuse.

How they entered into trafficking, how they exited trafficking, the business framework of trafficking, trafficking routes, and popular cities.

###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who wer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consented to participate in an interview, were asked for an interview. Most of the participants, 20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came from one of the NGO's and the remainder, 5, came from another NGO. After a week of contacting the 25 participants and arranging interview times, the study continued with 25 in-perso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of female North Korean human trafficking survivors during the month of August in 2018. The interviews took place at the NGO in a private and comfortable room with the survivor, a social

worker/therapist from the NGO (as a source for comfort for the survivor), and one female researchers from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All of the surveys were written and verbally administered in Korean. All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ape. Each interview varied in length from one to two hours.

The study was approved from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s Research Board as well as consent from the NGO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rvey instruments. Participants were verbally informed of the purpose, procedures, and nature of the study and assured of their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prior to reading and signing the written consent form. Upon completion of the interviews, the participants were given 150,000 Wons (approximately \$132)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her time and sharing her story.

#### IV. Findings

##### Motive and Process of crossing the North Korean- Chinese border

Approximately 75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y crossed the border due to economic reasons. An estimated 21.4 percent used a broker for crossing the border and 31.8 percent received assistance from family and friends when they crossed the border. Out of all the defectors who used a broker, 31.6 percent of the defectors were requested money from a broker. Defectors spent on average 1.28 million Won during their process of defecting. Only 22.9 percent of the defectors experienced repatriation when crossing the border.

##### Brokerage Experience

Nearly all the defectors, 95.5 percent, encountered a broker during their process of defection. Approximately, 68 percent of defectors held favorable attitudes towards the broker. More than half, 60.4 percent, of the defectors met their broker through someone that know-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s.

### Life in China

Only 43.3 percent of the participants were victims of forced marriage and sex trafficking. Approximately 29.4 percent of defectors were arrested by Chinese police, and among those who were arrested, 67.8 percent of them were repatriated. Slightly over half, 54.2 percent, left China due to their unstable status, 26.9 percent of defectors left because of threats of repatriation, and 14.9 percent left due to a better economic life in South Korea. Interestingly, 32.9 percent of the participants claimed they would stay in China if they had a stable status.

### Crime Victimization in China

Almost three-thirds of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d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in China. Most, 90.7 percent, were victims of forced marriage, and 21.3 percent were victims of forced labor, and 4.7 percent were victims of sex trafficking. The average length of the forced marriages were 68.4 months for the first trafficked marriage, 47.5 months spent in labor trafficking. Approximately, 66 percent were unaware of their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Over half, 57 percent, were trafficked as soon as they crossed the North Korean-Chinese border. Brokers were the main reason why the defectors became entrapped in human trafficking: 31.3 percent consisted of the brokers who assisted when crossing the North Korean-Chinese border, and 29.3 percent consisted of the brokers who deceived the defectors in China.

The average age of the defector for her first marriage is 30.7 years old. Approximately, three-fourths of the defectors only were sold once into a forced marriage, and 13.2 percent of forced brides were victimized twice. Nearly 14.7 percent knew that they would be victimized before crossing the border, but most, 74.3 percent, did not have any suspicions of potential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Nearly, 41.9 married because they sought shelter and 26.5 were

forced marriage. Most of the forced brides husbands were Chinese (47.8 percent) and then Korean Chinese (36 percent). The average age of the forced brides' husband was 37.3 years old. Most of the brides, 62.5 percent, were unsatisfied with their marriages.

### Escaping China

Approximately 25.9 percent of the defectors left China with the aid of brokers, and 16.9 percent left China with no aid. Nearly 32.3 percent of defectors escaped human trafficking because they desired to go to South Korea.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stayed in the following countries: China (74.6 percent), Thailand (46.8 percent), Laos (26.9 percent), Vietnam (6 percent), Cambodia (4.5 percent), Mongolia (6 percent), and Myanmar (1 percent). Approximately, 68.7 perc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rived to South Korea alone, and 25.4 percent arrived with family.

### Life in Korea

Approximately, 37.8 percent of the participants were very satisfied living in South Korea, 47.3 percent were generally satisfied, and only 5 percent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stay in South Korea. Nearly 63.3 percent of the participants claimed that they were well adapted to the Korean life and 20.9 percent claimed that they are very adapted to life in South Korea. Those who had difficulty with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were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difficulty with finding a job (30.3 percent), their expectations were not met (18.4 percent), they were unsure of their life goal (16.9 percent), difficulty with raising a child in South Korean society (11.4 percent).

When asked why it was difficult to adjust to South Korean society, 26.9 percent responded that it was due to economic reasons, 21.9 percent claimed it was due

to apathy from South Koreans, and 20.4 percent stated that they experienced difficulty with adjusting their attitude.

##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Stable political and social economic status in China is the foremost factor in preventing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 emergency shelter and long-term asylum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also need the guarantee of refugee status. Additionally, the study revealed many of the participants would stay in China if their citizen status was stable. Since the 1980s, the Chinese government made significant efforts to eradicate trafficking in China, but the temporary campaigns and policy implication were not enough to eradicate trafficking.

## 부록

###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분**들이 경험한 탈북과정과 한국에서의 적응과정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모두 철저히 보장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함이나 개인적인 자료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문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02) 3460-5132

**1** 다음은 북한에서의 생활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1. 귀하가 북한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북한에서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② 부모의 사망, 이혼 등 가족문제
- ③ 정치적 탄압    ④ 가족 중 탈북한 사람이 있어서 만나기 위해
- ⑤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    ⑥ 기타 (            )

문2. 북한을 떠나기 전에 떠나는 방법이나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 ① 가족 및 친척    ② 이웃, 직장동료, 친구
- ③ 브로커의 접근    ④ 기타 (            )

문3. 북한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남한    ② 중국
- ③ 미국    ④ 기타 (            )
- ⑤ 최종목적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일단 떠나기로 했다

문4.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 ①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    ②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
- ③ 선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브로커
- ⑤ 기타 (            )    ⑥ 도움 받은 적이 없다

문5.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7로 가세요**

문6-1.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복수응답)** \_  
아래 답란에 표시

문6-2. 돈을 요구한 사람별로 각각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_ 아래 답란에 표시**

| 문6-1,2 답란                      |   |          |
|--------------------------------|---|----------|
| 문6-1. 돈을 요구한 사람 : 요구자 모두 표시    |   | 문6-2. 금액 |
| 1) 브로커                         | → | _____ 위안 |
| 2) 북한군인                        | → | _____ 위안 |
| 3) 중국군인                        | → | _____ 위안 |
| 4) 선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등 구조단체         | → | _____ 위안 |
| 5) 기타 (                      ) | → | _____ 위안 |

문7. 북한 국경을 넘는데 개인적으로 모두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 \_\_\_\_\_ 위안)

문8. 북한을 떠나는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① 남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 ② 선교단체, 시민단체 등 구조단체를 통해서
- ③ 북한에서 스스로 모은 돈(북한에 있는 가족의 지원 포함)
- ④ 브로커에게 외상으로
- ⑤ 나중에 갚기로 하고 친척, 친구 등에게 빌림
- ⑥ 기타 (                      )

문9. 북한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나 브로커 등에게 성적 대가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북한에서 중국으로 누구와 같이 국경을 넘었습니까? **(복수응답)**

- ① 혼자
- ② 부모와 함께
- ③ 자녀와 함께
- ④ 친척과 함께
- ⑤ 친구와 함께
- ⑥ 아는 사람과 함께
- ⑦ 기타 (                      )

문11. 귀하는 탈북 이전에 사업상의 이유로 북한 국경을 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2. (문11에서“①있다”응답자만) 사업상의 이유로 북한 국경을 넘나든 것은 몇 번입니까? (왕복 \_\_\_\_ 번)

문13. 귀하는 탈북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되어 복송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4.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과 함께 북한을 떠났는지 답해주시요.

(아래 답란에 표시)

문15. 북한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탈북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업 때문에 국경을 여러 번 넘은 것은 제외)

문16. 탈북 시기별로 북한쪽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여러 번인 경우 모두 작성)

|                | 문14. 탈북인원 | 문15. 탈북 시기 | 문16. 탈북지역 |
|----------------|-----------|------------|-----------|
| 처음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           | 년 월        |           |
| 두 번째           |           | 년 월        |           |
| 세 번째           |           | 년 월        |           |
| 네 번째           |           | 년 월        |           |
| 다섯 번째          |           | 년 월        |           |

**②** 다음은 브로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브로커란 귀하를 다른 사람과의 결혼, 업소, 직업 등에 연결시켜주는 사람

문1. 귀하의 탈북과정이나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4쪽 ㉓ - 문1로 가세요

문2. 귀하는 브로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편이다  
③ 나쁜편이다                    ④ 매우 나쁘다

문3. 브로커를 어디에서 만났거나 소개를 받았습니까?

- ① 북한                              ② 중국                              ③ 북한과 중국 모두

문4. 브로커는 맨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중국인이 돈을 받고 브로커에게 넘겨주었다  
②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해줬다  
③ 친구나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다  
④ 브로커와 연결되어있는 제3의 사람이 알려줬다  
⑤ 브로커가 직접 먼저 접근해왔다  
⑥ 선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소개해줬다  
⑦ 기타 (                      )

문4-1. (문4에서 ④ 또는 ⑤ 응답자만) 브로커가 접근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복수응답)

- ① 중국에 가면 부유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수 있다고 함
- ②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함
- ③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함
- ④ 양부모를 만나 살수 있다고 함
- ⑤ 기타 (            )

문5. 브로커는 대략 몇 살 정도였습니까? 약 (        )살

문6. 브로커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문7. 브로커는 누구였습니까?

- ① 북한인                      ② 한족                      ③ 조선족  
④ 기타 (                      )                      ⑤ 잘모르겠다

문8. 브로커는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_\_\_\_\_명)

문9. 브로커를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문10. 귀하가 접촉한 브로커는 항상 누군가에게 연락하며 일을 진행했습니까?

-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문11. 브로키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 ① 개인 집이나 아파트                      ② 식당이나 술집  
③ 브로커들 사무실                      ④ 기타 (                      )  
⑤ 잘모르겠다

문12. 귀하는 브로커나 다른 한 사람이 항상 동행했습니까?

-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문13. 귀하는 다른 곳으로 가기 전, 브로커와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문14. 귀하는 그 때 다른 탈북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문15. 그렇다면, 탈북여성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 ① 없었음                              ② 1~2명                      ③ 3~5명  
④ 6~9명                              ⑤ 10명 이상

문16. 귀하는 브로커 혹은 관련자와 얼마나 자주 이동하셨습니까?

- ① 항상                                  ② 종종  
③ 가끔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7.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얼마나 자주 귀하를 공격했습니까?

- ① 항상                                  ② 종종  
③ 가끔                                  ④ 전혀 그렇지않다

문18.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총, 칼 등 흉기를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⑤ 잘모르겠다

문19. 머물러있던 곳의 이웃사람들이 브로커 혹은 관련자를 두려워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⑤ 잘모르겠다

문20. 브로커 혹은 관련자들이 북한 혹은 중국의 군대, 경찰, 정부 관리에 속해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⑤ 잘모르겠다

문21. 브로커 혹은 관련자들이 북한 혹은 중국의 군대, 경찰, 정부 관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⑤ 잘모르겠다

문22. 귀하께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복수응답)

- ① 강제결혼                      ② 성매매 (안마시술소, 음란채팅 등)  
③ 강제노동 (농장일, 가사도우미 등)  
④ 불법 장기매매                      ⑤ 기타 (                      )

### ③ 다음은 탈북 후 중국에서의 생활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1. 귀하가 중국에서 살았던 지역에 강제결혼이나 성매매에 노출된 탈북 여성들이 있었습니까?

- ① 예 (약 명)                      ② 아니오

문2.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무르셨습니까?

(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

문3. 시간순서대로 귀하께서 살았던 중국 내 도시와 각 도시에서 보낸 시간을 작성해 주십시오.

(※예시: 북경직할시 2개월 -> 요녕성 심양 2개월)

| 문3.살았던 도시 또는 성 | 문3. 보낸 시간 |
|----------------|-----------|
|                |           |
|                |           |
|                |           |
|                |           |
|                |           |

문4. 중국에서 발각되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간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회)      ② 없다

문5. 중국 공안에게 잡혀간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 ① 돈을 주고 풀려났다      ② 북한으로 북송되었다  
③ 도망 나왔다      ④ 기타( )

문6. 귀하는 중국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 ① 농장일      ② 축산일  
③ 나무를 해서 팔았음      ④ 남의 집 가사도우미  
⑤ 식당일      ⑥ 기타 ( )  
⑦ 전혀 일한 적 없다 (가정주부 포함)

문7. 중국에서 일을 했다면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까?

- ① 예      ② 받았으나 적게 받았다  
③ 전혀 받지 못했다

문8. 중국 내 불법 체류 신분을 빌미로 돈이나 성적인 요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9.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중국에서의 신분 불안정함    ② 가족의 학대  
 ③ 북송 위협    ④ 더 나은 경제적 삶  
 ⑤ 가족상봉    ⑥ 기타 (            )

문10. 한국에 올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복수응답)**

- ① 선교단체, 시민단체 등 구조단체    ② 브로커  
 ③ 남한의 가족    ④ 기타 (            )

문11. 중국에서 신분이 안정되었다면(외국인 체류허가 등) 중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4** 다음은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인신매매란 강제결혼, 매춘이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장기제거 등이 포함되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납치, 사기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이다.

문1. 귀하는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경험할 뻔 했다: → 6쪽 ⑤ - 문1로 가세요

문2. 귀하는 중국에서 어떤 종류의 인신매매를 경험하십니까? **(복수응답)** - 아래  
 답란에 표시



문7. 귀하는 중국 내 인신매매에 연루된 후(강제결혼, 강제성매매 등)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문7. 다음    |   | 경 험  |      |
|-----------|---|------|------|
| 1) 언어적 학대 | → | ① 있다 | ② 없다 |
| 2) 신체적 학대 | → | ① 있다 | ② 없다 |
| 3) 정신적 학대 | → | ① 있다 | ② 없다 |

문8. 귀하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서 벗어났을 당시 귀하는 몇 살이셨습니까? ( 살)

**⑤ 다음은 중국에서의 강제 결혼 경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1. 중국에서 강요에 의해서나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9쪽 ⑥ - 문1로 가세요

문2. 귀하가 중국에서 처음 결혼한 것은 몇 살입니까? (            )살

문3. 귀하는 중국에서 몇 번 결혼을 하셨나요? 그리고 결혼은 각각 얼마동안 계속(지속)되었습니다?

| 문3. 결혼 횟수 : (            번) → | 문3. 결혼 지속 기간 |                  |
|-------------------------------|--------------|------------------|
|                               | 1번째          | _____ 년 _____ 개월 |
|                               | 2번째          | _____ 년 _____ 개월 |
|                               | 3번째          | _____ 년 _____ 개월 |
|                               | 4번째          | _____ 년 _____ 개월 |
|                               | 5번째          | _____ 년 _____ 개월 |

문4. 귀하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을 탈북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① 예(알고 있었다)                      ② 아니오(몰랐다)

문5. 귀하가 처음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복수응답)

- ① 강요에 의해서                      ②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서  
 ③ 아는 사람의 권유 →(아는 사람과의 관계: \_\_\_\_\_)  
 ④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⑤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⑥ 빛이 있어서                      ⑦ 기타 (                      )

문6. 다음은 중국에서 귀하의 **마지막 결혼 상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 1) 남편의 민족은?           | ① 조선족                      ② 한족<br>③ 중국기타민족(                      )    ④ 북한남성<br>⑤ 기타(                      ) |
| 2) 남편의 장애여부는?         | ① 정신지체                      ② 신체지체<br>③ 장애없음                      ④ 기타 (                      )               |
| 3) 남편의 직업은?           | (                      )                                                                                      |
| 4)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 (                      ※예시: 600위안)                                                                            |
| 5) 가족구성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                      명)                                                                                     |
| 6) 남편은 몇 번 째 결혼이었습니까? | (                      번째)                                                                                    |

문6-1. 중국에서 귀하의 결혼 당시 남편은 몇 살이었습니까?

(결혼 상대 모두 작성)

(      살), (      살), (      살), (      살), (      살)

문7. 귀하는 신부로써 얼마에 거래되셨습니까?

- ① 약 (                      위안)                      ② 모르겠다

문8. 귀하는 강제 결혼의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9. 다음은 귀하의 강제 결혼 관련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9. 문항                              | 전혀<br>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우리 부부 간 가사를 분담하는 정도에 만족했다        | ①         | ②   | ③   | ④         |
| 2) 우리 부부의 자녀를 키우는(양육) 방식에 만족했다      | ①         | ②   | ③   | ④         |
| 3) 우리 부부의 사회적 활동(취미활동 등)에 만족했다      | ①         | ②   | ③   | ④         |
| 4) 우리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 만족했다          | ①         | ②   | ③   | ④         |
| 5) 우리 부부의 성관계에 만족했다                 | ①         | ②   | ③   | ④         |
| 6) 우리 부부는 상호간에 개인 생활을 인정해줬다         | ①         | ②   | ③   | ④         |
| 7) 서로 시가 혹은 처가 식구들을 배려해 주는 정도에 만족했다 | ①         | ②   | ③   | ④         |
| 8) 결혼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 ①         | ②   | ③   | ④         |

문10. 다음은 귀하의 강제결혼 상대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 남편이 나에게...                  | 전혀<br>없었다 | 가끔<br>있었다 | 자주<br>있었다 | 매우자주<br>있었다 |
|-----------------------------|-----------|-----------|-----------|-------------|
| 1)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상했다     | ①         | ②         | ③         | ④           |
| 2) 때리려고 위협했다                | ①         | ②         | ③         | ④           |
| 3)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 4)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 5) 동의 없이 재산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 6)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 7) 물건을 집어던졌다                | ①         | ②         | ③         | ④           |
| 8)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았다         | ①         | ②         | ③         | ④           |
| 9)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 ①         | ②         | ③         | ④           |
| 10) 목을 졸랐다                  | ①         | ②         | ③         | ④           |
| 11)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①         | ②         | ③         | ④           |



문6. 귀하가 경험한 강제 성매매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 |                      |                     |          |
|----------------------|---------------------|----------|
| ① 1:1 조건만남, 애인대행     | ② 단란주점·룸싸롱          | ③ 성매매집결지 |
| ④ 안마시술소              | ⑤ 노래방               | ⑥ 티켓다방   |
| ⑦ 음란문자, 음란 메일        | ⑧ 영상팔이              | ⑨ 속옷팔이   |
| ⑩ 키스방, 보도방, 대딸방 등 업소 | ⑪ 기타 (            ) |          |

문7. 귀하에게 부여된 1일 할당량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8. 귀하는 하루 최대 몇 번까지 성매매(성행위·유사성행위)를 했나요?  
(        번)

문9. 귀하는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하셨습니까?

- |        |        |
|--------|--------|
| ① 1~2일 | ② 3~4일 |
| ③ 5~6일 | ④ 매일   |

문10. 귀하는 1회당 성매매 후 돈을 받았나요?

- |              |                  |
|--------------|------------------|
| ① 예 (돈을 받았다) | ② 아니오(돈을 받지 못했다) |
|--------------|------------------|

문10-1. **(문10에서 ①돈을 받은 경우만)** 1회 평균 얼마를 받았나요?

최대 (                      위안 )

최소 (                      위안 )

문11. 귀하는 강제 성매매의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1-1. **(문11에서 ②아니오 경우만)**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

문12. 강제 성매매에 연루된 후 성매매를 위해 한 곳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         |                |
|---------|----------------|
| ① 옮겨다녔다 | ② 한 곳에서 계속 일했다 |
|---------|----------------|

문13. 다음은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았다        | ① | ②   |
| 2) 성매매 전 제시한 조건을 안지켰다      | ① | ②   |
| 3) 성 질환(성병 등)에 감염된 적이 있다   | ① | ②   |
| 4)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① | ②   |
| 5) 원치 않은 임신이 된 경우가 있다      | ① | ②   |
| 6) 낙태를 강요받았다               | ① | ②   |
| 7) 욕설, 폭행 등을 받았다           | ① | ②   |
| 8) 금품을 빼앗겼다                | ① | ②   |
| 9) 변태 성행위를 했다              | ① | ②   |
| 10)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 ① | ②   |
| 11) 가족, 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받았다 | ① | ②   |
| 12) 탈북 여성임을 알고 있었다         | ① | ②   |

문14. 다음은 성매매 알선자(포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약속한 만큼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                          | ① | ②   |
| 2)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 ① | ②   |
| 3) 빚을 강요하였다                                     | ① | ②   |
| 4)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 ① | ②   |
| 5)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6)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7) 콘돔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                               | ① | ②   |
| 8) 퇴폐쇼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9) 쉬고 싶을 때,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 ① | ②   |
| 10) 성형, 무리한 다이어트 등을 강요하였다                       | ① | ②   |
| 11) 욕설, 폭행 등을 하였다                               | ① | ②   |
| 12) 가족, 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받았다                      | ① | ②   |
| 13)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중국 공안 등에게 신분을<br>노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 ① | ②   |
| 14) 나와 함께 같은 생활 공간에서 지냈다                        | ① | ②   |



문8. 귀하가 부담한 노동의 임무 및 노동 환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요.

|  |
|--|
|  |
|--|

문9. 귀하는 일주일에 몇 일이나 일하셨습니까?

- ① 1~2일                  ② 3~4일  
③ 5~6일                  ④ 매일

문10. 귀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셨습니까?

최대 (            )시간

최소 ( )시간

문11. 귀하는 강제 노동 및 서비스 제공 후 돈을 받았나요?

- ① 예 (돈을 받았다)                      ② 아니오(돈을 받지 못했다)

문11-1. (문11에서 ①돈을 받은 경우만) 한달 평균 얼마를 받았나요?

최대 (                      위안 )

최소 ( \_\_\_\_\_ 위안 )

문12. 귀하는 강제 노동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2-1. (문12에서 ②아니오 경우만)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

문13.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셨습니까?

- ① 옮겨다녔다                      ② 한 곳에서 계속 일했다

문14.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 상대방(노동력 구매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았다                            | ① | ②   |
| 2) 노동 제공 전에 제시한 조건을 안지켰다                       | ① | ②   |
| 3)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적이 있다                           | ① | ②   |
| 4)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중국 공안 등에게 신분을<br>노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 ① | ②   |
| 5) 쉬고 싶을 때,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 ① | ②   |
| 6)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7) 욕설, 폭행 등을 받았다                               | ① | ②   |
| 8) 금품을 빼앗겼다                                    | ① | ②   |
| 9) 성희롱적 발언 혹은 성추행이 있었다                         | ① | ②   |
| 10) 성폭행(강제 성관계)이 있었다                           | ① | ②   |

문15. 다음의 강제 노동 및 서비스 제공 알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약속한 만큼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                         | ① | ②   |
| 2)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 ① | ②   |
| 3) 빚을 강요하였다                                    | ① | ②   |
| 4) 원치 않는 성적 착취까지 강요하였다                         | ① | ②   |
| 5)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중국 공안 등에게 신분을<br>노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 ① | ②   |
| 6) 나와 함께 같은 생활 공간에서 지냈다                        | ① | ②   |



문9. 다음은 불법 장기 적출 상대방(장기 구매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았다                         | ① | ②   |
| 2) 장기 제공 전에 제시한 조건을 안지켰다                    | ① | ②   |
| 3)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중국 공안 등에게 신분을 노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 ① | ②   |
| 4)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5) 욕설, 폭행 등을 받았다                            | ① | ②   |
| 6) 금품을 빼앗겼다                                 | ① | ②   |
| 7) 성희롱적 발언 혹은 성추행이 있었다                      | ① | ②   |

문10. 다음의 불법 장기 적출 알선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약속한 만큼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                      | ① | ②   |
| 2)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 ① | ②   |
| 3) 빚을 강요하였다                                 | ① | ②   |
| 4) 원치 않는 성적 착취까지 강요하였다                      | ① | ②   |
| 5)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중국 공안 등에게 신분을 노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 ① | ②   |
| 6) 나와 함께 같은 생활 공간에서 지냈다                     | ① | ②   |

**9** 다음은 중국에서 범죄피해로부터의 탈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1. 귀하는 강제결혼·성매매·강제노동 상대방, 브로커 등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셨습니다니까?

- ① 스스로의 힘으로                      ② 시민단체나 선교단체 등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③ 다른 브로커의 도움으로 (브로커 국적은? )  
 ④ 기타 ( )

문2. (문1에서 ② 또는 ③ 응답자만) 귀하의 인신매매 상황에서의 탈출을 도와준 단체나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 ①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소개로  
 ② 남한에 있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③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소개로  
 ④ 중국에 있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⑤ 기타 ( )

문3.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하면서 추가적으로 귀하가 지불한 돈이 있습니까?

- ① 예 (액수는? \_\_\_\_\_ 위안)                      ② 아니오

문3-1. (문3에서 ① 예 응답자만) 누구에게 지불하셨습니다니까?

- ① 시민단체나 선교단체 등 구호단체에게                      ② 브로커에게  
 ③ 기타 ( )

문4.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지불한 비용이 있었습니까?

- ① 예 (액수는? \_\_\_\_\_ 위안)                      ② 아니오  
 ③ 다른 사람이 지불한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몰랐다

문5. 귀하가 인신매매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한국으로 가기 위하여      ② 신체적, 정신적 힘듦으로  
③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④ 기타 (                      )

문6. 귀하께서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하여 피해있었던 장소가 있으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7. 피해있었던 장소와 기간에 대하여 답해주시시오.

(※예시: 중국 심양, 몇 개월 몇 일)

|  |
|--|
|  |
|--|

**10** 다음은 한국에서의 정착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지 못한 편이다              ④ 매우 불만족한다

문2. 귀하께서는 얼마나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적응                          ② 잘 적응하는 편  
③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              ④ 매우 부적응

문3.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삶의 목표 불확실                      ② 사치와 허영  
③ 탈북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상처 및 죄책감 때문에  
④ 자녀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 ⑤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  
 ⑥ 한국에서 적당한 직업 선택이 힘들어서  
 ⑦ 가족들과의 문화적 차이    ⑧ 기타 (                      )

문4. 귀하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 및 무능력  
 ② 한국 주민들의 냉대와 편견  
 ③ 직장 구하기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④ 북한, 중국 등에 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  
 ⑤ 북한요원들의 위해 공격    ⑥ 기타 (                      )

문5. 귀하는 정착금이나 수입을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 ① 북한/중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 위한 송금  
 ② 북한/중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③ 본인의 탈북비용을 브로커 등에게 갚기 위하여  
 ④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을 위하여  
 ⑤ 기타 (                      )

문6. 다음 문항들이 “**하나원 퇴소 직후**”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응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정착과정**”과 “**자립 이후**”단계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각 문항별로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하나원 퇴소 직후      |          |         |               | 지역사회 정착 과정     |          |         |               | 자립 이후          |          |         |               |
|----------------------------|----------------|----------|---------|---------------|----------------|----------|---------|---------------|----------------|----------|---------|---------------|
|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 1) 경제적 지원(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 전반적인 한국사회 및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하나원 퇴소 직후      |          |         |               | 지역사회 정착 과정     |          |         |               | 자립 이후          |          |         |               |
|---------------------------------------------|----------------|----------|---------|---------------|----------------|----------|---------|---------------|----------------|----------|---------|---------------|
|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 3)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br>의 트라우마에 대한<br>치료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4) 한국사회에 맞는 언어<br>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5) 대인관계 기술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6) 가족문제 상담(중국,<br>한국 등에 있는 남편<br>및 자녀 관계 등)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7) 자녀 양육 기술 및<br>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8) 금전관리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9) 법률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10)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문7. 다음 문항별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을 읽고 순간적인 느낌  
이나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 문항                                | 확실히<br>그렇다 | 그런<br>편이다 | 그렇지 않은<br>편이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자질을 갖추고<br>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br>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문8. 다음 문항은 귀하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씩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br>지<br>않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재미로 위험한 일을 하곤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는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는 책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 즐거운 일을 우선 하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문9. 다음은 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br>지<br>않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는 법을 어겨도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 다른 사람들도 법을 위반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 법을 위반하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7)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죽여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8)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문5. 중국에 있는 자녀 양육비 및 생활필수품 전달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 ① 예 (약 위안)                      ② 전달한 적 없다

문6. 중국에 있는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르겠다

문7. 귀하는 중국에 있는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① 브로커에게 부탁                      ② 직접 중국 방문
- ③ 선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등에게 부탁
- ④ 기타 (                  )                ⑤ 노력하고 있지 않음
- ⑥ 함께 살고 싶지 않음                ⑦ 자녀가 원해하지 않음

문8.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중국 남편에게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약 위안)      ② 아니오

문9.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약 위안)      ② 아니오

**12**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내용입니다.

문1.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

문2. 귀하의 남한 입국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년 \_\_\_\_\_월)

문3. 귀하의 하나원 기수는 몇 기입니까?

- ① \_\_\_\_\_기,                      ② 모름  
 ③ 하나원 기수 없음(1999년 이전 입국)

문4. 귀하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에 답해주십시오. (                      )

문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북한 학력 합쳐서)

- ① 무학(학교에 다닌 적 없음)    ②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③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④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⑤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⑥ 대학원 이상

문6. 귀하의 북한에서의 주로 했던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

문7. 귀하가 북한에서의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평양                                      ② 평안남북도                      ③ 함경남북도  
 ④ 황해남북도 ⑤ 자강·양강도 ⑥ 강원도·개성

문8. 귀하가 탈북한 후 체류한 국가 및 기간을 순서대로 답해주십시오.

(※예시: 중국 6개월 → 라오스 3개월)

|  |
|--|
|  |
|--|

문9. 한국 입국 시 가족동반 여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 ① 혼자 입국                                      ② 가족 일부 입국                      ③ 가족 전체 입국

문10. 귀하는 몇 번의 탈북시도를 하였나요? (                      )번

문11. 귀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위하여 몇 번의 시도를 하였나요?

(                      )번

문12. 현재의 결혼 상태에 대해 답해주시시오.

|                                                             |   |                                                                         |
|-------------------------------------------------------------|---|-------------------------------------------------------------------------|
| 1) 미혼<br>2) 기혼(배우자 있음)<br>3) 동거(사실혼)<br>4) 기타(사별, 별거, 이혼 등) | → | 배우자 혹은 동거인 출신:<br>① 탈북민<br>② 조선족<br>③ 한족<br>④ 남한<br>⑤ 기타 (            ) |
|-------------------------------------------------------------|---|-------------------------------------------------------------------------|

문13. 현재 한국에서 기초생활 수급 여부에 대해 답해주시시오.

1) 수급 대상자                      2) 대상자 아님 → ① 취업자 ② 실업자

문14. 현재 한국에서의 귀댁의 월평균 가구 총 소득에 대해 답해주시시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문15. 귀하는 현재 북한에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인원수를 적어주세요)

|       |   | 인원 수 |
|-------|---|------|
| 1) 있다 | → |      |
| 2) 없다 |   |      |

문16. 귀하는 현재 중국에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인원수를 적어주세요)

|       |   | 인원 수 |
|-------|---|------|
| 1) 있다 | → |      |
| 2) 없다 |   |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과정에서의 범죄노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이 더 있다면 이하에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신매매 등 범죄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illegible]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연구총서 18-AB-04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http://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 979-11-89908-07-2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